연구총서 21-AB-02

www.kicj.re.kr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최지선 · 성유리 · 김미진 · 김면기

KICJ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발간사

전자감독제도는 사회내처우 중에서도 중점 분야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과 도주, 재범과 관련해서는 더욱 경각심이 높아져, 2021년 8월 말 발생한 전자장치 훼손·재범사건은 전자감독제도와 당시 시행 2개월 차였던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자감독 특사경제도의 시행과 전부개정 과정에서 선진국의 유사 현황 검토와 우리나라 제도 운영 현황 진단을 통해 제도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본래 본 연구는 2021년 8월 사건 발생 이전, 전자감독 제도에서 새로운 세부 제도를 도입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요 사건 발생 이후 연구를 개시하면서, 특사경 권한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신속수사팀이 발족되는 등 변화하는 제도를 실시간으로 접하며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성 있게 연구가 진행된 만큼 최신의 현황 진단과 정책적 제언을 담은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포함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도 유용한 정책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의 설계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수많은 회의를 거치며 적극적이고 성실히 연구에 임해주신 성유리 박사님, 행정업무와 원고 편집업무 뿐만 아니라 다각적으로 연구를 지원해주신 최금나 선생님, 여러 면담 녹취록 작성과 원고 교정에 힘써주신 이다니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련한 문헌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무가와의 면담도 수행하시면서 미국과 유럽, 호주의 전자감독 의무 위반 제재 조치 실무에 대해 원고를 작성해주신 일리노이 주립대 김미진 교수님과 국내 특사경 관련 입법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미국 비교법까지 다루어주시면서 보고서에 법제도적인 통찰을 포함할 수 있게 원고를 작성해주신 경찰대학교 김면기 교수님께도 감사드

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고 연구팀과 법무부 사이에서 원활한 가교의 역할로 연구를 지원해주신 고기원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양질의 자문을 주셨던 김지선 박사님, 조윤오 교수님, 김병배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조사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아주신 법무부 전자감독과 심선옥 과장님, 김충원 사무관님, 방극진 계장님, 오승훈 계장님, 김상헌 계장님과 연구를 위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신속수사팀장님 및 팀원 분들과 전자감독 전담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향후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전자감독 제도, 나아가 보호관찰 전반에 어떠한 영향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부연구위원 **최 지 선**

목 차

국문요약 ····· 1

제1장 최지선

서 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 방법 ····· 17

제2장 김면기 · 최지선 · 성유리

이론적 논의 ····· 19

제1절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 제도적 타당성 ····· 21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21
2.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 22
3. 법적 · 제도적 타당성 검토 ····· 24

제2절 범죄학 · 사회심리학에서의 제재 효율성 ····· 28

1. 범죄학의 제재이론 ····· 28
2. 사회심리학의 행동이론 ····· 32

제3장 최지선 · 성유리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 35

제1절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 및 제재 현황 ····· 37
1.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 37
2. 경보 누적과 준수사항 위반, 훼손 및 재범간의 관계 ····· 40
제2절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운영 현황 ····· 44
1. 시점별 운영 현황 변화 ····· 45
가. 시행초기: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지정 및 운영 ····· 45
나. 전부개정: 특사경 업무 전담 신속수사팀 발족 ····· 47
2. 운영 현황 진단: 2차 개정 이후 후속조치 관련 ····· 49
가. 조직 및 인력의 변화 ····· 49
나.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진단 ····· 53

제4장 김미진 · 김면기

주요국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관련 운영 및 정책 ····· 55

제1절 주요국 고위험군 전자감독 제도 ····· 57
1. 미국 ····· 57
가. 미국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개요 ····· 57
나. 미국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 69
다. 미국 지역별 전자감독 위반 제재조치 절차 ····· 76
라. 미국 보호관찰관의 자격 요건 및 권리 ····· 82
2. 유럽 ····· 92
가. 유럽 전자감독 제도 개요 ····· 92
나. 유럽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 95
3. 호주 ····· 99
가. 호주 전자감독 사용 현황 및 효과성 ····· 99
나. 호주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 102

제2절 미국 비교법 기반 국내 적용 법리적 검토 ····· 103
1. 미국의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법률분석 ····· 103
가. 준수사항 위반 관련 ····· 105
나. 부착장치 훼손 관련 ····· 112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112
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집행 강화 ····· 112
나. 전자감독 관련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권한 강화 ····· 114

제5장 성유리 · 최지선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 및 한계점 ····· 117

제1절 신속수사팀장 대상 심층면담(FGI) ····· 119
1. 심층면담 개요 ····· 120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 121
가. 수사과정 ····· 122
나. 경보 대응 ····· 128
다. 전담직원과의 협업 ····· 131
라. 공조 ····· 133
마. 그 밖의 문제점 ····· 136
제2절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설문조사 ····· 138
1. 조사개요 ····· 139
가. 설문조사 문항 개발 ····· 139
나. 본 설문조사 설계 ····· 140
2. 결과분석 ····· 143
가. 신속수사팀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및 권한 ····· 143
나. 신속수사팀 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 ····· 147
다. 전담직원의 인식 ····· 152
라. 전반적인 인식 및 역할 ····· 155
마. 개선방안 ····· 160

제3절 기관 간 공조 ····· 169
1. 경찰 공조 ····· 170
2. 검찰 공조 ····· 178

제6장 최지선 · 성유리
결론 및 정책제언 ····· 185

제1절 시사점 및 제언 ····· 187
1. 업무 체계: 업무 범위 및 역할 재고 ····· 187
2. 인력 및 운영: 체계적인 인력 충원과 전문성 유지 ····· 189
3. 업무 권한: 원활한 실무를 위한 재량권 확대 ····· 192
4. 업무 역량: 물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전문 훈련 지원 ····· 193
5. 기관 간 공조 체계: 부처 단위 지속적 공조 협의 ····· 194
6. 제도 평가 도구: 다각적 제도 평가 도구 개발 ····· 195
7.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방향성 ····· 196
제2절 연구 의의 및 한계 ····· 198

참고문헌 ····· 199
Abstract ····· 213
부록 ····· 221
1. 신속수사팀용 설문지 ····· 221
2. 전자감독 전담직원용 설문지 ····· 229

표 차례

[표 3-1] 경찰 수사의뢰 건수 ····· 38
[표 3-2] 수사의뢰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 41
[표 3-3] 서면 경고 수, 수사의뢰 수, 재범 수, 수사의뢰 개시 소요일 ····· 42
[표 3-4]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 ····· 43
[표 3-5]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수사관할 및 범위 ····· 45
[표 3-6]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신속수사팀 수사관할 및 근무방식 ····· 49
[표 3-7]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경찰 수사 의뢰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수행건수 ····· 51
[표 3-8] 경찰 수사 의뢰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진행 내역 ····· 52
[표 4-1] 관할구역에 따른 전자감독 대상자 수 및 이용현황 ····· 63
[표 4-2] 전자감독 장비 비교 ····· 64
[표 4-3] 가석방 철회 관련 공판 참여자들의 역할 ····· 77
[표 4-4] 유럽 전자감독 유형/양식(Modalities) ····· 93
[표 4-5] 종류별 준수사항 예시 ····· 106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 120
[표 5-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 121
[표 5-3] 설문조사 개발을 위한 개방형 조사 내용 ····· 139
[표 5-4] 설문조사 내용 ····· 140
[표 5-5]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42
[표 5-6]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 하는 물적 자원 우선순위 ····· 144
[표 5-7] 권한의 적정성 ····· 145
[표 5-8] 원활한 자체 수사를 위해 신속수사팀에게 필요한 권한 우선순위 ····· 147
[표 5-9]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신속수사팀 내 문제 ····· 148
[표 5-10]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대상자 대응 시 문제 ····· 150
[표 5-11]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팀 외/전담직원과의 문제 ····· 152
[표 5-12]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인식 ····· 154
[표 5-13] 신속수사팀과 업무 경험여부 및 경험의 만족도 ····· 155
[표 5-14] 직무별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인식 ····· 157
[표 5-15] 직무별 전담직원, 특사경, 신속수사팀의 역할에 대한 인식 ····· 159
[표 5-16] 신속수사팀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중요도-실행정도 차이 분석(IPGA) 결과 ··· 163

그림 차례

[그림 3-1] 준수사항 위반과 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 건수 ····· 40
[그림 4-1] 성인 보호관찰 및 가석방 현황(2000~2019) ····· 59
[그림 4-2] 전자감독 장비 사용 비율(2005~2015년) ····· 64
[그림 4-3] 전자감독과 일반보호관찰의 준수사항 현황 ····· 71
[그림 4-3] 도주자 공개수배(Wanted Parolee) ····· 89
[그림 4-4] 도주자 공개수배(Wanted Parolee) ····· 90
[그림 5-1] IPGA 매트릭스 사분면의 의미 ····· 162
[그림 5-2] 개인의 역량 향상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 165
[그림 5-3] 제도 개선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 166
[그림 5-4] 지원체계 및 시설 확보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 167
[그림 5-5] 인식 개선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 168
[그림 5-6] 전체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 169

국문요약

2008년 시행된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억제의 실효성을 검증받으며 대상자를 확대해오고 있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자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2021년 법무부는 의무위반 범죄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기 위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시행했다. 이후 연속되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으로 훼손범죄와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제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 조사를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적 배경과 제도의 법적 타당성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고, 최근의 법률 개정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다. 제도에서는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목적으로 확실성, 신속성, 엄벌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학 이론에서의 제재이론과 사회심리학 이론 중 행동이론의 조작적 조건형성 개념과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충분한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는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자장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고, 수사의 신속성에 대한 근거도 다소 피상적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전에 보호관찰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전문화 교육 등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로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실시사건 수와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의뢰 건수는 실시사건 수와 비례하지 않으며, 2013년부터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 이전까지 매년 100에서 200건 사이를 오가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훼손을 제외한 효용유지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996건에서 2018년 1,886건으로 89.4% 증가하였고,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2016년 3,264건에서 2020년 5,12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 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는 2016년 142건에 불과하였으며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129건만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 건수에 비해 수사의뢰된 사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즉각적이지 않으며, 전담직원의 제재수준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현황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시행 초기 6개 지역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를 지정하여 6명의 수사요원을 배치하고 수사 의뢰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10월 12일 이후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보 발생에 대한 즉각적 출동과 엄중 대응을 목적으로 전국 13개 본소에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련하여 인력 충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전자감독 직원들을 재배치하여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구성하였으며, 관할 구역의 대상자 규모에 따라 배치 인원을 달리하였고, 24시간 상근 인력이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수사 수행 건수는 월평균 약 10건에서 약 40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한 해 동안 0건이던 구속 건수 또한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2개월 동안 14건으로 증가하였다.

□ 전자감독 대상자 의무위반 범죄 제재 미국 사례 및 비교법 검토

미국에서의 전자감독은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의 일환으로 범죄자를 관리·감독함으로써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전자감독은 현재 미국 50개의 모든 주에서 보호관찰(probation) 및 가석방(parole)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범죄자의 위험성 수준이나 보호관찰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강도로 적용되고 있다.

무선주파수(radio-frequency, RF) 전자감독 기술이 일반적으로 보통이거나 낮은 위험성을 지닌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반면, GPS 기술은 주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 집단에 활용된다. 일례로, 일부 주의 GPS 전자감독을 받는 대상자 유형에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상습 재산 범죄자, 조직폭력 관련 범죄자,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 그리고 일부 보석으로 석방된 고위험 범죄자가 포함되는데 전자감독은 이와 같이 특별한 범죄자들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과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습관성 성범죄자(Sex predators)인 경우에는 주 법률이나 연방 형법에 따라 종신형 GPS 감독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진실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행동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가석방의 준수사항으로는 직장 유지, 주어진 생활계획 이행, 감독관의 자택 방문 허용, 사교모임 제한, 교정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약물 복용 금지 등이 있으며, 전자감독과 관련된 준수사항으로는 통금 시간 준수, 전자기기 훼손 금지, 태그 제거 금지, 배터리 충전, 제한 구역 진입 금지 등이 있다. 피부착자가 이러한 준수사항들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교도소에 구금될 수도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시 제재에 대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는데, 이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많은 기관들과 감독관들은 점진적 처벌(graduated sanction)을 지향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반자가 지역사회에 가하는 위험 수준, 위반자의 위반 정도, 치료가 필요한 수준, 위반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무작정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전자감독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보호관찰관의 권리에 있다. 미국 모든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공식 경찰(sworn officers)로, 한국의 특별사법경찰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대상자의 소유물을 압수 및 수색할 수 있는 등 경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상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총기와 같은 개인 보호

용 장비를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며, 체포영장도 발부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가석방자를 구치소에 바로 송치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경찰들에게 의지할 부분이 많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는 피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경우에 도주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즉시 알려지게 되는데 이 때 피부착자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급되는 동시에 경찰, 도주자 체포반, 전자감독 관리팀, 성범죄자 관리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신속하게 도주자 체포에 힘쓰게 된다. 상호합의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회 안전을 방위하기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의 대상자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대상자는 개인정보의 상당부분을 포기한다. 이처럼 광범위한 감독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서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를 통해 종결되면서,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 등 검찰이 제시하는 조건을 대체로 수용하기 때문이다. 전자감독 감시 대상자가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 등을 취소하고 재구금할 권한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전자감독 부착장치 훼손은 그 자체로 형사처분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형량은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의 전자감독은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된 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원 또는 교정당국은 전자감독 등 다양한 준수사항 조건을 부과하며, 위반시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대상자는 다시 구금상태로 복귀한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소 상이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상당수는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금상태로 돌아갈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재가 이루어지는 체계는 다르지만, 두 제재수단 모두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성실한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권한은 결국 구체적인 준수사항 조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준수사항이 다양하고 구체적일 경우 보호관찰관은

효과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준수사항이 제한적·추상적일 경우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와 같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서 보호관찰관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제①항 제6호를 활용하여 보호관찰관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의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전자감독 대상자 의무위반 범죄 제재 유럽·호주 사례

유럽과 호주에서는 보호관찰을 목적으로 무선주파수 방식의 전자감독이 꾸준히 사용되어 왔지만 점차 GPS로 대체되는 추세이다. 독일은 형기종류 후 석방된 범죄자들에게 집중적으로 GPS 전자감독을 사용하고 있으며, 호주는 모든 주와 지역에서 GPS 전자감독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전자감독 준수사항이나 준수 위반 제재는 전반적으로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유럽과 호주 또한 점진적 접근 방법을 통해 위반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며, 간단한 경고로 시작된 제재조치는 체포까지 상향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조치는 관할 구역에 따라 감독대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내려지기도 하고, 감독대상자의 위반 사항만 고려하여 결정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유럽 또는 호주의 전자감독은 사용되고 있는 사례 및 위반사례의 수가 적고, 전자감독관련 데이터 또한 포괄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 전략을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자감독 정책과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진단 및 한계점

전자감독 특사경에서 제재업무를 전담하게 된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진단하였다.

1. 수사의뢰의 신속성 및 간편화

기존에 전담직원의 수사의뢰를 저해하던 요소들은 대상자 지도·관리를 위한 원만한 관계 유지, 수사경찰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으로 조사되었다.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신속수사팀은 위반사실에 즉각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실제 신속수사팀 신설 후 수사의뢰에서 송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평균 34일에서 14일로 단축시켜, 제도를 통한 신속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수사의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사의뢰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신속수사팀으로 인해 제재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인식은 신속수사팀에게 수사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에게서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사의뢰 시 경찰에게 제출하였던 전자감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법률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어 실제로 작성하는 서류의 양이 간소화되었으며, 위반사실에 대한 보충적인 개입이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에 대한 부담이 감소하였고, 부담감 감소는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의뢰로 선순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수사 전반에 대한 우려

직권수사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로 신속수사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새롭게 부여된 업무로 피부착자의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전담직원의 의뢰하지 않은 위반사실을 신속수사팀이 찾아내 수사하게 되므로 피부착자의 담당 전담직원과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직권수사에 대한 전담직원의 방어적이고 배타적인 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속수사팀은 수사 경험이 없으므로 수사기법이나 노하우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특사경 직무교육은 총 세 차례뿐이며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이다.

3. 경보 대응

초기 전자감독 특사경은 수사업무를 전담하였으나, 신속수사팀 신설로 수사업무 외에 훼손 경보와 고위험자의 경보에 대응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경보 발생 시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수사팀의 지휘 하에 범죄예방팀이 경보에 대응하도록 구조화되었다. 경보대응은 범죄예방팀의 주 업무였

던 만큼 전담직원과의 협업이 중요하며, 분리되지 않은 업무 및 역할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4. 전담직원의 인식

전담직원은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현재의 문제들은 신속수사팀의 업무가 숙련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전자감독제도에 피부착자에 대한 수사권이 생기고 신속수사팀이 제재 업무를 분리하여 담당하게 되면서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강력범죄 재범이나 훼손사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장 대상 면담에서 장기적인 엄정 대응이 고위험자의 폭력성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였지만, 전담직원은 엄정대응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장기적인 엄정 대응이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을 증가시킴)의 출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여 대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5.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원 및 권한

신속수사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물적 자원은 승용차 관용차량, 승합차 관용차량, 체포자 보호공간이다. 또한 조사한 14종류의 물적 자원 중 사무공간, 숙식공간, 체포자 보호공간, 유치공간, 승합자 관용차량, 승용차 관용차량, CCTV등 위치정보, 호신술 등을 위한 자기개발비와 같은 여덟 개 자원에 대한 가중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의 출범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여러 물적 자원의 가중치점수가 고르게 분포한 결과는 신속수사팀에게 자원 대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물적 자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된다.

현재 신속수사팀이 지닌 권한은 직접수사(압수수색,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창, 통신수사, 공개수배), 임의수사, 직권수사 개시 등으로 신속수사팀의 약 80% 이상은 신속수사팀이 각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의 재량권이나 체계 개선과 같은 권한 중 가장 필요로 한 권한은 '현장출동 및 대상자 면담 등 수사과정에서 전담직원의 협조체계 정비'이다. 피부착자에 대한

제재가 전담직원의 업무에서 분리되어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구분되었지만, 여전히 위반 경보 발생시 범죄예방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재업무를 수행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훼손이나 야간외출금지 위반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이나 지침을 마련한다면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가 정비되어 빠르게 수사업무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필요한 권한은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 절차 완화'로 나타났다. 피부착자와 그 관계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이나 욕설, 모욕, 협박, 고소 및 소송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전담직원이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 피부착자와 대응 시 여러 가지 위협에 대한 법적인 방위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공조 필요성 및 예상되는 문제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에도 유치장 입간 의뢰, 검거요청 등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 특히 경찰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은 훼손 및 도주자의 검거, CCTV 조회, 피부착자의 과도한 저항이 있을 시 대처, 유치장 사용 등으로 조사되었다.

신속수사팀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 사항(혹은 상황)은 '신속수사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로 나타났으며,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속수사팀의 평가에는 양적·질적인 평가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양적 평가 기준 중 한 가지는 높은 확률로 수사건수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건수를 중심으로 한 신속수사팀 업적 평가는 신설 초기의 신속수사팀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고, 과중한 업무와 함께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신속수사팀에 대한 선호나 지원율을 낮출 가능성도 있어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 대응 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 중 신속수사팀이 1순위로 꼽은 사항은 '현장에서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항거할 경우, 위험에 노출'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야간 근무 직원의 위험 노출', '유치장에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 후 난동자 제어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범죄예방팀과의 협업과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상황에서의 갈등 상황에서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는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한

전담직원과의 갈등'으로 조사되었다.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는 전담직원의 입장에서 월권으로 느낄 수 있으며,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대상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전담직원 경력이 있는 신속수사팀은 이러한 전담직원의 입장을 공감하며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업무 역할이 모호한 현재의 체제에서는 전담직원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7.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역할

두 직군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각 역할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피부착자의 사회복귀 지원(원호, 멘토 등), 피부착자의 재범예방(생활확인, 행동교정 등), 전자장치 관리, 지도·감독은 전담직원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속수사팀 만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업무는 체포·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로 나타났다.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속 수사,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업무는 신속수사팀과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업무는 전담직원과 특사경, 신속수사팀 모두의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인식하는 각 직군의 역할이 불일치하는 영역도 나타났다. 고위험자 정보 수집, 사실 유무 확인 등 상시관리 업무에 대해 전담직원은 전담직원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고 인식했다. 전담직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인식이 불일치하는 업무는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업무의 주체가 모호해진 영역으로 이해된다.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모두가 특사경이 되면서, 과연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누가 언제 특사경이 되는가에 대해 확실히 구분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관련자의 이해가 통일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특사경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업무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8. 개선방안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체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선필요사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법무부의 지원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중요도-실행정도 차이 분석(Important-Performance Gap Analysis: IPGA)을 실시하였다. IPGA 매트릭스 상중점개선영역에 배치되며 중점과의 거리가 가장 먼 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하였다.

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은 '수사, 소재추적기법, 효과적인 강제수사 등 수사교육'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속수사팀의 업무 숙련'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은 '안정적인 업무환경'으로 나타났으며, 명확한 업무 범위, 적정한 권한 순이었다. 지원체계 및 시설 하위요인에서 신속수사팀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길 원하는 사항은 '킥스 시스템 지원'이었으며, 협조체계, 구체적인 업무 지침, 독립적인 사무공간 순으로 나타남.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경찰 · 검찰 · 법관의 인식'이었다.

개인의 역량 향상, 제도 개선, 지원체계 및 시설확보, 인식 개선 하위영역 중 중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위요인은 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나타나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인식 지원체계 및 시설확보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요인은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경찰 및 검찰에서의 공조

경찰과 검찰에서의 공조체계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 대응 경험이 있는 경찰과 특사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면담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시 현장 대응과 수사를 경찰 협조에 의존했던 반면, 제도의 도입 이후 전자감독 직원들이 현장 대응과 수사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력이 분포해있고 범죄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 권한이 있는 경찰의 협조는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훼손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도 적극대응하고 있어 신속성 확보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협조 요청 시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문제, 체포자 인계 관련 세부 업무 협조 등은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후 지청별로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 간담회, 핫라인 구축을 통한 법률자문 제공 등 다양한 방면으로 공조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신속수사팀의 지원 요청 적극성에 따라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지청에서 관할 신속수사팀에 일정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시사점 및 정책제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업무체계, 인력 및 운영, 업무 권한과 역량, 기관과의 공조 체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먼저, 분리가 어려운 대상자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구분하여 수행하는 현행 업무체계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하며, 특히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동일한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업무 권한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면에서 대체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점진적 제재의 권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업무 역량에 대한 논의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할 물질적 인프라가 보완되어야 하고, 수사와 관련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과 검찰과의 공조에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부처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또한, 향후 제도 평가 도구로써 단순 사건 대응 건수만이 아닌 실제적인 위반이나 재범 감소로 이어지는지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을 제언하였으며, 체계적인 자료 축적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례를 예시로 전체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활용하는 현실적 관점에서의 제도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서 론

최 지 선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목적

국내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전자감독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전자감독은 2009년 미성년자 유괴범, 2010년 살인범, 2014년 강도범으로 적용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고, 2020년에는 기존 4대 특정사범(성범죄범, 유괴범, 살인범, 강도범)뿐 아니라, 가석방되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전자장치부착조건부 보석제도가 시행되면서 집행사건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전자장치의 성능을 개선하고, 1:1 전담보호관찰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전자감독 제도는 보호관찰의 주요업무로 자리매김 하였다.

확대되는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가장 최근 도입된 제도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이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대부분 재범 고위험군인 만큼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자감독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가 적절히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적절한 제재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 수준과는 별개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관리와 감독, 제재 업무를 모두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존재해왔다. 특히, 대상자의 전자장치의 훼손과 같은 효용유지의무 위반 범죄와 준수사항 위반 관련 제재조치를 경찰의 협조에 의존해오면서 제재 조치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

〈사례〉

"미성년자 강간으로 징역 5년을 마치고 전자감독을 받던 A씨(60세)의 경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이 3회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나, 6개월간 관련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또다시 장애인을 강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졌다면 추가 재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A 대상자 : 성폭력(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징역 5년, 전자감독 3년

출처: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 법무부 보도자료, 2021.5.3.

제재조치의 신속성과 전문성이 지적되어오면서, 대상자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고, 2021년 6월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 TF'를 운영하고 특사경 수사사례 및 이전 전자감독 관련 수사와 소송기록을 검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약 2개월 후인 2021년 8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 훼손 전후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사건('강윤성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신속한 재정비를 통해 향후 발생할 사건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 내에 제재조치를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관찰, 특히 전자감독 분야에서는 조직과 제도, 실무적 대응 등 다각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중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1]이 이어져오고 있는 만큼, 현황 진단과 제도의 안정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와 신속수사팀 도입 등 현황을 진단하고, 2)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에 있어 국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를 발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3) 관련 실무가의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4)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주거지 5번이나 가고도 살인 혐의 포착 못한 '전자발찌 수사권', 한겨레, 2021.9.1.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965.html(검색일자: 2021.12.14.)

제2절 |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논의, 문헌조사 및 법리적 검토, 현황 자료 통계 분석, 관련 실무가 심층 조사 및 면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기에 앞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도입 과정과 제도가 갖는 법리적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법리적 합리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를 통한 대상자 제재조치와 관련하여 범죄학적·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사건과 대응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특사경 제도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대상자 제재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조직 및 인력, 교육 일정, 관련 지침의 변화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전자감독 제도를 국내보다 장기간 운영해오고 있는 미국과 유럽, 호주에서의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에 대한 정책 및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국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관련한 문헌조사 뿐만 아니라 미국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문헌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실질적인 운영 현황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미국 보호관찰제도에서의 보호관찰관의 권한과 대상자 제재조치 수준 등 국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의 범위에 대한 법리적 논의도 포함하였다.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먼저 현재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전자감독 전담 직원 및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서는 특사경 제도와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 업무변화, 기대효과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조업무를 수행하는 주 기관인 경찰과 검찰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해 전자감독 제재업무 관련 공조에 대한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전략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이론적 논의

김면기 · 최지선 · 성유리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법적 · 제도적 타당성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사회가 전문화 · 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특별한 경찰제도이다. 특정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현장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검찰청 · 경찰청 ·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일반사법경찰과 달리 특별사법경찰은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2]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에 의하여 범죄수사에 대한 집무상의 규율을 받게 된다. 1956년 이 법 제정 이후 특별사법경찰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특별사법경찰관은 약 2만여 명에 달하고 송치사건은 10만 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3]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세청이다.

---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위 자료 기준으로 국세청에는 조세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이 약 4,400여명 정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 약 1,670명, 원산지 허위표시 범죄를 수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 약 1080명이 있다. 그 외 법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관세청,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다양한 중앙행정부처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행정에 대한 법집행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적극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의 특별사법경찰단이다.[4] 경기도는 2009년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를 신설한 이래 꾸준히 인원이 증가하였고, 현재는 2단, 14팀, 250여명정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도입배경 및 입법과정

2020년 12월 8일, 「사법경찰관직무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6월 9일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일반사법경찰이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보호관찰소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형법 및 특별법의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는 일반사법경찰은 전자장치 및 전자감독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5] 이에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담당함으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해당 법률의 제안경위 및 심사과정에서 확인된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법률에서는 제안이유로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는 피부착자의 관리·감독과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원화 되어

3) 檢·警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 한국경제, 2018.5.29.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2969951(검색일자: 2021.12.14.)
4)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special_cop/gg_special_cop-history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0호, 2020. 12.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참고; 문희갑,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호관찰 제20권 제1호, 2020, 102면.

있어 수사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업무 과중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6]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법률안 검토보고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다.[7] 동 보고서에서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의무위반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 "위치정보 해석 능력 등 전자장치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위반행위의 고의성 유무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부착자와 일정한 인적관계를 형성할 것이 요구"되는데, 일반사법경찰관의 경우 업무 특성상 전자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피부착자와 밀접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수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자장치 훼손자 처벌도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정도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다.[8]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전자장치 관련 의무위반 등의 범죄 수사는 특정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신속성이 요구되나,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시 담당 경찰의 업무량, 전문성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해지며, 특히 보호관찰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으로 수사기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9] 이에 따라 수사의 전문성,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 법률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심사결과를 제시한다.

관계기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해당 업무의 담당자들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의 부여는 전문성과 수사역량, 대상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법무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련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 경찰권을

---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경위, 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0625호)

7) 2020. 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8) 검토보고서에서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제 평균적인 처벌 수준은 "징역형 9월, 벌금형 4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9) 검토보고서에서는 2018년 전자감독장치 준수사항 위반 범죄(156건) 관련하여,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평균 42일이 걸렸으며, 최장 8개월 30일까지 걸렸다고 설명한다.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이견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설명, 관계부처 담당자의 설명에서도 특이한 점은 확인되지 않고 이후 국회의원들 간에도 별다른 이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법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설명이 눈에 띈다. 2020. 11. 17.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한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보호관찰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집행 현장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내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으니까 너 준수사항 위반하면 바로 입건해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경찰에 너 수사 의뢰한다' 그러면 당사자한테 강제하는 그 정도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10)]

이후 2020. 12. 8.「사법경찰관직무법」이 개정되었고, 2021. 6. 9.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되었다.

3. 법적 · 제도적 타당성 검토

2007년「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도입된 전자감독제도의 주 대상은 성폭력 사범들이었다.[11)] 이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12)] 살인사범,[13)] 강도사범으로[14)] 적용 대상이 점차 확장되었다. 이로 인해 시행초기인 2008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18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누적된 대상자는 9,260명에 달하고 있다.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이에 맞추어 2008년에는 48명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273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문희갑, 2020). 2020년 2월 4일 법률 개정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재판단계에서 보석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이

10) 국회사무처, 2020,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0. 11. 17. 73면
11) 2007.4.27. 제정된「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사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동 법률은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성폭력 및 살해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되었다.
12) 2009. 5. 8. 기존의 법률이「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미성년자약취유인사범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다.
13) 2010. 4. 15. 법률이 개정되어 살인사범들도 대상이 되었다.
14) 2012. 12. 28. 법률이 개정되어 강도사범이 추가되었다.

가능해졌고 일부 가석방자에만 해당되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모든 보호관찰부 가석방자도 가능해졌다.[15]

이처럼 전자부착장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관찰관이 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해왔고,[16] 보호관찰에서 전자감독 업무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17]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 속에 수사의 전문성, 효율성, 신속성 향상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아쉬움도 있다. 앞서 살펴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논거들이 과연 얼마나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의 전문성 부족, 수사의 신속성 부족 등을 주된 논거로 삼고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인식 내지 가정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입법논의 과정에서 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일반사법경찰이 전자장치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지 못하는 근거로 전자장치 훼손사건에 대한 형량이 낮게 부과된다는 사실이[18] 거의 유일한 실증적 근거로 제시되었다.[19] 그러나 「전자장

---

15) 개정전에는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약취유인, 강도사범에 한정되었다.

16) 미국 연방법원 홈페이지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연방법집행공무원(federal law enforcement officers)임을 설명하고 있다.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probation-and-pretrial-officers-and-officer 2021년 현재, 미국 전역에는 약 53,508명의 보호관찰관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https://www.zippia.com/probation-officer-jobs/demographics/

17) 미국 연방보호관찰관의 경우 2019년 총 7,506건의 전자감독을 수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8,237건으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18)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4조(피부착자의 의무) ①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의 '전자장치 훼손'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과연 얼마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인지 의문이다. 훼손과 관련된 구성요건인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전자장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검토를 요한다. 형법상의 일반 범죄를 다루는 경찰관들도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범죄들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20] 전자감독제도에 '전자장치'라는 전문적인 장비가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관에게 '과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속단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사의 신속성에 대한 근거도 다소 피상적이다. 입법과정에서 제시된 유일한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하여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의뢰시 검찰송치까지 소요된 기간을 제시한 2018년도의 통계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일반사법경찰 수사시 평균 42일이 소요되고, 최장 8개월 30일까지 걸린 사례가 있음을 적시한 바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법무부는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사건처리에 사이 재범 사건들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21]

그러나 사건 처리에 평균 42일 소요되는 것이 과연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출석요구, 불응시 체포영장 신청, 참고인 조사 등을 위해서는 분명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설사 보호관찰관이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 2020. 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9면. 동 보고서는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실제 평균적인 처벌 수준은 "징역형 9월, 벌금형 4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0) 대표적으로 형법상의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해당한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출석한 법무부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이게 보통 전자장치에 대한 기본원리 이런 것을 경찰이 모르 기 때문에 수사 의뢰 되면 많이 걸릴 때는 8개월도 걸리고 통상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가서 또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도 안 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재범 사건도 있고……"라고 진술한 바 있다. 국회사무처, 2020,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0. 11. 17. 72면

특별사법경찰로서 직접 수사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보호관찰관이 참고인 진술을 하러 가서 또 조사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은 사건대로 처리도 안 되고”라고 설명하였지만, 보다 신속하게 ‘진술서’ 형태로 참고인 진술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건 처리 지연과 재범발생이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22] 결국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명분으로 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도입은 다소 막연하게 제시된 측면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고 만나는 보호관찰관들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이다. 전문성 강화와 신속성 향상의 실증적 근거 부재를 지적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전자감독 특사경의 업무처리에 따른 전문성과 신속성의 향상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존의 보호관찰관들이 사법경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 없이 사법경찰 업무를 행하게 됨으로 인한 문제는 뚜렷하다는 점이다. 입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므로 강제수사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음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23] 그리고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교육이므로” 수사관으로서의 전문성 향상에도 아직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24]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과정에서 제도 시행으로 인한 법적·제도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조직 정비 및 교육 등에 대한 준비도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련의 사태 이후 뒤늦게 소위 ‘신속수사팀’이 구성되어 운영되는 것도 이러한 시각을 방증한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필요성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22) 구속 사건이 많지 않을뿐더러, 최종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3) 2020. 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1면.
24) 2020. 7.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12면.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 범죄학 · 사회심리학에서의 제재 효율성

1. 범죄학의 제재이론

형벌의 제재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제재이론은 베카리아(Beccaria), 벤덤(Bentham)과 같은 18세기의 고전 이론가들로부터 발전되었다(Beccaria, 1986 [1764]; Bentham, 1988 [1789]). 제재이론의 전제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이득 혹은 손실인가에 대한 판단에 기반하여 법을 따를지 혹은 어길지를 결정한다는데 있다. 제재이론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다수의 형사정책과 실무의 기초적인 명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제재이론은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신속성(celerity), 강도의 적정성(severity)을 개인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억제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형벌의 확실성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형벌을 받게 될 경우 제재효과가 높아진다는 가설이며, 형벌의 신속성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형벌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 시행되어야 제재효과가 높아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도의 적정성은 범죄에 대한 형벌의 강도가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알맞은 강도로 부과되어야 제재효과가 있음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철학적 논의로 다수의 형사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 되어 왔으며, 1960년대 범죄학자들이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면서 실증적 연구도 수행되어 오고 있다. 제재효과에 대한 가장 주요하고 알려진 연구는 1968년에 수행된 연구로, 형벌의 정확성과 강도가 살인범죄에 대해 제재효과를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했다(Gibbs, 1968). 그러나 연속된 연구에서 형벌의 확실성은 범죄에 대해 제재효과를 가지지만, 형벌의 강도는 확실성이 담보될 때에만 재제효과를 가짐을 밝혀냈다(Tittle, 1969). 이후 연구에서도 제재이론의 세 가지 제재요인인 확실성, 신속성, 적정성의 효과성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연구에서 형벌의 강도에 대한 적정성의 제재효과보다 형벌의 확실성의 제재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으며(Geerken & Gove, 1977; Maxwell & Gray, 2000; Wright et al., 2004; Matthews & Agnew, 2008), 형벌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증적 검증보다 이론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Tomlinson, 201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학자들은 개인이 범법행위를 할지 혹은 하지 않을지를 고려하는 시점에, 해당 행위를 했을 때 형벌을 받는 것이 예외 없이 확실할 경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를 측정하고자 했다. 반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받게 되는 확률이 낮아 충분히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을 어기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특히 형벌의 정확성은 '범죄를 저지르고 회피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의 재범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어 검증되기도 했다(Stafford & Warr, 1993). 실제로 형벌이 다수의 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책임을 회피해본 경험을 한 범죄자로 하여금 향후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회피할 수 있다는 일종의 믿음을 생기게 함으로써 재범을 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형벌이 신속하게 부과되고 시행되었을 때 제재효과가 있다는 명제인 신속성에 대한 연구는 형벌의 확실성이나 적정성과 비교하여 그 관심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신속성의 제재효과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단계에서부터 형벌의 확실성이나 강도에 비해 설명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형사사법체계에서 체포와 구금의 지연,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형벌의 지연은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요소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체포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길고, 이후에 체포되더라도 재판까지의 기간이 길어 최종 형량을 받을 때까지 충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정확성이 있고, 그 형벌의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행위를 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형벌 강도의 적정성은 한때 가장 주요한 제재요인으로 고려되어 연구되어왔다. 이는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과중하면 과중할수록 잠재적 범죄자가 형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다수의 연구논문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다(Paternoster, 1987;

Schneider & Ervin, 1990; Kleck et al., 2005; Paternoster, 2010). 일례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의 강력범죄율은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보다 낮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Ehrlich, 1973; Jacobs & Carmichael, 2002; Radelet & Lacock,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높은 형량이 낮은 범죄율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감된 범죄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Kleck et al., 2005). 형량의 강도와 제재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 오면서 과도하게 과중한 형량보다 적정한 수준의 형량 부과가 제재효과에 영향력이 있음을 증명하였으며(Van Ginneken & Hayes, 2017), 일부 특정한 종류의 범죄(예: 절도)에서만 형량의 강도가 강할수록 제재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도 있다(Decker et al., 1993).

제재이론은 역사적으로 긴 시간 동안 논의를 이어오면서 실증적인 검증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현상을 검증하는 연구 중에서도 제재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특히 어려운데, 제재효과가 실제로 적용된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를 행하지 않을 것이고, 범죄를 하지 않는 것은 실제 범죄 사건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를 우회하여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반대 현상인 제재가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이론의 가설을 명확하게 검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각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어 전제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결정이 개인의 '합리적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판단의 기준이나 방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전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한 결정이 제재요인에 의한 효과인지를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불어 한 가지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여 제재효과로 이어졌는지, 혹은 세 가지의 제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효과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것 또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처럼 이론의 검증에 있어 다양한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제재이론은 형사정책에 원칙적인 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범죄학 이론이 파생되고 정책의 효용성이 검증되어 오고 있는 점은 제재이론의 타당성과 논리성을 입증하는 일면이기도 하다.

이렇듯 제재이론은 다양한 범죄학 이론의 전제로, 철학적 논의로 발전되고 일부는

실증적으로 증명되어오면서 현대 사회의 다수의 형사정책에 일종의 원칙으로 활용되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0년대 범죄에 대한 '엄중대응(Get tough)' 선포 이후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자 한 사례나, 형량의 강도를 높여 재범을 억제하고자 했던 '3진 아웃 제도(Three-strike law)[25]'와 같은 제도도 제재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국내에서도 적정한 형량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양형이 상향조정되거나(형벌의 강도) 법제도를 보완해 범죄 행위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받도록 하고(확실성), 수사기술을 발전시켜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신속성), 다양한 형사정책적 조치가 제재이론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제재이론의 세 요소인 형벌의 확실성, 신속성, 강도의 적절성의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제도 이전 전자감독 대상자의 발찌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수사가 시작되더라도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소수였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는 다수의 위반 건수가 축적될 때까지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대상자들이 위반에 대한 처벌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혹은 처벌을 받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의 처벌(예: 벌금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은 제재이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범죄 억제 효과 요인 세 가지, 형벌의 정확성, 신속성, 적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상자의 지속적인 의무 위반이나 이 외의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의무 위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적정한 정도의 엄중한 수준으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억제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며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

25)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었던 상습범죄자 장기구금제도로,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3차례 이상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최고 25년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규정. 출처: 캘리포니아 대법원 홈페이지, https://www.courts.ca.gov/20142.htm(검색일자: 2021.12.17.)

2. 사회심리학의 행동이론

일반적으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재사회화를 돕는 동시에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26]로 전담직원은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미온적인 대응은 피부착자의 문제행동을 제재하거나 재범을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대상자가 전담직원의 지도·감독에 순응하지 않는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와 신속수사팀을 신설,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재범가능성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의 이러한 전략은 인간의 행동이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인 심리학의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Operant Conditioning Theory)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은 자극과 반응을 연결하여 특정 행동을 생성해내거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Skinner, 1938). 스키너는 강화나 처벌을 통해 인간의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바꿀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한 비둘기나 쥐와 같은 동물에게 보상인 먹이를 주도록 설계한 스키너 박스로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을 탄생시켰다(Skinner, 1948). 예를 들어, 붉은 종을 치면 먹이가 나오도록 설계된 스키너 박스에 비둘기를 넣는다고 가정하자. 비둘기는 처음에는 우연히 종을 눌러 먹이를 먹게 되겠지만, 이 우연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의도적으로 종을 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스키너는 붉은 종을 치는 행위를 특정 행동, 먹이는 강화물(reinforcer)이라고 정의하였다. 강화물의 적절한 사용은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둘기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약한 전기충격을 주거나(정적 처벌), 먹이통을 치우는(부적 처벌) 등 처벌물(punisher)을 사용함으로써 비둘기의 특정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 종을 치는 행위를 제거하길 원한다면 비둘기가 붉은 종을 칠 때마다 먹이를 주는 대신, 박스에 약한 전류를 흐르게 하여 비둘기가 불쾌한 감각을 느끼도록 한다. 처벌을 몇 차례 겪은 비둘기는 더 이상 붉은 종을 치지 않게 된다.

---

26) 세부적인 내용은 제5장 제1절 참고

기본적으로 행동이론은 동물과 인간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므로 이러한 조작적 조건형성의 원리는 인간의 행동 조작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미국의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는 즉각적인 처벌의 효과를 설명하는 좋은 사례이다(Sherman & Berk, 1984).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연구는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것이 단순한 경고나 단기 구류 후 훈방보다 가정폭력 재범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연구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포 혹은 경고 후 6개월 동안 가정폭력 재범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재범률이 10% 이상 감소하였으며 가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체포한 경우에 재범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Sherman & Berk, 1984).[27]

이와 같이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 따라 전자감독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피부착자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먼저, 위반 행동과 제재 사이의 간격이 길어서는 안 되며(처벌의 즉시성), 처벌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처벌 대상자도 처벌 사유를 알고 있어야 한다. 신속수사팀은 수사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고, 준수사항의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적 조건형성 이론에 따라 대상자의 행동교정을 기대할 수 있다.

---

27) 타 지역에서 미니애폴리스 가정폭력 실험을 반복 실험한 연구에서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더 재범을 많이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결과도 도출되었으나(Davis, Smith, & Nickles, 1998), 경찰의 즉각적인 체포 및 구속의 효과성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경찰의 체포 및 구속의 효과성이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Maxwell et al., 200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최지선 · 성유리

제3장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현황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제재조치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던 절차이다. 그러나 적절한 수준의 제재와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및 신속수사팀 신설로 이어졌다. 제1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범죄학의 제재이론 및 사회심리학의 조작적 조건형성에서 제안하는 요건들이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 이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과 제재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제2절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운영 현황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조사하여 조직, 인력, 교육 등의 변화를 살펴보고, 업무형태와 권한 등 새롭게 부여받게 된 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제1절 |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 및 제재 현황

1. 준수사항 위반 및 제재 현황

먼저 준수사항 위반과 제재 현황을 확인하였다. 수사의뢰는 외출금지, 접근금지, 출입금지, 음주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택장치를 무단으로 설치 변경, 전자장치의 신호실종, 재택장치의 신호실종, 부착장치의 감응범위 이탈과 같은 위반을 특정 기간 동안 수 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동종 준수사항일 경우임) 혹은 전자장치

부착 후 일정 기간 동안 기준 횟수 이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추후에도 위반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반 내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수사의뢰가 가능하다(「전자장치부착법」시행지침 제64조 제3항).[28] 예를 들어, 전자발찌 훼손은 중대하게 여겨지는 심각한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훼손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수사의뢰를 하고 있다.

[표 3-1]은 전자감독제도의 도입부터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이전까지 이뤄진 수사의뢰 현황을 제시한다. 한 번의 수사의뢰에 다수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훼손, 재범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수사의뢰 총 건수와 준수사항 위반과 훼손, 재범 건수의 합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확대[29]로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실시사건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사의뢰건수는 실시사건 수와 비례하게 증감하지 않았으며 2013년부터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 이전까지 100에서 200건 사이를 오가는 수준에 머물렀다.

[표 3-1] 경찰 수사의뢰 건수

년도	전자감독 실사 사건 수	수사의뢰			
		총 건수	준수사항 위반	훼손	재범
’08.	205	1	-	1	1
’09.	591	4	1	4	-
’10.	714	22	11	11	3
’11.	1,561	33	31	12	15
’12.	1,747	59	47	12	21
’13.	2,555	134	128	6	30
’14.	3,260	158	149	9	48
’15.	3,598	209	198	11	53
’16.	4,066	160	142	18	58
’17.	4,350	160	149	11	66
’18.	4,668	179	156	23	83

28) 비공개 지침으로 기간 및 횟수 등 미기재

29) 2010년, 성폭행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살인범죄자도 전자장치 대상자로 확대되었다. 2014년, 강도범죄도 전자장치 대상범죄로 확대되고 2020년, 12차 법률개정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와 일반범죄 가석방 전자감독이 도입되어 대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년도	전자감독 실사 사건 수	수사의뢰			
		총 건수	준수사항 위반	훼손	재범
’19.	4,563	159	138	21	55
’20.	6,044	129	118	11	41
’21.7.	8,166	59	54	5	14

* 전자보석은 전자감독 실시사건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전자감독 실시사건 수는 해당 연도에 새로 개시된 사건과 집행 중인 사건의 합이며, 2021년 전자감독 실시사건 수는 7월 기준임
*** 자료출처: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 재범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보도자료(2021. 9. 3.) 및 법무부 내부자료

물론, 전자감독 대상 범죄유형이 확대되고 가석방이나 집행유예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면서 전자감독 실시사건 수는 증가하였으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위험군은 증가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21년 9월 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훼손을 제외한 효용유지의무 위반 건수는 2016년 996건에서 2018년 1,886건으로 89.4% 증가하였다. 준수사항 중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2016년 3,264건, 2017년 3,217건, 2018년, 4,633건, 2019년 4,735건, 2020년 5,121건이었으나,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2016년 142건에 불과하였으며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이 가장 많았던 2020년에는 129건만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1] 참조).

준수사항 위반 건수에 비해 수사 의뢰된 사건이 현저하게 낮은 현실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즉각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는 동종 위반 행위를 일정 기간동안 수회 이상 위반할 시 수사의뢰 한다거나, 부착명령 개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수 회 이상 위반하고 지속적인 위반 위험이 있을 시에 수사의뢰한다는 시행지침(「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64조 제3항)을 감안하더라도 그간 전담직원의 제재수준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그림 3-1] 준수사항 위반과 준수사항 위반 수사의뢰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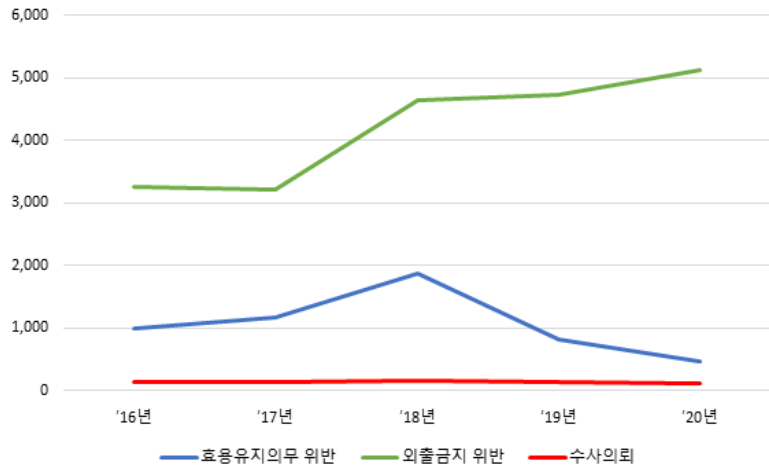

자료출처: 전자감독대상자 훼손 · 재범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보도자료(2021. 9. 3.) 및 법무부 내부자료

2. 경고 누적과 준수사항 위반, 훼손 및 재범간의 관계

피부착자의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반의 위험성이 경미하거나 없다고 판단되어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서면경고를 하고 그 내용을 보호관찰시스템에 입력한다. 따라서 서면경고가 이루어진 날짜와 내용, 횟수를 참고하면 서면경고 후 수사의뢰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재이론과 조작적 조건형성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행동 이후 처벌이 신속하게 혹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처벌의 효과성을 짐작함에 있어 시간 간격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 이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 조치 후 수사의뢰가 이루어지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와 수사의뢰 간의 시간적 거리가 전자장치 훼손이나 재범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안타깝게도 현재 데이터 추출 자료에는 서면경고일과 수사의뢰일 만이 독립적으로 전산화되어 있다. 즉, 서면경고 및 수사의뢰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서면경고와 수사의뢰 간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서면경고와 수사의뢰 간의 시간 상 거리를 계산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고의 누적과 준수사항 위반, 훼손 및 재범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경보의 누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법무부의 도움을 받아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범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2012년~2021년 10월)을 추출하였으며 이 중 오류를 제외한 총 302명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사의뢰자는 전원 남성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43세(범위: 22~73세)이었다. 이들의 94.0%는 성폭력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였고, 살인이나 강도, 미성년자 유괴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부착자는 5.0%이었다. 수사의뢰된 피부착자의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은 108.36개월(범위: 1개월~263개월)이었다. 교통이나 사기횡령 등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기타사범 3인을 제외한 전자발찌 평균 부착기간은 119.00개월(범위 12개월~263개월)이다. 수사의뢰된 피부착자의 과반수는 무직으로 조사되었으며(53.3%), 일용노동직을 포함한 노동직은 16.9%로 나타났다. 수사의뢰된 피부착자 중 60명(20.2%)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수사의뢰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단위 : 명(%), M(SD))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성별	남성	302(100.0)	-
연령	20대	28(9.3)	44.43(10.74)
	30대	79(26.2)	
	40대	91(30.1)	
	50대	81(26.8)	
	60대	21(7.0)	
	70대 이상	2(0.7)	
처분유형	성폭력	284(94.0)	—
	강력범죄	15(5.0)	
	기타	3(1.0)	
전자발찌 부착기간	3년 미만	31(10.3)	108.36(50.57)
	3년 이상-5년 미만	30(9.9)	
	5년 이상-10년 미만	148(49)	
	10년 이상-15년 미만	66(21.9)	
	15년 이상	27(8.9)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직업	무직	161(53.3)	—
	노동	51(16.9)	
	자영업	12(4)	
	피고용자	64(21.2)	
	기타	14(4.6)	
신상정보 공개고지여부	비해당	235(80.2)	—
	해당	60(19.8)	

*주1: 전자발찌 부착기간의 단위는 개월임
*주2: 신상정보 공개고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피부착자 7인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분석함.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여부는 295명의 자료임

수사의뢰를 개시하게 된 서면경고 날짜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자료 상 첫 서면경보일과 첫 수사의뢰 일 사이의 날을 산출하여 '수사의뢰 개시소요일' 변수를 산출하였다. 서면경고 없이 바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거나 서면경고와 수사의뢰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0으로 입력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를 의뢰하게 된 위반사건 이전에 동일 위반으로 서면경고로 받았는지, 혹은 서면경고 없이 바로 수사를 의뢰한 것인지 세부적인 의뢰 경로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당 변수는 서면경고와 수사의뢰 사이의 간격이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추정하는 변수로만 해석한다.

[표 3-3] 서면 경고 수, 수사의뢰 수, 재범 수, 수사의뢰 개시 소요일

구분	M(SD)	서면경고 수	수사의뢰 수	재범 수	수사의뢰 개시소요일
서면경고 수	5.31(5.41)	1			
수사의뢰	2.02(2.30)	.694***	1		
재범	3.33(3.21)	.594***	.606***	1	
수사의뢰 개시소요일	415.86(626.63)	.028	-.223***	.096†	1

***p<.001

[표 3-3]에 제시한 상관분석 결과, 서면경고 건수는 수사의뢰 건수(r = .694, p <.001) 및 재범건수(r = .594,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서면경고 건수가 많은 피부착자는 수사의뢰 건수와 재범 건수도 많았다. 수사의뢰 건수는 재범 건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r = .606, p<.001) 수사의뢰 개시소요일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 = -.223, p<.001). 수사의뢰 건수가 많은 피부착자의 경우 재범을 더 많이 한 반면, 서면경고로부터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서면경고로부터 수사의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수록 재범을 더 많이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r = .096, p=.070). 수사의뢰 개시소요일과 재범 간의 관계는 통계적 경향성만 나타났으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 3-4]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20, '21년)

연도	연번	처분내용	위반 횟수	내용
'20	1	형기종료	0	-
	2	형기종료(소급)	1	효용유지의무위반
	3	가출소	0	-
	4	형기종료(소급)	2	외출제한위반, 지도감독 불응
	5	가출소	0	-
	6	형기종료(소급)	3	주거제한위반, 음주제한위반, 지도감독 불응
	7	가석방	2	외출제한 위반, 재범(특수절도)
	8	형기종료	0	-
	9	형기종료	1	효용유지의무위반
	10	형기종료	0	-
	11	형기종료	1	재범(마약)
	12	가종료	1	재범(강도)
	13	형기종료	2	효용유지의무위반, 지도감독 불응
'21.8	1	형기종료	0	-
	2	형기종료	1	신상정보 미신고
	3	형기종료	1	음주운전
	4	형기종료	0	-
	5	형기종료(소급)	1	외출제한위반
	6	형기종료	0	-
	7	형기종료	0	-
	8	형기종료	0	-
	9	가석방	0	-
	10	형기종료(소급)	2	외출제한위반, 효용유지의무위반
	11	가석방	0	-
	12	형기종료	1	신상정보 미신고
	강윤성	형기종료(소급)	2	외출제한위반 2

* 자료출처: Safe today(2021). 기사첨부 자료[30]

실제로 전자발찌 훼손자는 훼손 이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김영배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13명 중 8명은 훼손 이전에 준수사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으며, 2021년 8월까지 전자장치를 훼손한 13명 중 6명이 훼손 전 준수사항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4] 참조).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하려는 전자감독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업무는 전자발찌 훼손이나 재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제재의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의뢰에 도달하게 된 경고 내용과 각 경고가 이뤄진 날짜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법무부는 경고내용과 경보일자를 연동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상세내용을 확인하거나 추출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자를 하나하나 검색해야하는 실정이다. 신속수사팀의 업무 효율성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데이터 추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일괄 추출 시에도 각 경고일자와 경고내용 등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저장방법 및 관리에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제2절 | 전자감독 특사경제도 운영 현황

2021년 6월에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주요 시점은 시행 후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를 운영해온 1차 일부개정까지의 시기와 전자장치 훼손사건들의 발생을 계기로 2차 전부개정을 거쳐 '신속수사팀'이 발족·운영되고 있는 시기로 나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제도의 시행 이후 현황에 대하여 시점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을 진단하고자 한다.

---

30) '그놈 전자발찌' 훼손 예측은 가능했다?, Safe today, 2021.10.5. http://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1103 기사첨부 자료: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_김영배의원실 요구자료. http://www.safetoday.kr/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10/&savefilename=61103_6582.hwp&filename=%C0%FC%C0%DA%B9%DF%C2%EE%20%C8%D1%BC%D5%C0%DA%20%C1%D8%BC%F6%BB%E7%C7%D7%20%B1%E2%C0%A7%B9%DD%20%C7%F6%C8%B2.hwp(검색일자 2021.12.13.)

1. 시점별 운영 현황 변화

가. 시행초기: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지정 및 운영 (시행 · 1차 개정)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2020년 12월 8일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에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여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전자장치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받았고, 6개월 이후인 2021년 6월 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법무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자감독 특사경 도입 TF'를 발족해 특사경 수사 사례를 수집하고, 전자감독 관련 수사 및 소송기록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수사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도 시행 이전 교육으로는 전체 전자감독 특사경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연수원 특사경 수사실무과정과 전자감독 특사경 직무교육을 실시했다.[31]

2021년 6월 9일 법무부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의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시행일부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관련 인력은 아직 충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는 전국 6개 관할기관을 지정하여 관할 구역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표 3-5] 참고), 이를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로 지칭하여 각 관서별로 수사만을 전담하는 '수사요원' 1인과 수사요원이 부재 시 업무를 대리할 부담당자 1인으로 인력을 구성하였고, 각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의 장은 야간 혹은 휴일 발생 수사사건을 대비해 특별사법경찰관 비상대기조를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광역수사요원 6인은 '전자감독 광역수사요원 실무심화교육'을 통해 실무적인 대비를 하기도 했다.

[표 3-5]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수사관할 및 범위 (제정 2021.6.9., 1차 개정 2021.8.10.)

연번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관할 구역
1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보호관찰소,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의정부보호관찰소, 춘천보호관찰소
2	대전보호관찰소	대전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
3	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

31) 법무연수원 교육 5일, 특사경 직무교육 1일

연번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관할 구역
4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 울산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5	광주보호관찰소	광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제주보호관찰소
6	수원보호관찰소	수원보호관찰소, 인천보호관찰소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제도의 시행 이후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별로 수사요원을 중심으로 수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속수사팀이 발족되어 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시점인 2차 개정(2021.10.12.) 이전까지 수사건수는 총 40건이었다.[32]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 관할 기관에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담직원이 수사요원에게 수사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등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먼저 훼손 발생 기관에서 주변 기관과의 공조 등으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착자를 3시간 이내 검거하지 못했을 때는 훼손 사건이 발생한 관할기관의 장이 수사 임시 조직인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관할기관장이 수사본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한다. 수사 팀장은 해당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의 전자감독과장과 관할 기관의 전담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팀원은 수사본부장과 팀장, 근접 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관 내 특사경 중 적정인원을 선발해 피부착자 검거 시까지 운영하게 되는데, 검거하지 못할 경우 7일간 운영한다.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경찰에 의존해야 하는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주었으나,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직원이 6개 광역 단위에 각 1명씩만 배치됨으로써 긴급 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으로 보인다. 각 광역단위 대상자가 작게는 약 370여명에서 많게는 950여명이고, 각 해당 권역의 지리적 범위가 매우 넓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예: 서울보호관찰소의 관할 지역 서울 전체, 경기도 일부, 강원도 전체), 수사요원 1인이 실제적으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특사경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긴급 상황에서는 각 소에서 내부 특사경 직원을 활용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침마련과 대비를 하였으나 이 또한 한계가 존재했다. 전담 직원의 경우 특사경

32) 법무부 내부자료

권한을 부여받아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기존 업무인 전자감독 대상자 지도감독의 업무도 그대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전담 직원이 특사경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업무가 소홀해져 또 다른 사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명의 전담 직원이 관리하는 대상자의 수도 평균 약 17명[33]으로 업무 과중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온 상황에서(김지선 외, 2013; 연성진 · 유진, 2015; 한민경, 2019) 전담 직원의 인원 충원 없이 추가적으로 주어진 특사경 권한의 활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부개정: 특사경 업무 전담 신속수사팀 발족 (2차 개정)

시행 초기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제한된 인력 내에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광역수사요원에게 수사의뢰 하도록 하고, 전담직원 전체가 특사경으로 지정된 점을 활용하여 긴급사건 발생 시에 수사 인력으로 투입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 시행 약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8월 말 경,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강윤성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감독 특사경의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기존 6개 광역수사관서 체계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이 실제 운영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대상자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해오고 있던 전자감독 전담 직원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즉각적으로 체포하거나 수사를 개시하기 보다는 온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자감독 전담 직원으로서 대상자의 관리감독을 수행하다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순간 특사경의 권한으로 대상자에게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은 지속적인 대상자와의 우호적인 관계가 훼손되어 관리감독이 효과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33)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보도자료, 2021.9.3.

이러한 전담직원의 내적 역할갈등이 소극적인 특사경 권한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도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예상되었다.

그러나 '강윤성 사건'과 연달아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건들[34]을 계기로 법무부에서는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전담직원이 지도감독과 수사업무를 병행하지 않도록 전국 12개 본소[35]에 수사 등 제재 업무만을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을 발족했다.[36] 총 18개의 본소 중 근접성 등을 고려, 서울동부와 서울남부, 서울북부의 경우 서울보호관찰소에, 울산의 경우 부산에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고 제주는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해 수사팀이 아닌 수사 요원 1인을 배치하였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로 경보대응, 현장조사, 체포 등과 같은 수사업무만을 전담하고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편, 전담직원은 지도감독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수사 의뢰만 가능하며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갖지 않고 긴급사건발생 시 신속수사팀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효율적인 신속수사팀의 운영을 위해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닌 1:1 전자감독 대상자 및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또한, 훼손사건 발생시 수사본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협조중심경찰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있어 1:1 및 고위험 피부착자는 단 1회 위반만으로도 원칙적 수사를 개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1:1 및 고위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발생 시에는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하며 신속수사팀의 통제 하에 현장조사와 체포 등의 대응을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대상자의 경우 전담직원의 판단 후 필요시 신속수사팀에게 출동 및 조사요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하는 등 소재가 불명한 피부착자 중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특정 사범은 체포영장 발부 후 필요시 사건공개가

---

34)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또 있다.. 공개수배에도 12일째 잠적, 파이낸셜뉴스, 2021.9.1. https://www.fnnews.com/news/202109011024482973(검색일자: 2021.12.18.)
35) 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36)「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침」2차 전부개정, 2021.10.12.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도주 중인 피부착자를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2. 운영 현황 진단: 2차 개정 이후 후속조치 관련

가. 조직 및 인력의 변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시행 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 지침의 2차 전부개정을 거치는 등 단기간 내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제도의 운영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변화는 '신속수사팀'의 발족이라 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목적으로 신속수사팀을 발족했으나, 수사 전담 업무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인력 충원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직원 중 선발, 차출하여 신속수사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속수사팀 발족 초기, 각 본소에 배치된 신속수사팀은 관할 지역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대상자 200명 이상 기관을 A군,[37] 대상자 200명 미만 기관을 B군[38]으로 분류하여 각 기관 당 근무 인력과 근무 형태를 달리하였다. 8개의 A군 기관은 각 기관 당 신속수사팀을 7~8명 배치하여 상시 2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3.5에서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5개의 B군 기관은 각 기관 당 4명의 신속수사팀원이 4교대로 근무하여 상시 1명이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후 일부 인력이 추가 배치되어 2021년 12월 현재 총 82명이 신속수사팀원으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표 3-6] 참고).

[표 3-6]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신속수사팀 수사관할 및 근무방식 (2021.12. 현재)

연번	관할 소	관할구역	현재원	근무인원
1	수원(6)	수원, 안산, 성남, 여주, 평택, 안양	554	8명
2	서울(5)	서울,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서부, 서울북부	531	8명
3	대전(6)	대전, 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	370	6명

37) 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창원

38) 의정부(대상자 200명 이상 기관이나 관할 기관 수 등 고려), 춘천, 청주, 진주, 제주(제주는 수사 담당 직원 1인 지정)

연번	관할 소	관할구역	현재원	근무인원
4	대구(8)	대구,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구미, 상주, 영덕	439	8명
5	부산(4)	부산, 부산동부, 부산서부, 울산	344	8명
6	인천(3)	인천, 부천, 인천서부	337	9명
7	광주(4)	광주, 목포, 순천, 해남	346	8명
8	창원(5)	창원, 진주, 통영, 밀양, 거창	274	8명
9	의정부(2)	의정부, 고양	235	6명
10	전주(4)	전주, 군산, 남원, 정읍	205	4명
11	청주(4)	청주, 충주, 제천, 영동	177	4명
12	춘천(5)	춘천, 강릉, 원주, 속초, 영월	162	4명
13	제주(1)	-	64	1명
계			4,038	82명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보호관찰 분야의 인력 충원이 없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속수사팀의 구성에 대해서는 출범 이후 소위 '인력 돌려막기'로 인해 전자감독 관리감독 운영이 부실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39] 신속수사팀으로 업무가 배치된 직원들의 기존 업무를 남아있는 직원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 사건수가 늘어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속수사팀도 기존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의 6인 수사요원 체제보다는 기관수와 인력이 추가되어 한 팀이 담당하는 관할 지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관할 지역이 넓어 긴급출동 등의 신속대응이 어렵고 업무도 과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담직원이 제재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제재업무는 신속수사팀이, 지도감독은 전담직원이 각각 수행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대상자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대응하기도 했다.[40] 동시에 신속한 인원 충원을 통한 신속수사팀 운영의 전국적 확대로 신속수사팀의 운영 효율을 높일 것임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전국 모든

39) 전자발찌 범죄 대응 '신속수사팀'… 인력 돌려막기 논란, 파이낸셜 뉴스, 2021.10.18. https://www.fnnews.com/news/202110171827105217(검색일자: 2021.12.19.)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실효성 있을까, 파이낸셜 뉴스, 2021.10.17. https://www.fnnews.com/news/202110151817047950(검색일자: 2021.12.19.)

40)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보도자료, 2021.10.18.

지소인 57개 지소에 신속수사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34명의 추가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순차적인 인력 충원을 위해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에 168명의 인력을 요청했다.[41] 그러나 국가재정 등의 한계로 인해 2021년 12월 현재 인력 충원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내부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13개소에서 18개소[42]로 신속수사팀 운영을 소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가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재 신속수사팀에 4명씩 근무하고 있는 본소들에 대해서는 6명씩으로 인력을 충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3-7]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경찰 수사 의뢰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수행건수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이전	
년도	경찰 수사 의뢰
’08.	1
’09.	4
’10.	22
’11.	33
’12.	59
’13.	134
’14.	158
’15.	209
’16.	160
’17.	160
’18.	179
’19.	159
’20.	129
’21.6.8.	59
월평균 (2009-2020)	9.8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이후			
기간	년월	특사경 수사	
		직권수사	임의수사
시행~ 2차 전부개정 이전 2021.6.9.~9.	2021.6.-9.	8	32
	월평균	2	8
2차 전면개정~현재 2021.10.~12.23.	2021.10. - 12.	59	60
	월평균	19.7	20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41)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실효성 있을까, 파이낸셜 뉴스, 2021.10.17. https://www.fnnews.com/news/202110151817047950(검색일자: 2021.12.19.)
42) 예정 신속수사팀 추가 배치 지소: 서울 남부, 안산, 울산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전 경찰 수사 의뢰 건수는 월 평균 약 10건으로, 최근 5년간 연간 약 1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도입 바로 직후 광역수사요원 체제일 때는 수사 건수가 월 평균 10건으로 경찰 수사의뢰 건수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제도의 2차 전면개정 이후 신속수사팀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수행하면서 월 평균 10건이던 수사 건수가 약 4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속수사팀 발족 이전 진행된 직권 수사는 단 2건이었으나, 신속수사팀 발족 이후 10배 가까이 증가하여 대상자의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어서 수사 진행 내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 수사 의뢰가 한 달에 10.8건이었으며 평균 수사 기간은 34일이었다. 준수사항 위반자를 구속수사 한 경우는 11건이었으며, 현장 체포는 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협조를 통한 준수사항 위반자 구속수사는 2020년 한 해 동안 11건 이루어졌던 반면,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고 신속수사팀이 발족한 이후 2개월 동안 1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0건이던 준수사항 위반자 현행범인 체포도 19건으로 증가했다. 구속건수 또한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11건, 훼손으로 3건으로 나타나 경찰 협조시보다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8] 경찰 수사 의뢰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진행 내역

구분		경찰협조 (2020.1.1.~12.31.)	특사경 제도 시행 (2021.6.9.~10.11.)	신속수사팀 신설 (2021.10.12.~12.12.)
수사건수		월 평균 10.8건	월평균 10건	월평균 39.7건
수사 기간		평균 34일 이상	31.2일 이내	16.1일 이내
준수사항 위반자 구속수사		11건	4건	14건
준수사항 위반자 현행범인 체포		0건	2건	19건
구속 건수	준수사항 위반	-	-	11
	훼손	-	4	3

* 자료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나.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진단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제도의 시행과 거의 동시에 운영의 방향성이 전면 개편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시행 지침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인력의 충원 없이 특사경 업무까지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된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긴급한 출동이 필요한 훼손사건의 경우 연간 약 10에서 20여건으로 월간 약 1~2건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훼손사건 발생 시마다 일시적으로 전체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특사경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방향은 제한된 인력 내에서 최소한의 변화를 통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간 경찰에 접수되었던 수사의뢰 건수가 약 120건 정도임을 전제하고, 6명의 광역수사요원이 이전의 경찰의 역할처럼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수행했을 때, 연간 20건, 월간 약 1.7건의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 시행 이후 전부개정 이전까지의 4개월 동안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권한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이전까지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경고장 발부 등의 제재업무와 관리감독을 동시에 수행했다 하더라도 구속 및 검거와 같은 수사 업무는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면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업무이다. 기존 전자감독 직원의 업무 과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수행해야하는 특사경 업무는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담스러운 권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보호관찰직렬로 수사경험이 없는 보호관찰 직원들이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고 몇 차례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체포나 추적과 같은 수사 업무를 단기간에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체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음에서 오는 한계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적되기도 했으며,[43]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전자감독 업무 자체를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44]

---

43) 전자발찌 범죄 대응 '신속수사팀'… 인력 돌려막기 논란, 파이낸셜 뉴스, 2021.10.18. https://www.fnnews.com/news/202110171827105217(검색일자: 2021.12.19.)

44) 전자감독(전자발찌) 업무는 경찰이 담당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청와대청원 게시판, 2021.10.14. 게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3(검색일자: 2021.12.19.)

이러한 소극적인 특사경 제도의 운영 방향성은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현장 중심으로 전면 개편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법무부는 기존 전자감독 전담 직원 중 일부를 신속수사팀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제한된 인력 내에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로 판단할 수 있겠으나 특사경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중심 적극대처를 해야 하는 신속수사팀도, 신속수사팀으로 배치된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해야 하는 남아있는 전자감독 전담직원도 업무과중이 상당부분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전담직원이나 신속수사팀의 인력 충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현황 진단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 필요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제도 관련 실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전자감독 특사경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성과 전담직원과 특사경 사이의 역할갈등의 문제, 업무 역량과 인프라 구축, 유관기관과의 공조 구축 등,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주요국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관련 운영 및 정책

김미진 · 김면기

제4장

주요국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관련 운영 및 정책

제1절 | 주요국 고위험군 전자감독 제도

1. 미국

본문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자를 관리하는 미국의 전자감독 보호관찰제도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재조치 전략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가. 미국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 개요

미국 보호관찰 법제도는 1878년 메사추세츠 주에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모든 50개의 주가 성인범과 소년범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집행유예 보호관찰(probation)과 가석방(parole)이 있다. 충격감금(shock incarceration)과 같이 짧은 수형기간을 거친 후 지역 사회 보호관찰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은 법원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조건부감독제도로 수감의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은 범죄자가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처벌 또는 법률적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끔 한다. 더욱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자들에게는 집중감독(intensive probation supervision)이 요구되는데 이는 전자발찌 착용 의무화, 보다 많은 보호관찰관과의 접견 횟수, 무작위로 시행되는 약물·알코올 검사, 치료프로그램 이수 요구와 같은 준수사항을 포함한다.

이와 달리 가석방은 주 또는 연방 교도소 수감 기간 이후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및 감독을 받게 되는 제도로, 감독조건부 석방(Conditional Release)과 비슷한 개념이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감독조건부 석방은 일반적으로 형기만료 또는 일정 시간 수감 후 출소한 범죄자들을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연방의 감독조건부 석방은 주로 중범죄 사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약물밀매나 미성년자 유괴,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사건에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이러한 가석방 제도는 다시 의무적 석방(Mandatory Release)과 임의적 석방(Discretionary Release)으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 석방이란 교도소 내 모범수로 복역한 것에 대한 보상을 날짜로 환산하여 형량의 일정 부분을 단축함으로써 처음 부여받은 형기보다 더 빠르게 석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들은 형량 중 최소 85%를 복역한 후 남은 형이 만료될 때까지 사회 지역으로 나와 가석방 및 보호관찰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임의적 석방은 수감자가 가석방 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을 통해 석방의 자격요건이 생기게 되는 형태이다.

가석방이 보호관찰과 다른 점은 1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수감된 후, 지역사회에 돌아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준수사항 이행을 요구받으면서 남은 형기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장기간 구금생활 이후 여러 면에서 박탈되었던 권리들을 회복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사회복귀(reentry)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집행유예가 아닌 수감을 필요로 했던 대상자인만큼 이들의 재범위험성 또한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 및 감독·관리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보호관찰과 가석방제도는 사법제도의 일부로 각 주 카운티 수준(county level)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떤 주들은 주 정부 지휘 하에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는 반면, 주 내의 각 카운티에 보호관찰국을 두어 운영하는 주도 있다(정우식 외, 2000). 또, 어떤 주들은 보호관찰 및 가석방 업무를 동시에 관장하는 곳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주들은 이 둘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보호관찰과 가석방은 사회내처우(community corrections)로써 범법자를 효과적으로 감독해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동시에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 현재 사회내처우를 받고 있는 범법자 중 약 59%가 집행유예 보호관찰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약 11%가 감독조건부 석방으로 감독받고 있다. 이러한 일반 보호관찰 감독을 받는 대상자들은 법원이나 가석방위원회, 혹은 보호관찰관들이 부여한 조건과 계획에 순응해야 하고, 직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프로그램이나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 또는 알코올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019년 말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성인 59명 중 1명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사회 내에서 일시적 혹은 장기적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법무부의 최고통계기관인 법무부 통계국(2019)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속하거나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성인 대상자의 수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약 41,300명(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감소추세는 지역사회 감독 인구의 대다수(80%)를 구성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3,540,000명에서 3,492,900명(1.3% 감소)으로 감소한 반면, 가석방자는 878,000명에서 878,900명(0.1% 증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 참조). 2019년 동안 가석방 인구는 26개 주와 미국 연방 시스템에서 증가했으며 23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감소했다.

[그림 4-1] 성인 보호관찰 및 가석방 현황(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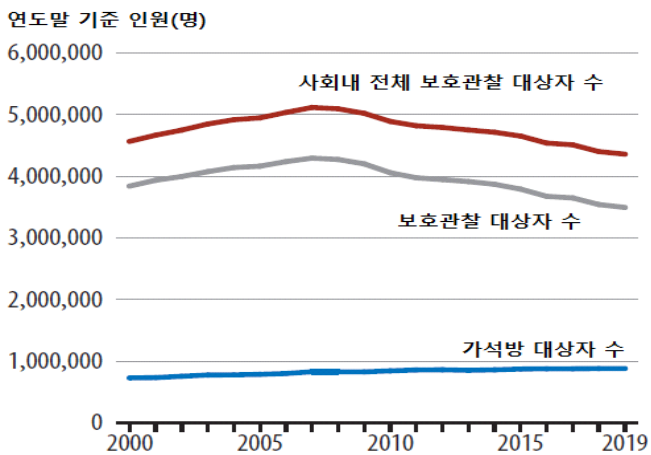

* 자료출처: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 지역사회 보호관찰을 위한 전자감독제도

GPS(Global Positioning Satellite) 기술의 기원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는 전투 중 항법, 표적화 및 위치결정을 위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군대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GPS기술을 개발하였고, 이 기술은 1983년이 되어서야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교도소 수감의 대안으로 전자감독 기기를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GPS를 이용한 감시 형태가 도입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범죄자를 24시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기에 전국의 법 집행관들은 이 획기적인 기술을 점점 더 찾고 있는 추세이다. GPS 기술은 가석방 및 보호관찰 중인 고위험군 범죄자, 조직폭력범, 가정폭력 가해자, 스토커 및 성범죄자를 감독하는 데 사용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실시간에 가까운 감독제도의 합헌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성범죄자가 아동에 대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후 대중의 공분을 사는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모으게 되면서 기존 주 및 연방 성범죄자 법률의 광범위한 확장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성범죄자 법률은 희생자의 이름을 딴 추모법인데, 예를 들어 메건 법(Megan's Law, 1994),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 2005), 애덤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2006) 등이다(Bales et al., 2012; Harris & Lurigio, 2010; Terry, 2011). 이러한 법률들은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수감 기간을 장기화하고, 형기종료 후 GPS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한다. 미국의 기존 성범죄자 법률은 2011년에 더욱 확장되어 심각한 성범죄자와 관련하여 전자감독을 표준 집행 유예 및 가석방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Armstrong & Freeman, 2011; Jannetta, 2006; Myers, 2011).

일부 주에서는 GPS 전자감독 기술이 적용되는 범죄자의 유형도 확대하였는데, 이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상습 재산범죄자, 조직폭력 관련 범죄자, 가정폭력/스토킹 가해자, 일부 보석으로 석방된 고위험군 범죄자를 포함한다(Drake, 2009; Jannetta, 2006; Pinto & Nellis, 2011). 미국 전역에서 전자감독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일부 주에서는 평생 동안 부과될 수 있다(Bishop, 2010; Brown et al., 2007; DeMichele & Payne, 2009). 평균적으로 GPS를 사용한 보호 관찰・가석방이 하나의 제재로 사용될 때 그 감독기간은 30일에서 90일 사이이다(Brown et al., 2007). GPS

전자감독 제재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감되지만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 결과는 주마다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총 35개 주는 심각한 성범죄자에 대해 GPS 전자감독을 사용하고 있고, 5개 주는 보다 광범위한 심각한 범죄자 범주에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많은 주에서는 이를 아직 시험하는 과정에 있다(Armstrong & Freeman, 2011; 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2008). 전반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약 90,000명의 범죄자가 GPS 전자감독의 대상이 된다(Mears & Cochran, 2015).

아동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성범죄자에게 GPS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GPS 전자감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위치추적으로 인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보호가 강화되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들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아동 성범죄자의 대다수가 이미 피해자와 아는 관계이고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범죄자 집단이라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지지자들의 주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Harris & Lurigio, 2010; Myers, 2011). 또한 GPS 전자감독 지지자들은 이러한 감시제도가 범죄자에게 덜 부담스럽고, 사회복귀(reentry)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범죄자들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을 강조하기도 한다(Myers,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자들, 주로 범죄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GPS 전자감독의 제재가 범죄자의 인권과 충돌하고,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며, 범죄자의 낙인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형기종료 후 지속적으로 사회 내 보호관찰을 통해 감시받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와 같은 고위험군 사범 대상으로 전자감독은 사회내 처우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보호관찰대상자와 감독조건부 석방 고위험군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감독체계는 '특별보호관찰 및 감독(special supervision conditions)'으로 구별되는데 이는 약물중독, 정신이상, 성범죄 등과 같은 문제점을 특별관리 하는데 있어 일반보호관찰 감독(general supervision conditions)보다 더 엄중한 감독이 필요한 보호관찰을 의미한다.

전자감독제도는 범법자들의 보석 석방(bail)을 위한 조건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교도소 수감을 대신하는 외출제한 명령(curfew), 가택구금(home confinement)과 같은 조건으로 쓰이는 등 다양한 이유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Pew Charitable Trust 보고서(2016)에 따르면 2016년에 전자감독 장치 피부착자는 131,000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40% 증가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 2010년과 2015년 사이 전자감독의 사용이 11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사법 제도와 이민세관단속국의 법적 절차에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전자감독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미국의 전자감독 대상의 수는 훨씬 증가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각 관할 구역에서 얻은 데이터를 취합하여 미국에서의 전자감독의 사용현황을 엿볼 수 있다([표 4-1] 참고). 이 통계 수치의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수감자들이 지역사회로 석방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수치는 이를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법제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로 전자감독 기술의 사용을 증가시켜 왔다. 2006년에는 22개 주가 성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해 GPS 기술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승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최소한 6개의 주(콜로라도, 플로리다, 미주리,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및 위스콘신 주)는 특정 성범죄자에 한해 종신형 전자감독 법률을 제정하였다. 연방 애덤 월시 아동 보호 및 안전법(2006)에는 전자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감독이 가능한 도구를 부착하는 예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법안의 목표는 성범죄자 책임을 증진시키고 사회 안전을 강화시켜 성범죄자들의 재범, 도주, 불이행 및 감독 조건 위반을 줄이는 것이었다. 현재 전자감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주는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메사추세츠 주, 미시간 주 그리고 플로리다 주이다.

[표 4-1] 관할구역에 따른 전자감독 대상자 수 및 이용현황

관할구역 (Jurisdiction)	전자감독관찰대상자 현황 (Number of People on Electronic Ankle Monitors & Status)	연도 (Year)
Des Moines, Iowa	16,498(재판 전, 보호관찰, 가석방)	2018
Marion County, Indiana	11,130(보호관찰)	2018
Florida	5,403(보호관찰)	2019
Colorado	4,814 on GPS monitors (보호관찰)	2018
Massachusetts	4,100(재판 전, 보호관찰, 가석방)	2020
Pennsylvania	3,590(가석방)	2018
Cook County, Illinois(Chicago)	3,365(재판 전)	2020
Michigan	3,287(보호관찰, 가석방)	2018
Ohio	2,277(가석방)	2018
New York	950~1,075(가석방)	2018
Arkansas	1,111(보호관찰, 가석방)	2018
Tulsa County, Oklahoma	583(재판 전)	2018
Dane County, Wisconsin	335(재판 전)	2018
Milwaukee County, Wisconsin	329(재판 전)	2018
Sedgewick County, Kansas	312(재판 전, 보호관찰)	2018
Kansas	283(가석방)	2018
Oakland County, Michigan	241(재판 전)	2018
Berkeley County, West Virginia	186(재판 전, 보호관찰)	2018
West Virginia	169(가석방)	2018
Ada County, Idaho	112(재판 전)	2018
Kanawha County, West Virginia	101(재판 전)	2018
Wyoming	69(보호관찰, 가석방)	2018

* 자료출처: Weisburd et al.(2021)

2) 전자감독의 종류

미국에서 사용되는 위치추적 장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감독 대상자의 위험수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장비가 사용되는데, 고위험자는 보다 정밀하게 관리하고, 저위험자는 필요한 수준에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알 수 있다.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장비 유형과 용도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4-2] 전자감독 장비 비교

장비유형	운영방식	제한사항	적합한 용도
RF 유선전화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되며, 장비가 훼손되거나 특정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경보 (유선전화망 활용)	대상자가 수신기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어디로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저위험 대상자
RF 핸드폰	위와 동일 (핸드폰 이동통신망 활용)	동일	저위험 대상자
GPS	대상자의 발목에 부착되며, 위성신호를 통해 현재 위치와 시간을 전송	정확한 위치정보 파악 가능	고위험 대상자
VR	음성 통화를 통해 위치 파악 가능	특정 위치 파악만 가능	저위험 대상자

* 우리나라의 경우 RF 방식 등 특정 장소 소재 여부만을 파악하는 방식 대신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GPS 방식이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문희갑, 2020).

** 자료출처: LOCATION MONITORING SUMMARY CHART의 내용을 재구성.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supervision/use-location-monitoring-field.

아래의 그래프는 전자감독에 사용되는 각 장비의 사용량을 비교한 표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통계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에는 무선주파수 방식(Radio Frequency, RF) 장비의 사용이 압도적이었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RF와 GPS의 사용량이 비슷해졌다. 2015년에는 GPS 장비 사용이 약 88,000건에 이르는 데 반하여, RF 장비는 37,000건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가장 최근 통계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현재, GPS 장비의 활용이 RF 장비에 비해 약 3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 전자감독 장비 사용 비율(2005~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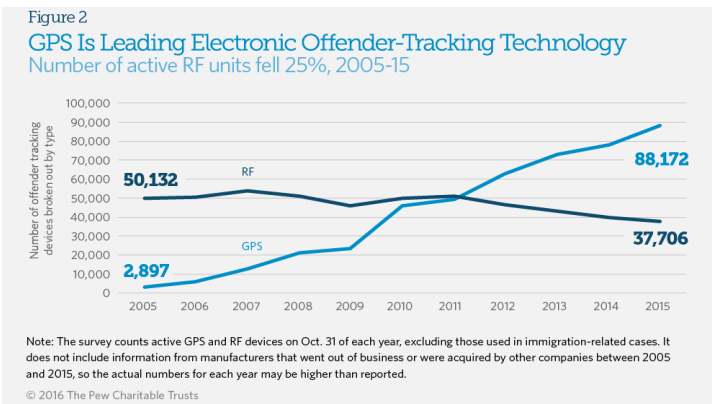

자료출처: Use of Electronic Offender-Tracking Devices Expands Sharply, 2016.9.7.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6/09/use-of-electronic-offender-tracking-devices-expands-sharply

이어, 무선주파수 방식과 GPS방식의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무선주파수 방식은 가택구금된 범죄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범죄자는 전화선에 연결된 소형수신장치와 통신하는 변조 방지 소형 송신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장치의 신호가 손실될 경우에 관제센터(monitoring station)로 연결되어 보호관찰관에게 손실상황을 알린다. 이러한 시스템은 대상자의 업무나 종교적인 일정을 수용해주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동안은 감독현장인 가택을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Drive-by"라는 감독장치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집에 있는지, 또는 예정대로 특정 장소에서 치료 등의 처우를 받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다. 무선 주파수 장치는 감독기기의 가장 저렴한 형태이며 비용은 하루에 약 $2.75이다(Florida Senate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2004).

두 번째 기술인 GPS 방식은 위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물리적 위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는 위성에서 전송을 수신하여 감독 대상자의 위치를 계산하는 변조 방지 발찌를 보통 착용하게 된다. 수동(passive) GPS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가 지정된 시간에 감독센터로 전송되지만, 실시간(active) GPS 시스템의 경우에는 개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관제센터로 전송되기 때문에 위반이 발생하면 보호관찰관이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시간 및 수동 GPS 시스템 모두 특정 구역(학교, 또는 어린이들이 모이는 기타 장소 등)을 제한하거나 대상자가 방문할 수 있는 포함구역(직장 지역 등)을 설정하고, 대상자가 하루 동안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동 GPS 시스템의 비용은 하루 약 $4, 활성 GPS 시스템의 비용은 하루에 약 $9 소요된다(Florida Senate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2004).

무선주파수 기술은 일반적으로 중·저위험 범죄자에게 사용되는 반면, GPS 기술은 주로 성범죄자 및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은 고위험군 범죄자 집단에 활용된다. 무선주파수 기술은 현재 전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는 반면, GPS 기술은 2013년 기준으로 미국, 뉴질랜드, 스웨덴, 스페인, 브라질 및 호주에서만 사용되는 등(Nellis et al., 2013)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현재는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캐나다, 벨기에, 독일 및 네덜란드에서도 채택되어 범법자에 대한 보호관찰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위치추적 기록은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고위험 성범죄자로 지정된 성범죄자는 실시간(active) GPS로 감독을 받고, 고위험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범죄자는 수동(passive) GPS로 감독을 받게 되는데,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관제센터에서는 대상자의 GPS장치에 기록된 모든 활동을 자세히 설명하는 일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호관찰관에게 이메일로 송신한다. 더 나아가 이 관제센터에서는 출입금지 구역 출입 위반, 발찌 또는 팔찌의 스트랩 조작 및 훼손, 저전력, 신호실종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호관찰관에게 즉각적인 경고 알림을 보낸다.

3) 전자감독의 효과성

전자감독의 활용에 있어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인권 등의 문제점이 인식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은 이미 미국, 호주, 유럽 및 아시아 국가에서도 사회의 안전과 관찰대상자의 감독을 위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전자감독은 효과적일까.

전자감독의 재범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 현존하는 연구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최근 좀 더 엄격한 연구 설계를 통한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감독의 잠재력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힘을 실어준다. 예를 들어, Padgett, Bales 및 Blomberg는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자택에 수감되었던 플로리다의 중범죄자 75,661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무선주파수와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감독양식 모두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범 및 도주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긍정적인 효과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특히 주목할 만하다. 한편으로 동일 연구에서 Padgett와 동료들은 전자감독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 성범죄자에게 미치는 재범 억제 효과가 더 낮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GPS 모니터링 전자감독 대상자 중 폭력 범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아닌 폭력 범죄자보다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91.5% 낮았지만, 성범죄자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4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adgett et al., 2006).

플로리다 주립 대학의 연구원들이 수행한 2010년 연구에서도 전자감독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Bales et al., 2010). 양적 분석을 위해 Bales와 동료들은 6년

동안 중간 및 고위험전자감독 대상자 5,034명과 전자감독을 부과받지 않은 266,991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선택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향 점수 매칭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자감독이 범죄자의 재범률을 31% 줄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그들은 전자감독 피부착자 중 GPS 양식이 RF와 비교하여 감독 실패가 6% 더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준수사항 위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폭력적인 범죄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재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 전자감독이 재범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만 2006년 및 2010년 연구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전자감독은 재범을 하기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킬 뿐 재범억제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에는 가석방자들이 잠시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감독조건부 석방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던 그룹보다 더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기 때문이다(Peckenpaugh & Petersilia, 2006). 더 나아가 Gainey, Payne와 O'Toole(2000)은 전자감독 부착 기간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더 오래 착용하고 시간을 보낼수록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결국 이러한 결과는 가해자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효율성 평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4) 고위험군 전자감독의 문제점 및 한계

전자감독을 활용한 보호관찰 및 조건부감독 석방에 대한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기계적인 결함에 대한 것이다. GPS 수신기는 건물이나 지형, 전자제품, 또는 때로는 울창한 나뭇잎의 간섭으로도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위치 오류가 발생하거나 위치 판독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실내, 물속, 그리고 지하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처럼 GPS 신호의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문제점들은 많은 보호관찰관들로부터 언급되었던 부분이다. 2011년에 캘리포니아의 보호관찰관들은 4,000명의 고위험 성범죄자와 조직폭력범죄자가 착용한 전자기기

장치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 결과 배터리가 일찍 소모되고, 케이스가 깨지고, 변조 또는 훼손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경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보고된 위치가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3마일이나 벗어나는 등 다양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들은 장치를 조작하거나 특정 구역으로 이동하는 행위 등으로 위치추적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은 하루에 수천 건에 달하는 경보를 받았지만 무의미한 경보가 많이 섞여있어 실질적으로 중요한 경보와 사건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 콜로라도 주와 뉴욕 주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나왔는데, 보호관찰관들이 계속되는 무의미한 경보를 무시하는 동안, 몇몇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플로리다 주에서도 한 보호관찰관이 계속되는 전자장치의 문제로 인한 경보음을 무시한 결과, 이 대상자는 가택구금 준수사항을 53회 위반하고 3명을 살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자감독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결함으로 인해 오경보가 발생하였을 때, 석방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져 다시 구금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결함은 대상자가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기도 한다. 2011년 국립 사법 연구소는 전자감독 하에 5,000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많은 대상자가 소실된 신호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직장에서 여러 번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심지어 이 중 22%는 전자발찌 때문에 해고되거나 직장을 그만 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Karsten & West, 2017).

두 번째로, 전자감독의 사용 목적 중 하나는 국민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방위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자감독의 사용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범죄자가 실시간 GPS 전자감독 아래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심할 수 있다. 환경범죄학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국민들의 이러한 안심이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범죄 대상(suitable target)'의 증가와 '보호자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라는 요건과 맞아떨어지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 전자감독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국민 개개인이 생활 주변 위험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전자감독제도는 보호관찰관들의 업무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성범죄자와 같은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의 증가는 보호관찰관의 전반적인 업무량과 질에 영향을 미친다. 보호관찰관들은 전자감독 오경보를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경보를 확인하기 위해 GPS 장비를 모니터링해야 하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에게 장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가르쳐야 하며, 장비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시에는 장비의 교체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이다. Sachwald(2007)는 Maryland의 경험에서 GPS에 배치된 위반자의 약 절반은 하드웨어 오류로 인한 위반이었고 때로는 장비가 작동하기 전부터 장치 오작동으로 인해 두세 번 교체해야 했다고 전했다. Barnes의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뉴저지 주의 가석방 위원회는 성범죄자 사건을 감독하는 보호관찰이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법 집행 임무 중 하나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플로리다 주 교정국은 전자감독이 필요 없는 경우는 한 명의 담당자가 2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무선주파수 방식을 이용한 전자감독의 경우는 22명, 수동 GPS를 사용한 전자감독 보호관찰은 17명, 실시간 GPS를 사용하는 전자감독 업무를 담당 할 시에는 8명으로 대상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권고했다(Florida Senate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2004).

나. 미국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1) 일반 준수사항 및 특별 준수사항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자감독은 가석방 또는 감독조건부 석방 이외에도 일반적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건부적 보호관찰에는 두 가지 수준의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주어지는 '일반 준수사항(General Conditions)'이 있고, 특정 조건을 더하여 준수사항의 수나 감독수준을 높이는 '특별 준수사항(Special Conditions)'이 있다. 이 중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때에는 대상자의 범죄 상황이나 과거 전과 기록, 재범 가능성, 대상자가 사회 안전에 미치는 영향 수준, 그리고 필요한 치료 및 프로그램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특별 조건으로는 성범죄자의 개별 특성에 따른 조건(개인의 성범죄 특성에 따른 기본적인 준수사항), 집중 감독, 전자감독, 약물모니터링(소변 검사) 또는 약물·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의무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심리 상담 등이 있다. 특히 고위험군인 GPS 대상 성범죄자는 정기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고, 고위험군 성범죄자(sexual predators)가 아닌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성범죄자(sex offenders)는 경우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는 것이 준수사항으로 들어간다. 전자감독이 필요한 대상은 대부분 총기소지, 강도, 살인, 성범죄, 폭력범죄, 절도, 약물복용과 관련된 범죄자들이다.

하지만 전자감독이 반드시 특별 준수사항에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감독대상자에 따라 일반적 준수사항에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과되며, 무선주파수 방식의 전자감독으로 가택구금이나 외출제한에 한하여 사용된다. 전자감독은 단독 조건으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준수사항이 함께 부과된다. 실질적으로 GPS 전자감독 대상자는 대체로 집중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고위험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약 2개월 간 2,191건의 전자감독(RF, GPS) 사례를 분석한 일리노이 주 보고서에 따르면(Illinois Sentencing Policy Advisory Council, 2019), 전자발찌를 찬 가석방자들 중 52%는 약물 남용 검사 및 치료, 41%는 분노조절 장애 치료, 33%는 정신건강 평가 및 치료, 30% 집중감독, 31% 피해자 접근 금지, 10% 성범죄 평가 및 치료, 그리고 10%는 컴퓨터 접근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을 함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은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준수사항의 현황을 보여준다. 전자감독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많은 준수사항들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준수사항이 부과되는 원인 중 한 가지로는 전자감독 자체를 위한 준수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이다(배터리 충전, 전기 공급, 휴대폰 사용 유지 등).

[그림 4-3] 전자감독과 일반보호관찰의 준수사항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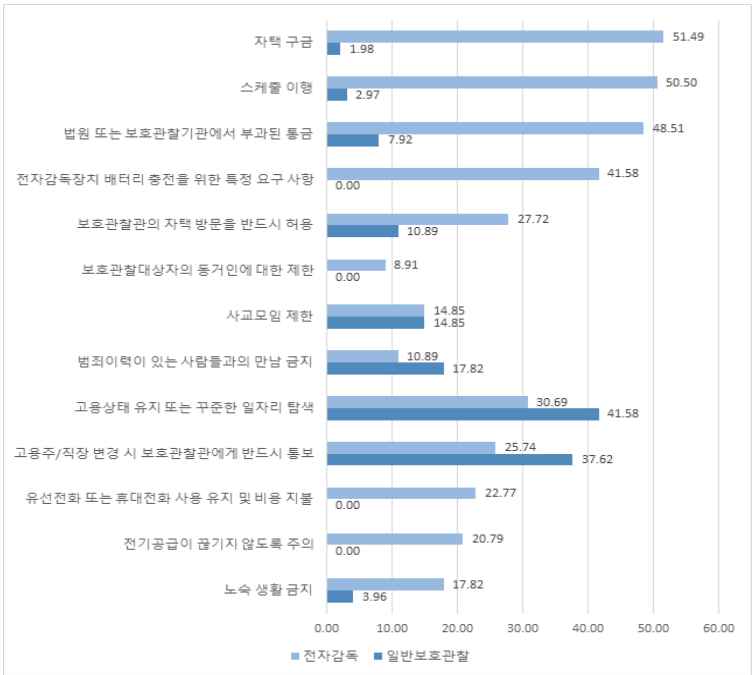

* 자료출처: Weisburd et al.(2021), p.19.

다음은 보호관찰대상자나 가석방자에게 전자감독이 필요할 때, 대상자에게 주어진 준수사항에 대한 예시이다.

위치추적을 위한 감독 규정 준수사항(Probation and Supervised Release Conditions)

귀하는 아래에 제시된 전자감독 방식으로 _____개월 관리감독이 될 것이며, 아래에 나와있는 법과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귀하는 전자감독 관리를 받는 동안에는 이 관리감독프로그램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합니다. 총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____ (몇 주, 몇 달)입니다.

__ 보호관찰관 결정에 따른 위치 추적 방법

__ 무선 주파수 전자감독(RF)

__ GPS감독(하이브리드 GPS 감독 포함)

__ 음성인식을 이용한 위치 확인

위에 제시된 위치 확인 방식으로 귀하에게 부여된 이동 제한이 감시됩니다.

__ 귀하는 _____ 시 부터 _____ 까지 가택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통금).

__ 귀하는 교육, 종교 서비스, 의료, 약물 남용 또는 정신 건강 치료, 변호사 방문, 법정 출두, 법원 명령 의무 또는 경찰관이 사전 승인한 기타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자택에 있어야 합니다(자택 구금).

__ 의료품 구입이나 법원 출두, 또는 법원에서 특별히 승인한 기타 활동을 제외하고는 항상 자택에 있어야 합니다(자택 감금).

__ 이 외에 _____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_____.

*자료출처: 미국 주 연방 법원 보호관찰 준수사항 (United States Courts, Chapter 3. Section B)

2) 전반적 전자감독 위반 제재조치

전자감독 대상자는 GPS 탐지를 우회하는 방법을 매우 창의적으로 찾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구현될 때까지 보호관찰관들이 전자감독의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제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감독 위반행위와 관련된 경보 유형에는 GPS장치 부착에 대한 협조 거부(GPS 장비 부착 시 불참), GPS 신호 소실(범죄자의 위치 파악 불가능), 저전력(주로 1시간 이상 배터리 부족 시 발생하거나 배터리 문제로 GPS신호가 잡히지 않을 때 발생), 팔찌 또는 발찌 스트랩 경고(일부 유형의 스트랩 변조가 발생했음을 나타냈거나 위반자가 장치를 제거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보), 통금시간 경보, 출입금지 구역 경보가 있다.

대상자가 감시 및 일반 감독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수감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위반 사항이 재입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상자가 택배를 수령하려고 금지구역에 들어가거나, 가족 구성원을 일정한 곳에 데려다주기 위해 무단으로 외출을 했을 경우, 이들이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Bhadha와 동료들이 (2021) 전자감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44개 주에 속한 101기관의 정보를 가지고 분석 한 결과, 실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침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대응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판 전(pre-trial), 보호 관찰(probation) 및 가석방(parole) 환경의 보호관찰관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위반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사항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미국 여러 주(州)의 보고서를 보아도 위반사항 시 제재에 대한 설명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 혹은 가석방대상자를 전자 감독하는 아이다호 주 교정국의 기록에는 위반 발생시 잠재적인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본 약관의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위반 사항은 귀하의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다루어질 것이며 이 위반으로 인해 귀하는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Idaho Terms and Conditions—Parole and Probation 인용

이와 같이, 조지아 주를 포함하여 다른 주 기관 자료에서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결과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만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미국 각 주마다 전자감독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대응 방식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토록 광범위하게 위반 관련 법적 대응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보호관찰관들이 자신들의 재량에 따라 제재 수준을 결정하고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함일 것이다. 달리 말해, 그들은 피부착자가 갖는 다양한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대상자의 추가적인 재범이나 위반행위를 예방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고안하여 대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은 결과적으로 보호관찰관에 따라, 또 대상자에 따라, 그리고 그 주 법안이나 가석방위원회가 지닌 정책에 따라 전자감독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매우 달라지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은 점진적 처벌(graduated sanction)을 제재조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감독 기간 내에 살인과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가장 중요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들이 점진적으로 처벌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 방안은 대상자 담당 보호관찰관에 의해 결정되고, 이후 해당 기관의 검토를 받게 되며, 승인이 되는대로 해당 제재조치는 바로 대상자에게 이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GPS 전자감독 대상자가 몇 가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검토한 후, GPS장치 대신 처벌 수위를 일부 높인 시설 프로그램(residential program)을 진행하도록 준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시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약물중독문제 또는 행동이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진행한다. 대상자가 수정된 준수사항을 문제없이 수행하게 되면 예전의 준수사항으로 돌아가거나 좀 더 낮은 통제와 관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시 준수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 프로그램의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추가적인 프로그램 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른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텍사스 주는 약물중독 문제를 보이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은 점진적 제재 조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Jenkins & Owens, 2011).

가석방 부서는 범죄자에 대한 단계적 개입을 활용하며, 그 중 일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치료 방식 변경.
- 감독 수준 상향.
- SACP(약물 카운슬링 프로그램) 레벨 II 활용.
- 범죄자를 지역사회 기반 치료 시설에 배치.
- 범죄자를 보다 집중적인 치료 방식에 배치.
- 범죄자를 중간 제재 시설(ISF)에 배치.
- 범죄자를 약물 남용 중범죄 처벌 시설(SAFPF)에 구금.
- 사전 철회 영장 요청.
- 감독 취소.

* 자료출처: Jenkins & Owens(2011) 인용

지침을 토대로 세부적으로 개별 대상자 관리를 기획하고 제재조치를 내리는 결정권자는 보호관찰관으로, 제재조치를 보호관찰관 개인의 재량에 의존하면서 제재기준이 다소 광범위하고 모호한 제재조치를 내린다고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주의 제재조치사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주는 '준수사항 위반 심각성 등급'이라는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린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위험성과 그들의 현재 조건 등을 검토한 후, 보호관찰수준과 공식적인 준수사항 위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보호관찰 감독 수준은 '간접(indirect)-최소-중간-최대-고강도 보호관찰 · 감독'의 총 5수준으로 구분되며, 제재조치의 수준은 '비공식적 처리-낮은 수준(low)-중간 수준(medium)-

높은 수준(high)-강한 수준(Intensive)-대책위원소집 수준(violation staffing)-위반 수준(violation)'으로 구분된다. 대책위원소집 수준의 경우에는 강한 수준의 처벌을 내릴 지, 혹은 가석방 철회를 할 지 등에 대해 의논하게 되며, 위반 수준에서는 위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근거로 가석방이 철회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상자를 교도소에 재수감한다. 제재조치가 높은 수준에 속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위반자를 교도소 또는 구금시설에 구금 시킬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은 위반자가 도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위반자의 행동이나 태도가 지역 사회 안전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민을 보호해야 할 때, 또는 보호관찰관이 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 및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어날 수 있다.

대상자가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위반 심각도 척도를 참고하여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보호관찰관이 적절한 수준의 제재조치를 결정하고 그것을 위반자에게 부과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outh Dakota Parole Services and Response to Violations, 2019):

-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가하는 위험 수준
-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
- 대상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 내용
- 대상자의 치료 프로그램 필요 여부
- 감독조건부 석방 기간 동안 대상자의 수행
- 감독조건부 석방 기간 동안 대상자가 이전 위반 전력
- 대상자의 태도
- 대상자의 전과와 위반 간의 관계
- 다른 개입 수단의 이용 가능성 및 재범에 대한 영향 예상

보호관찰관은 제재를 부과하기 전에 상급 직원과 상의할 수 있는데 특히, 위반자의 행동이나 위반 사항이 이들이 가진 가석방 위반 제재 척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제재를 부과하기 이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미국 지역별 전자감독 위반 제재조치 절차

다음으로, 일부 주의 보호관찰기관(Division of Parole/Parole Authority)에서 제공하는 전자감독 관련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조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텍사스 주 전자감독 위반 제재

우선 텍사스 주에서 고위험군 전자감독에 대한 경보 발생 및 위반 상황 시 보호관찰관의 대응을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감독 대상 이외에 적용되는 텍사스 주의 전반적인 준수사항 위반 제재조치 및 절차는 이하와 같다.

> 경미한 행정 규칙 위반의 경우, 가석방부는 재량에 따라 위반자와 면담하거나 경고(reprimand)등 같은 낮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감독 중 도주하거나, 규칙이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청색 영장'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영장은 경찰과 함께 집행합니다.
>
> 대상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혐의 없음' 판정 또는 기소가 기각된 경우 최대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 교통 범죄로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계류 중인 공식 기소는 없는 경우, 정신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또 가석방 관련 철회 절차 양식에서 위반자의 권리의 어떤 부분에도 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예비 공판(Preliminary hearing)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비 공판의 목적은 대상자가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동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비 공판 동안 청문관은 청문회 철회 결정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
>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만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중범죄 또는 경범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보호관찰 취소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 대상자는 청문회를 철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철회 청문회에서 대상자는 증언을 할 수 있고, 청문관은 취소를 권고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입니다. 대상자가 새로운 중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대상자가 공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철회 공판이 실시됩니다. 확실한 위반증거가 나타날 경우, 심의관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가석방 또는 의무적 감독을 취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 감독이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석방위원회에서 대상자가 동일하거나 변경된 준수사항 하에 감독을 계속 받도록 허용하거나 중간 제재 시설로의 이송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가석방 감독의 철회 혹은 취소를 결정짓는 제재와 관련한 법적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주요 업무는 상이하다. 아래의 표는 이 절차에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보여준다.

[표 4-3] 가석방 철회 관련 공판 참여자들의 역할

대상	책임 및 업무
대상자 (범죄자/ 가석방 위반자)	• 질문에 답하거나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 • 자비로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주에서 지정한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자(또는 그의 변호사)는 증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가석방 담당관에게 보낼 수 있음. • 대상자(또는 그의 변호사)는 증인에게 직접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음. • 자신을 대신하여 증언할 수 있으며 증언 및 문서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 • 대상자(또는 그의 변호사)는 절차나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동의를 하고, 우려를 제기할 수 있음.
심문관	• 이사회의 직원으로서 철회 청문회를 실시할 책임이 있음. • 중립적이고 냉철한 사실 발견자로서 사건의 관련 사실을 결정하고 • 위원회 보고서에 관련 정보를 객관적으로 요약 필요.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	• 가석방 부서 직원으로서 주장된 위반 사항을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공. • 모든 범죄자와 불리한 증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 소환장을 송달하고 증언할 증인의 청문회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알림. • 증거로 제시할 모든 문서의 사본을 범죄자와 청문관에게 제공.
변호사	• 가해자에게 상담을 제공. • 증인을 제시하고 조사. • 가해자를 변호하기 위해 각 혐의를 다룸.
목격자	• 요청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 • 진실한 답변 필요.

* 자료출처: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2017)

XIV. 경보 발생 및 조사(NO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LERTS)

A. 보호관찰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규 업무 시간 동안 공급업체의 관제센터에서 경보 정보를 받습니다. 지휘본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말 및 공휴일 근무 시간 이후에 공급업체로부터 경보를 수신하고 모든 조사 응답을 공급업체 소프트웨어에 입력합니다.

B. 경보가 통지되면 보호관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30분 이내에 경보를 확인합니다.
2.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경보에 한하여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철저히 조사하십시오.

경보 종류	조사 시간 규정	보호관찰관 책임 부문
훼손	경보발생 4시간 이내	• 대면 접촉 수행 • 장치가 변조된 흔적이 있는지 검사 • 장치 교체 • 변조 경보일 경우 장치를 공급업체에 반환
스트랩(끈) 관련 경보	경보발생 4시간 이내	• 대면 접촉 수행 • 스트랩 검사 • 스트랩 교체

경보 종류	조사 시간 규정	보호관찰관 책임 부문
신호 실종/기기와 연결 및 통신 불가	경보발생 4시간 이내	• 대상자 수색 • 장치 연결 테스트 • 해당하는 경우 장치 교체.

3. PD/POP-4.1.1, 가석방 규칙 및 조건 처리 위반에 따라 위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참고: 철저한 조사가 시간 내에 불가능하면, 필요한 경우 긴급 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장 섹션 (Warrant Section)에 의해 긴급 영장이 결정됩니다.
4. 근무 시간 외 경보를 조사할 때 다음 사항에 따라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십시오.
   PD/POP-4.1.8, 비표준 업무 시간 조사에 대한 안전 지침.

C. 각 업무일이 끝날 때까지 (주말 및 공휴일 포함) 보호관찰관은 지난 24시간 동안의 이동경로를 검토하여 피부착자의 행동 패턴, 일정, 일탈 또는 기타 무단 여행, 일정을 결정합니다.

D. 보호관찰관은 철저한 조사 후 사례 관리 메모를 해결하고 경보의 원인과 경보가 해결된 방법을 문서화합니다.

E. 보호관찰관은 조사 및 문제 해결 경보와 같은 다른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요점을 검토하고 사례 관리 메모를 활용하여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F. 부서 총책임자(Unit supervisor)은 해당 사건 보호관찰관이 사건 처리를 하면서 생기는 부재에 대비하여 백업 업무를 책임질 다른 보호관찰관을 지정합니다.

XVI. 중재 (intervention), 영장 발부 및 가석방 사전해지(pre-revocation) 절차

A. 중재
보호관찰관은 PD/POP-4.1.1, 처리 규칙 위반 및 배포 조건에서 식별된 개입을 적용해야 합니다.

B. 영장
1. 지휘본부에서는 근무 시간 이후에 영장을 발부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원인을 조사하여 영장이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보호관찰관과 부서 총책임자가 영장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PD/POP-4.2.2, 영장 종료/감독 복귀에 따라 늦어도 다음 업무일까지 영장 종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영장이 유효하고 GP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경찰과 협력하여 피부착자를 체포해야 합니다.

※ 참고: 보호관찰관은 체포 시 또는 피부착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급업체 소프트웨어의 장비를 해제해야 합니다.

C. 사전 해지 절차
EM/SISP 교육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EM/SISP 취소 전 사례를 유지하고 PD/POP-4.2.1, 사전 청문회 및 청문회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자료출처: A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Parole Division: Policy and Operating Procedure 인용

2) 오하이오 주 전자감독 위반 제재

오하이오 주는 가석방자 전자감독과 관련하여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과 계약을 맺은 상태로, 중간처우시설 내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제재상황 시에 적용되는 중간처우시설 내에서의 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오하이오 주 전자감독 관련 정책의 일부분인 위반 제재조치에 대한 절차이다.

E. 위반에 대한 대응

1. 중간처우시설(Halfway House) 직원은 전자감독 기기 조작, 일정 위반, 범위 이탈, 전원 및/또는 기기 고장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위반자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위반(예: 스트랩/장치 절단 또는 제거) 또는 출입금지구역(exclusion zone) 위반은 중간처우시설 직원이 조사를 완료할 필요가 없으나 그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2. 중간처우시설 직원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조사 및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위반자, 위반자의 집 주인 또는 동거인, 긴급 연락 담당자, 고용주, 지역 감옥, 병원 등에 연락을 시도.
   b. 위반자와 접촉한 시간, 접촉한 사람/장소, 요약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접촉 및/또는 접촉 시도에 대한 문서.
3. 중간처우시설 직원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 2시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4. 조사가 완료되면 중간처우시설 직원은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견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a.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한 통지는 정규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되, 근무 시간 이후 위반 사항의 통지는 즉시 전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b. 모든 경우에, 서면 통지는 늦어도 다음 정규 근무 시간까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 전자감독 위반 통지 후 보호관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정책 100-APA-23 (담당 보호관찰관 테블렛과 파일 관련 정책)에 따라 직원을 배치하고 중간처우시설의 결과 요약보고를 문서화.
   b. 감독 상태의 변경 또는 전자감독 중단 요청을 중간처우시설에 알린다.

* 자료출처: Ohio Rehabilitation and Department of Corrections(2017). Electronic Monitoring and GPS Monitoring Systems.

3) 인디애나 주 전자감독 위반 제재

인디애나 주는 경보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제재가 결정된다. 아래의 내용은 인디애나 교정국의 정책 및 절차 매뉴얼(2017)의 일부분이다.

GPS 모니터링 시스템의 경보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벨1: 스트랩/조작 위반; 출입금지 구역.
2. 레벨2: 연결할 수 없을 때; GPS 움직임 없음; 포함 구역; 배터리 위반; 팔찌 분실.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은 GPS 장비 공급업체의 콜 센터와 인디애나 성범죄자 관리 및 감독 프로그램(Indiana Sex Offender Management and Monitoring, ISOMM) 지역(district) 코디네이터가 경보 레벨1 경보와 관련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 경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레벨1 경보가 수신되면 INSOMM 프로그램 지역 코디네이터와 3M 모니터링 센터(전자장치 공급업체)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즉시 대상자와 연락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순응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격리팀 구성원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레벨1 스트랩/조작 경고에 대해 담당 보호관찰관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대상자와 대면 접촉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와 보호관찰관 사이의 거리가 멀 경우에, 보호관찰관은 가능한 현지 법 집행 기관(경찰)이나 지역사회 교정 자원을 활용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2. 모든 레벨1 출입금지 구역 경보에 대해 담당 보호관찰관은 직접 또는 전화로 대상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3. 보호관찰관이 경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긴급 영장을 획득하는 절차는 확립된 부서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시작됩니다.

* 자료출처: Indiana Department of Correction(2017). Manual of policies and procedure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4)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전자감독 위반 제재

1. 위반에 대한 제재

위반자가 GPS 위반으로 제재를 받거나 위반이 '위반 혐의 신고서(Alleged Violation Report, AVR)'에 인용되기 전에 보호관찰관(Community Supervision Officer, CSO)은 위반을 조사하여 GPS 위반이 유효한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보호관찰관은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위반자에게 연락하고 위반자가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에 보고하도록 지시합니다. 보호관찰관 또한 GPS 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GPS 시스템 또는 장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GPS 담당 직원과 CSO는 위반이 장비 작동 방법에 대한 위반자의 오해로 인한 것이거나 결함이 있는 장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GPS 위반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 근무 책임자, 보호관찰관의 상급자(Supervisory Community Supervision Officer, SCSO)는 위반 사항이 발견된 날로부터 업무일 기준 1일 이내에 위반자를 만나야 합니다.

모든 GPS 위반은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따라 GPS 부서 담당 직원이 조사해야 하며,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면 위반자는 기관 정책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및 제재는 위반을 발견한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기관 정책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1-1. 첫 번째 유효한 위반 확인 후.

GPS 장치 직원이 위반자의 장비가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보호관찰관은 다음 사항과 같은 위반이 처음으로 확인되었을 때 제재를 권고해야 합니다.

i. 15분 이상 GPS 신호 소실, GPS 경보 없음, 메시지 없음 및 배터리 알람 없음.
ii. GPS 신호 또는 '메시지 간격' (GPS 시스템과 GPS 기기의 커뮤니케이션 없음)
iii. 범위를 벗어난 시간이 10분 이상인 팔찌 스트랩 경고.
iv. 통행금지 구역(통금 시간) 경고, 통행금지 위반이 10분 이상 지속 되었을 경우
v. (지속시간에 관계없이) 출입금지 구역 경보 발생시, 통행금지를 수정하거나 위반자의 보고의무 빈도 상향, 위반 혐의 보고서 제출을 늘리는 것이 제재로 권장됨.
vi. GPS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치를 충전하지 않거나 통행금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GPS 신호가 소실된 경우 보호관찰관은 GPS 신호 소실 문제를 위반자와 논의하여 위반자가 GPS 신호가 소실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GPS 신호가 소실된 기간 동안 위반자의 위치에 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GPS 담당 직원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위반자의 GPS 장치가 완전히 작동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거나, GPS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시스템 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SCSO와 협의하여 위반자가 GPS 추적 장치를 고의로 조작했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Halfway Back' 옵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위반자를 격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반자가 GPS 신호 추적을 방해하고자 노력한 것은 기관이나 MPD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활동에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GPS 장치를 변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위반자의 경우, 이러한 위반자에 대해 가석방이 철회 또는 취소가 되지 않는 대응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위반이 계속되면 보호관찰 사건의 경우 점진적인 구금 제재를 요청하고 가석방 및 감독된 석방 사건의 RRC(Residential Reentry Center) 배치를 요청하는 '위반 혐의 보고서'를 석방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이 확인되고 위반자가 제재를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은 위반자와 GPS 기본 지침 계약을 검토하고 위반자에게 위반사항을 알린 후, 위반자가 향후 추가적인 위반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립니다.

1-2. 두 번째 유효한 위반 확인 후.

위반자의 GPS 위반이 두 번째로 발생하였을 경우, CSO는 다음의 내용을 수행해야 합니다.

i. 두 번째 위반 후 평일 기준 3일 이내에 SCSO 회의를 개최, 위반자를 제재하고 AVR 보고서를 제출하여 해제기관에 알립니다.
ii. 일반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모니터링 위반에 대한 해제 당국의 처분까지 위반자의 GPS 추적을 유지합니다.

CSO는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한 후 평일 기준 3일 이내에 '위반 혐의 보고서(AVR)'를 공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i. 위반자의 부착장치가 위반자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정보 확인(팔찌 스트랩 위반);
ii. 위반자가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장소에 대한)외출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는 정보 확인;
iii. 위반자가 GPS 감시 장비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정보를 확인한 경우 보호관찰관은 확립된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SOSA) 정책 및 지침에 따라 위반자를 체포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1-3. GPS 모니터링

보호관찰관은 GPS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에게 할당된 위반자의 일일 GPS 사고 및 위반 보고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GPS 위반 사항을 확인하려면 GPS 담당 직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 자료출처: Policy Statement 4008(2009),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라. 미국 보호관찰관[45]의 자격 요건 및 권리

1) 자격 요건

보호관찰관은 교도소에서 출소하였거나, 수감 대신 사회봉사와 같은 보호관찰 처벌을 선고받은 범죄자를 감독함으로써 형사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는지,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확인한다. 보호관찰관은 시, 카운티 또는 주 법원 수준(level)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이 되기 위한 공식적인 교육 요건은 없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최소한 학사 학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형사 사법, 심리학, 교정, 재활 상담 또는 사회학과 관련된 학위를 선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교정 상담, 사회사업, 형사 사법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1~3년의 경력을 필요로 한다. 일부 주에서는 관련 학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도 한다.

보호관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21세에서 37세 사이여야 하고, 중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 면허증 및 깨끗한 신원조사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고용된 주의 거주자여야 하며, 보호관찰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허용된 주에서는 총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탁월한 의사소통 기술, 정서적 안정, 의사 결정 능력, 비판적 사고 및 협업 능력과 같은 여러 개인 자질을 보유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고용되기 전에 일련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러한 테스트는

45) 본문에서는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parole officer)'을 칭한다.

주와 고용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시력, 지능, 심리적 건강, 의료 건강 및 체력에 대한 검사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가석방관이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체포할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마약 검사 및 광범위한 범죄 기록 확인을 제출하고 통과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받는데, 이는 이들이 공식 경찰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4주에서 6주 동안 지속되며 워크숍, 세미나, 총기 훈련, 법적 및 윤리적 책임에 대한 토론, 체포 절차 및 체력 훈련이 포함된다. 가정 폭력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려는 보호관찰관은 그러한 유형의 범죄를 다루기 위한 훈련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후원하며 현직 보호관찰관이 관리한다. 뉴저지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공식 경찰 훈련을 받는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 권리

미국 가석방 보호관찰관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한국 보호관찰관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첫 번째는 신분적 차이이다. 미국 가석방·감독 조건부 보호관찰관은 법인 지역에서의 법집행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찰관(sworn officers)'이다. 이들은 미국 헌법과 해당 주 및 해당 기관의 관할 법률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사람들로 그들이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즉, 미국 모든 가석방 보호관찰관들은 소위 한국에서의 '특별사법경찰'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찰 신분으로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다양한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장이 없이도 감독대상자의 소유물을 압수 및 수색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한은 대상자가 가석방으로 출소되기 전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동의서에 포함된 부분이다. 이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 대상자는 가석방 될 수 없으며, 동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77-23-301. 가석방 출소자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

(1)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수감자는 가석방의 조건으로, 가석방 중인 동안에 제(2)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수감자의 신체, 재산, 임시적 또는 영구적 자택, 차량 또는 개인 소지품을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는:
(a)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수색 영장 유무에 관계없이, 어떠한 원인 유무에 상관없이;
(b) 제 (3)항 조건에 한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수색 영장 유무에 관계없이, 어떠한 원인 유무에 상관 없이;

(2) (a) 제 (1)항에 제시된 계약조건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언어로 명시되어야 하며.
(b) 가석방자는 (1)항에서 허용하는 수색 조건을 이해하였음을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3) (a) 경찰이 제(1)항에 따라 가석방된 자의 거주지를 수색하거나 수색에 따른 압수를 수행하려면 보호관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한다.
(b) 경찰이 불심검문을 위해 가석방자의 신체, 개인 소지품 또는 차량을 수색하는 경우 수색을 행한 후 가능한 한 빨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4) 이 조항 아래 이루어진 수색은 괴롭힘(harassment)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5) 조항 (1)에 제시된 압수 수색에 관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수감자도 동의할 때까지 가석방 허용이 불가하다.

(6) 명시된 이 부분은 2008년 5월 5일 이후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수감자에 한한다.

* 자료출처: Utah Code Annotated § 77-23-301 (LexisNexis, 2008).

유타(Utah) 주와 같은 일부 주는 경찰들에게는 대상자의 자택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보호관찰관들이 경찰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주는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압수 및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라는 조건 대신 '합리적 의심이 존재 할 때'만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는 대상자에 대한 영장이나 합법적 의심 유무에 관계없이 가석방자의 소유물을 수색하고 압수 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렇듯, 가석방 조치를 위해서 수감자들은 자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미 법원에서는 가석방자가 남은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정부가 그를 통제하고 감독하는 보호관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을 포함하는 가석방 동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압수·수색과 관련된 권리를 떠나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들

은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녔기 때문에 빠르게 보호관찰대상자를 체포하여 카운티 유치장에 수감시킬 수 있다.

두 번째로 미국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이 한국 보호관찰관과 다른 점은 총기와 같은 개인 보호 장비를 지닐 수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총기(firearm)와 같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고, 경찰봉, 후추 스프레이, 수갑을 소지할 수 있으며, 경찰표식이 없는 경찰차(unmarked police car)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일반 보호관찰관들이나 교도관들이 지닐 수 없는 총기까지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이 보호용 장비로 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대상자가 고위험군인 만큼 관련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성인 가석방 운영 부서에 따르면 1988년 이후에 고용된 가석방 요원에게는 총기 휴대가 필수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경찰로 분류되며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988년 새로 고용된 모든 경찰관과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심리 평가를 통과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만약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이 1988년 이전에 고용이 된 경찰관들이라면 총기와 관련된 훈련을 받고 시험에서 합격한 후, 총기 소지가 가능하다. 현재로는 캘리포니아 주의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들은 정부에서 배부되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2006).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총기 소지 시 이를 감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리노이 주 보호관찰관에 대한 정책을 보면 모든 가석방 보호관찰관들은 공공 행위법 제96-0230에 따라 의무적인 총기 훈련을 마치고 인증서를 받으면 총기 소지가 가능한데, 여기서의 의무적인 총기 훈련은 경찰관들이나 다른 법 집행 훈련 및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매년 이 위원회에서 인증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Illinois Public Act 96-0230).

세 번째로, 이들의 권리와 연결된 부분이기도 한 물질적 자원에 차이가 있다. 이들이 업무를 보는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는 자체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독립형 사무실로 운영되는데, 이들은 현장에서 사용할 자신의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및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으며, 휴대용 무선 통신기와 경찰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와 다르게 샤워 시설이나 라커룸은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보통 그들의 사무실에는 칸막이 책상이 있고, 신문실, 불시 소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실, 그리고

장비들을 정리하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또한,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에서 밀수품을 발견할 경우를 대비한 물품보관 및 증거실이 있어 증거를 봉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사무소에는 임시 수용소도 구비되어 있지만, 가석방 보호관찰관은 영장을 직접 작성하여 준수사항을 어긴 대상자를 카운티 수용소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3) 경찰 및 기타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

전자감독에서의 경찰과 보호관찰관들의 공조를 다룬 연구들과 여러 법원 판결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 또는 경찰들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독 자료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 경찰은 대상자의 과거 위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데 그들은 이를 범죄현장 추적 및 기타 경찰 조사의 목적과 다른 별개의 용도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르게,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과 경찰의 공조는 크게 요구되거나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는 이미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이 경찰과 같은 자격과 권리를 갖고 있어 특별히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는 일이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은 매우 협조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마다 경찰과의 공조의 유형이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의 보호관찰관들은 다른 주와 다르게 체포 영장을 발부만 할 수 있을 뿐, 도주로 인해 공개 수배된 가석방자들을 체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찰에게 체포와 관련된 일을 맡겨야 한다.

미국에는 전자감독 피부착자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여러 특정 부서들이 존재한다. 경찰들과의 공조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다양한 부서들이 서로 어떠한 자격과 수행능력으로 전자감독 피부착자를 관리·감독하는데 노력하고 있는지 대해 알아보는 것 역시 미국 전자감독제도에서의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 관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가) 성범죄자 관리반(Sex Offender Management Unit)

뉴저지 주 가석방 위원회는 성범죄자 감독을 담당하는 뉴저지 주 법 집행(공식 경찰) 기관으로, 이 위원회의 목적은 성범죄자를 관리·감독하여 또 다른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있다. 뉴저지의 성범죄자 관리반의 담당건수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특정 성범죄자들에게 적용되는 종신 전자감독에 관한 법안 때문이다. 성범죄자 관리반은 지역사회 종신형 보호관찰(Community Supervision for Life)을 선고받은 범죄자 또는 조건부 석방에 따른 범죄자를 모두 감독할 책임이 있다. 뉴저지 주법에 따르면, 1994년 10월 31일 이후에 행해진 성범죄의 대부분은 가석방 위원회의 관할 아래 평생 감독을 받게 된다. 이 명령이 도입되기 전에 성범죄자는 이 성범죄자 관리반 전체 사건에서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중요한 공공 안전 책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뉴저지 주 가석방 위원회는 성범죄자의 패턴, 심리, 그리고 범죄 예방에 관한 지식과 모범 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국립 사법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Justice, NIJ)에서 권장하는 성범죄자 감독에 대한 격리(봉쇄) 접근 방식(Containment Approach)을 채택하였다. 이 방식은 집중적 가석방 보호관찰을 포함하는 동시에, 다른 형사 사법 기관들과의 정보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는 성범죄자의 충동성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범죄자 개인별 치료 및 특정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포함하여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킬만한 행동에 대해 미리 예측 및 감독하는 방식이다. 뉴저지 주 가석방 위원회는 FBI, 법무장관실, 뉴저지 주 경찰, 주 카운티 검찰을 비롯한 법 집행 파트너 및 Rutgers 건강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치료 제공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격리에 필수적인 외부 및 내부 통제를 부과한다.

(나) 전자감독반(Electronic Monitoring Unit, EMU)

전자감독반은 감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무선주파수(RF) 자택 구금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을 하게 된다. 전자식 발목부착형 송신기와 자동 경보를 제공하는 가정 기반 수신기를 사용하여 전자 감독대상자가 외출이 허용되는 상황과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자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전자감독반은 성범죄자 관리반과 협력하여 감독이 필요한 뉴저지 범죄자를 위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감독이 필요한 대부분 모든 가석방자는 이 팀에 있는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들이 관리한다. 또한, 전자 모니터링 대응 팀(Electronic Monitoring Response Team)은 업무 시간 외 (24/7)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프로그램 규칙을 준수하고 장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가석방을

후속 조치한다.

(다) 도주자(탈주자) 체포반(Fugitive Apprehension Unit, FAU)

도주자 체포반은 가석방으로 나온 보호관찰대상 도주자를 찾기 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그들을 검거해 구금시설로 돌려보내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도주자 체포반의 구성원은 미국 연방 보안관(U.S. Marshals Service)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써 뉴저지 외부에서 도주자를 체포하고 뉴저지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 연방 뉴욕/뉴저지 주 지역관할 대책 위원회(U.S. Marshals Service New York/New Jersey)의 구성원으로써 다른 법 집행 기관에서 찾는 도주자의 수사 및 체포를 지원하기도 한다. 의회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도주자 체포반은 8개로, 뉴욕/뉴저지, 태평양 남서부, 오대호, 수도 지역, 남동부, 걸프 연안, 플로리다/카리브해 및 캐롤라이나 지역에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도시에는 지역 법 집행 기관이 있다. 모든 카운티에는 수사관이 있는 카운티 검사가 있고 미국 주 경찰이 있다. 때문에 서로의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주는 평소 모든 법 집행 기관에 해당 지역에서 감독을 받는 가석방자들에 대해 알린다. 그 이유는 한 지역에서 가석방 된 수감자가 출소했을 경우 다른 법 집행기관과도 가석방자 담당관이 누구이고, 가석방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이다. 때에 따라 지원요청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석방 보호관찰관들이 다른 가석방자들이 거주하는 공공주거지(housing project)에 들어가야 할 경우, 보호관찰관들은 지역 경찰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 경찰들 또한 가석방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대상을 체포하거나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석방 보호관찰관들에게 함께 들어갈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들은 대상자를 제재하거나 안전하게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서로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의 힘이 가장 드러나는 때는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이다. 지역사회 감독에서 무단이탈을 한 경우에는 단지 뉴저지 주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전역의 문제가 된다.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대상이 도주한 것이 확인이 된 순간 도주자의 정보가 아래와 같이 공개된다.

[그림 4-3] 도주자 공개수배(Wanted Parolee)

* 자료출처: Illinois Department of Corrections Website (일리노이 교정국 웹사이트)

[그림 4-4] 도주자 공개수배(Wanted Parolee)

Y26441 - ROMERO, MICHAEL

Warrant Information
ESCAPE FROM WORK RELEASE

Parent Institution:	STATEVILLE CORRECTIONAL CENTER
Offender Status:	ESCAPE
Location:	ESCAPE

Click here to register for notification on any changes to this offender's custody status

PHYSICAL PROFILE

Date of Birth:	12/23/1985
Weight:	186 lbs.
Hair:	Brown
Sex:	Male
Height:	5 ft. 07 in.
Race:	Hispanic
Eyes:	Brown

MARKS, SCARS, & TATTOOS

TATTOO, WRIST, RIGHT - "MARIA"
TATTOO, WRIST, LEFT - "LUPE"
TATTOO, CHEST - "A", "O"
TATTOO, BACK - CROSS
GLASSES (PRESCRIPTION) -

ADMISSION / RELEASE / DISCHARGE INFO

Admission Date:	12/11/2017
Projected Parole Date:	02/07/2019
Last Paroled Date:	
Projected Discharge Date:	PENDING

SENTENCING INFORMATION

MITTIMUS:	17CR1189601
CLASS:	4
COUNT:	1
OFFENSE:	POSS AMT CON SUB EXCEPT(A)/(D)
CUSTODY DATE:	08/07/2017
SENTENCE:	3 Years 0 Months 0 Days
COUNTY:	COOK
SENTENCE DISCHARGED?:	NO

* 자료출처: Illinois Department of Corrections Website (일리노이 교정국 웹사이트)

공개 수배가 시작되면 도주자의 얼굴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자세하게는 도주자가 저지른 범죄에 관한 정보, 위험 수준, 교도소 소속, 도주 원인 및 도주가 시작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의 신상정보로는 이름, 얼굴, 생년월일, 머리카락 색상, 눈동자 색상, 성별, 키, 인종에 대한 정보이다. 다음으로는 도주자의 특이사항과 수감기록에 대해서도 공개하는데 교도소 수감 날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날짜, 가석방의 이전 기록 등이 이에 해당하며, 출소에 관한 내용과 범죄의 위험수준을 알리기 위해 도주자의 형기에 대해서도 언급된다.

이러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는 동시에 도망자 체포반, 지역 경찰관, 지역 법 집행기관, 주 경찰 또는 보안관 태스크포스와 모두 협력하여 도주자들을 체포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미국 보안관의 인증을 받은 지역 도주자 체포반은 영장에 대해 지역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공개 수배된 도주자를 빠르게 포획할 수 있다. 도주자에 관한 정보가 전국적으로 공개된 후 1~2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 도주자 체포반이 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체적으로는 1시간 이내 출동한다.

(라) 위기 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 CIT)

공조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신이상자와 같은 대상자를 감독해야 할 경우이다. 보호관찰관들이 필요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를 통제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은 가석방자의 자택을 방문할 시 위기 개입팀(Crisis Intervention Team, CIT)과 함께 갈 수 있다. 위기 개입팀 모델은 법 집행 요원과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 간의 상호 작용 결과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정신 질환이 있는 개인이 정신과적 위기를 경험하거나 정신 질환의 영향으로 행동하는 경우 위기 개입팀은 적절한 정신 건강 서비스 및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원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물리적 힘을 가할 필요 없이 경찰과 같은 보호관찰관이 정신과적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를 완화하는 훈련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이 위기 개입 팀의 주요 요소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mental health provider), 경찰과 같은 법 집행과 담당자, 가족 및 정신 건강 관련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mental health consumer), 기타 이해 관계자 간의 커뮤니티 협력체이다. 또한, 이 위원회는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경찰서나 보호지역에서 지역사회 정신 건강 시스템으로 이송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정신 이상을 지닌 대상자의 위반 사항만 보고 제재조치를 내리는 대신, 대상자를 이해하고 더 정당하고 효율적인 제재조치를 내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호합의적인 관계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서로 함께 사회 안전을 위해 힘쓰는 모습 또한 지역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공조 부분에 있어서 가석방 담당 보호관찰관들이 단지 경찰만과의 공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다양한 법 집행 기관들과 시민의 협조 및 도움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보호관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매우 큰 장점으로 보인다.

2. 유럽

다음으로는 유럽국가의 5개의 관할구역(벨기에, 잉글랜드 웨일스,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는 전자감독 보호관찰에 대해 이해하고, 각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가. 유럽 전자감독 제도 개요

유럽 전자감독제도는 1980년 영국에서 시작된 비교적 새로운 형사행정 도구이다. 아래 [표 4-4]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자감독자체는 유럽 5개 관할 구역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형사 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관할 구역에서 무선주파수(RF) 기술을 사용하였으나, GPS 기술의 경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모든 관할 구역에서 사용되었고, 스코틀랜드는 2016년 1월까지 GPS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감독은 모든 관할 구역에서 보호관찰과 결합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벨기에,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적인 조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표 4-4] 유럽 전자감독 유형/양식(Modalities)

	벨기에		잉글랜드 & 웨일스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RF	GPS	RF	GPS	RF	GPS	RF	GPS	RF	GPS
보석 석방(Pre-trial)		O	O		O		O	O		
법원 명령(Court order)	O		O		O		O	O	O	
보호관찰 (Alternative to imprisonment)	O						O	O		
가석방(Early release)			O	O	O		O	O	O	
형기 종료 후 석방 (Post-release)			O	O		O	O	O	O	
알코올 감독 (Alcohol monitoring)			O (p)				O (p)		O	
피해자 프로그램 (Victim's program)				O (p)						

* 자료출처: Hucklesby et al. (2016) ; RF= 무선감독; GPS=실시간 감독; p=파일럿 형식/검토

1)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유럽 5개의 관할 구역 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전자감독의 사용 규모이다. 현재로서는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다른 4개 관할 지역에 비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는 전자감독이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전자감독 대상자는 1,700명으로 이는 두 번째로 전자감독 사용현황이 높은 벨기에보다 5배나 큰 규모이다. 독일은 하루에 100명을 약간 넘는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5개의 관할 지역 중 가장 낮은 사용 규모이다. 또한 벨기에에서는 1년 동안 5,000명의 대상자에게 전자감독을 진행했는데 이는 스코틀랜드(약 3,000명)나 네덜란드(약 1,500명)에 비해 많은 수치이다.

전자감독의 사용과 구현 방식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범위로 전자감독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교도소 인구가 감소하고 구금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독일과 네덜란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벨기에보다 현저히 낮은 교도소 수감률을 보고하고 있다. 영국은 가장 많은 전자감독대상자를 관리 하고 있지만, 교도소 인구 규모에 비해 그 사용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를 직접 비교할 수 없지만 각 관할구역의 교도소 인구의 비율로 전자감독의

사용에 대해 살펴보면, 잉글랜드(14%), 벨기에(13%), 스코틀랜드(11%)는 전자감독을 네덜란드(4%)와 독일(<1%)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자가 전자감독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서는 전자감독을 통해 고위험 범죄자와 같은 특정 그룹을 감시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 GPS 기술은 보호관찰관 또는 다분야 팀에 의한 집중 감독 패키지의 일환으로 주로 성범죄자를 감시하는데 쓰인다. 독일을 포함한 몇몇 관할권에서는 형기 종료 후에도 전자감독이 요구되기도 한다.

전자감독은 다양한 목표와 기술을 반영하여 범법자에게 적용된다. 유럽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으로 제외하는 범죄자 유형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신 질환자나 학습 장애가 있는 개인은 전자감시를 받기에 부적합한 후보자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약물이나 알코올에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전자감독 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의 양상이 심각하거나, 습관성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GPS기술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 높거나 범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전자감독이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는 동시에 범죄 수위가 낮거나 재범위험성이 낮은 대상자에게도 부당한 처벌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위험수위가 낮은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게 전자감독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전자감독 종류

유럽 또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전자감독 기술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무선주파수 기술을 이용한 전자감독으로 5개의 관할관 중 4개의 관할지역에선 이를 GPS 전자감독보다 더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무선주파수 전자감독은 대부분 범죄자의 통금이나 자택구금에 사용된다. 그러나 독일은 자택 구금뿐만 아니라 이들이 외부에서 보호관찰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할 때도 무선주파수 기술을 통해 감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GPS 전자감독은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모든 관할 구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세 개의 관할 구역(벨기에, 영국 및 독일)에서는 소수의 고위험 범죄자에게 사용이 제한되고 영국에서는 소수의 범법자에게만 사용된다. 포함영역(inclusion zones)과

관련된 내용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될 때도 있지만, GPS 전자감독은 주로 출입제한구역(exclusion zones)을 감시하는데 사용된다.

3) 전자감독의 효율성

유럽에서의 전자감독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문헌들을 종합해보면 전자감독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c-Kenzie, 1997; Schmidt, 1998; Gendreau et al., 2000; Whitfield, 2001). 이후 2005년에 Renzema와 Mayo-Wilons가 위험수준 중 고위험인 범죄자 집단에 대한 전자감독의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했으나 효율성에 대한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Renzema & Mayo-Wilons, 2005). 최근 Belur와 동료들(2020)은 Renzema와 Mayo-Wilons이 체계적으로 문헌을 고찰한 연구(2005)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조금 더 엄밀한 연구방법론적 도구를 가지고 전자감독의 효율성을 탐구했다. 이들은 단지 전자감독이 재범률에 끼치는 영향보다는 전자감독을 둘러싼 환경이나 쓰이는 형태에 따라 범죄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전자감독 기술은 GPS 지원 감시 및 추적기술의 향상과 함께 상당히 발전하였으므로 추적이 실시간으로 수행되는 경우 재범 감소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Belur와 동료들(2020)은 전자감독이 특정 범죄자(예를 들어, 성범죄자)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특정 시점(예를 들어, 재판 후 구치소 대신)에서 그리고 전자감독이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다른 조건들, 이를 테면 치료프로그램 등의 요소와 함께 부과되었을 때 재범률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감독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대상자에게 주어졌을 때는 재범률을 낮추는데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감독과 관련된 평가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 지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유럽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전자감독의 장점 중 하나는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정보는 위반 준수사항 보고서(특히 출입금지지역에서 발견되었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데, 위반자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는 GPS로부터 생성될 수 있다. 전자감독의 장비의 예민함은 사소한 위반이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통행 금지 시간에 몇 분 늦거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시 출입금지 구역으로 이탈하였을 경우에도 위반사항으로 고려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할권은 위반 정책에 약간의 재량을 허용한다. 위반 내용 중 심각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는 통금 시간의 전체 또는 일부 누락, 전자기기 훼손, 태그 제거, 출입금지 구역 진입 및 보호관찰관에 대한 위협 행동이 포함된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알코올이나 약물 사용을 할 경우에도 위반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위반사항 제재조치를 내리기 전 고려하는 부분에서도 관할 구역마다 차이가 있다. 세 개의 관할 구역(벨기에,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에 걸친 위반 정책은 매우 유사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제재가 결정되고 전자감독대상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는 제재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조적으로 네덜란드에서는 위반 유형이 아닌 개인과 관련된 위험 및 치료나 교정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우선순위 수준을 기반으로 위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네덜란드에서는 제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한 개인으로부터 설명을 요구하는 반면, 다른 관할 구역에서는 제재 절차가 시작된 후에 위반자의 설명을 요구한다. 따라서 네덜란드는 준수위반 대응에 있어서 더 많은 재량을 지녔다고 볼 수 있고, 벨기에, 스코틀랜드, 영국은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기관의 관여는 절차에 대한 더 많은 재량권을 생성한다. 이것은 벨기에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재판 수사관이 위반 절차를 조사할 책임을 가지지만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는 관제센터 관리자가 위반 절차 개시를 결정한다.

다양한 전자감독 양식(modalities)이 존재하는 관할 구역에서는 국가 내 위반 임계값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모든 준수사항 위반 정책에는 위반에 대한 점진적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는 경고부터 체포 또는 교도소 소환 집행으로 확대된다. 심각한 수준으로 간주되는 위반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집행 조치로 이어진다.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할권 및 전자감독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현재의 보호관찰을 지속할지 여부부터 현재 전자감독 명령이나 자격증 등 면허를 취소하기까지 이를 수 있다.

여러 관할권에서 교정본부장(벨기에) 또는 법원(영국)의 재량에 따른 최종 위반 대응 결정이 너무 관대하여 위반자가 전자감독으로 재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벨기에에서는 교정본부장이 교도소 과밀 수준을 기준으로 석방 결정을 내린 결과 전자감독 제재 결정의 불일치가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보다 일관되고 객관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자관리청(NOMS)의 중앙집행팀에서 위반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든 관할 구역에는 전자감시 대상 개인이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변호할 수 있는 체계가 존재한다. 실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는 관할 구역 그리고 관할 구역 간에도 다르다. 영국은 공식적인 제재조치 절차에 명시된 특정 요구 사항과 시간 척도를 고려하며 위반대응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미팅으로 위반자들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한 설명을 보호관찰관에게 전달할 수 있다. 모든 관할권에서 병원 등의 서신과 같은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가 유효한 경우 프로그램, 재판 등의 결석 또는 불참석이 승인되고 위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

위반 임계값에 도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포함하여, 모든 통행금지 위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준수위반 보고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보호관찰 위원회에서 감독대상자의 규정 준수에 대해 논의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그들이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장비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알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이 종료되는 시점은 관할권마다 다르다. 벨기에에서는 위반 사항이 경찰이나 교도소로 보고되면 더 이상 전자감독 부서의 책임이 아니며 전자감독이 종료된다. 반대로 영국에서는 법원이나 교도소에서 전자감독 공급자에게 감시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할 때까지는 전자감독이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영국 시스템은 의사소통 지연으로 인해 케이스가 종결되었음에도 한 개인의 전자감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전자감독 공급자가 불필요한 개인을 감독하여 초과 지불을 받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5개의 유럽 관할 구역 중 독일은 GPS 전자감독만 사용하며, 주로 복역 후 출소한

범죄자, 즉 형기 후 출소한 자들에게 사용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약 75%는 성범죄자이고 나머지 25%는 폭력적인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써 고위험군 형기 후 출소자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감독 위반사항들은 다섯 가지로, 구역 위반 알림, 배터리 저전력 알림, 이동 및 GPS 알림, 주택 단위 알림(표준 위치장치 기기 외에 거주지에 주택 단위가 설치된 경우), 기타 알림(위치추적기 TY 고정 스트랩 변조 및 훼손, 위치추적기 케이스 열림), GPS 신호 실종(GPS 추적기에 대상자의 위치정보가 15분 동안 잡히지 않는 경우)이다. 가장 일반적인 위반 경보는 '장치 배터리 부족'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반인 '배터리 소모'의 전조이다. 하지만 배터리 부족만으로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HZD(데이터 처리 센터), GÜL(모니터링 센터), 담당 보호관찰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경찰 및 관할 법원 또한 개입할 수 있다.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 알림은 데이터 처리 센터인 HZD의 서버를 통해 필터링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자감독 모니터링 센터인 GÜL에 전달된다. 이후, 전자감독 모니터링 센터는 '감독 기관(agencies for supervision of conduct)'으로부터 이전받은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전자감독 모니터링 센터는 담당 보호관찰관, 감독 기관, 혹은 관할 경찰서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알릴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전자감독 준수위반 사실은 감독 기관에 통보되며, 감독 기관은 위반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 여부가 결정되어야 국가 검찰이 활성화되고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결국 형 집행 법원은 기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지시 위반은 형법 145a에 따라 독립적인 형사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Dünkel, Thiele, & Treig, 2016).

위반 제재조치 절차에 있어서 먼저 검찰은 법원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이 정보는 이전에 경찰이 모니터링 센터 및 데이터 처리 센터에 연락하여 수집한 것들이다. 위반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전자감독 모니터링 센터 또는 경찰은 판사의 공식 승인을 받아 관련 지리 데이터(일반적으로 대상자의 이동경로에 관한 데이터)를 데이터처리센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에 그것을 '동결' 하는데, 이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류 중인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전자감독 모니터링 센터가 개별적인 사례에서 위반 또는

알림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감독 기관에서 해당 사례에 대해 제공한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상황과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이다.

상황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을 다음 단계에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실제로 감독대상자가 전자감독 지침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전자장치의 조작 또는 변조와 같은 심각한 경보는 실제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며, 구역 위반과 관련된 알림의 대부분은 실제로 앞서 설명된 기술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호주

가. 호주 전자감독 사용 현황 및 효과성

정책 입안자들이 GPS 모니터링 기술이 보호관찰적인 측면에서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전자감독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호주의 모든 주와 지역에서는 GPS 전자감독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발찌의 사용은 2016년 이후 150% 증가했는데, 2019년 기록에 따르면 약 2,500명의 전자감독 보호관찰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 호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된 전자감독이 보석, 가석방 또는 집행유예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2017년 전자감독을 시작한 퀸즐랜드에서는 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데, 이 중 59명은 성범죄자이고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낮은 위험성(non-violent)을 지닌 사람이다.

1) 지역별 전자감독 제도 현황

호주에서 쓰이는 보호관찰에 사용되는 전자감독의 일반적인 방법은 가택 구금(Home detention)이다. 1986년과 2004년 사이에 호주 본토의 모든 주에 산발적으로 도입된 가택 구금은 구금형의 대안으로, 엄격한 조건 하에 지역사회에서 범죄자의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Victorian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2011).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남 호주 및 노던 준주는 처음에는 모두 무선주파수

모니터링을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GPS 모니터링으로 전환되었다. 호주 정부는 엄격하고 긴밀한 감독 체제를 기반으로 자택 구금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여기에는 일부 재활 치료 요소도 들어가 있다. 이러한 감독 조치에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의 대면 방문, 불시 방문, 접촉 및 전화 통화, 소변 검사 및 음주 검사가 포함된다.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NSW)는 호주 행정구역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 교도소 인구 면에서도 호주에서 가장 큰 관할 구역이다. 가택구금은 1997년부터 시작되어 꾸준히 운영되고 있지만, 가택구금을 통한 보호관찰을 진행하는 범죄자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 전체에서 보호관찰을 진행하기 어렵고, 일부 판사는 가택구금을 매우 낮은 형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2016년 6월 '고위험 가정폭력 범죄자'를 추적하여 집이나 학교와 같은 제한 구역에 접근하는 경우 당국과 잠재적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GPS 전자감독 장치를 도입하기 위하여 200만 유로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다(Cowan, 2016).

빅토리아(Victoria)는 전통적으로 호주에서 가장 낮은 교도소 수감율을 보고해 온 지역인데, 이는 범죄율이 낮기 때문이다. 빅토리아는 2004년부터 무선주파수 모니터링을 사용한 자택구금을 시작하였지만 적은 범죄자 수가 지속적인 문제였다(Melbourne Centre for Criminological Research and Evaluation, 2006; Victorian Sentencing Advisory Council, 2008). 2011년에 새로 선출된 보수적인 빅토리아 주 정부는 자택구금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2013년 가석방 조건인 사회내처우 명령과 병행해서 운영되도록 GPS 전자감독 기술을 도입하였다. 이 명령에 의해 GPS 감독을 받는 대상자는 점차 증가하여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87명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Adult Parole Board of Victoria, 2016).

2016년 9월 분기 기준, 교도소 수감자 중 40%는 남 호주(South Australia) 수감자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율인 31%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남 호주에서는 교도소 대신 또는 형기종료 후 자택구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감독은 집중 보석 조건으로 제공된다(South Australian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2014; Victorian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2011). 2013년의 입법 수정안은 지역사회에 잠재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수감자, 범죄자 및 기타 구금에서 석방된 사람을 위한 전자감독의 사용을 더욱 확장하였고(South Australian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2014: 86), 2014년에는 교정국 장관이 정부가 전자발찌의 사용으로 자택구금의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교도소 수감자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밝혔다.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남 호주에는 총 846명의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보석 조건으로 나온 사람들이었다. 이는 남 호주가 다른 호주 지역보다 전자감독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는 여러 면에서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 약 245,000명으로 호주 전체 인구의 1%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원주민 비율은 30%에 육박한다(전체 호주에서 원주민의 비율은 3%). 현재 상황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교도소 수감률인데, 10만 명 당 881명으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노던 준주에는 현재 일반적으로 약 20명의 범죄자가 일시적 제재를 받고 있는 가택구금 프로그램이 있지만(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2016년 5월에 정부는 '전자팔찌'에 거의 3백만 유로(약 40억)을 소요하여 가택구금된 사람들을 GPS 기술로도 감독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적하려는 의지를 보였다(Vanovac, 2016).

2) 전자감독의 효과성

기존에 무선주파수 전자감독과 관련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것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무선주파수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재범률은 약 10%로 교도소에서 바로 출소한 범죄자의의 재범률 50%나, 기타 사회내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재범률이 26%인 것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Melbourne Centre for Criminological Research and Evaluation for Corrections Victoria, 2006; NSW Standing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2006; Victorian Sentencing Advisory Council, 2008). 그러나 문제는 호주가 더 이상 무선 주파수 전자감독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과, 미국과 달리 호주 정부에서 GPS 전자감독 제재의 운용에 대해 평가하거나 독립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GPS 전자감독 제재를 통한 중대 성범죄자 감독의 실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매우 필요하다.

나. 호주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제재조치

호주 전자감독은 집중적 보호관찰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은 미국이나 유럽의 보편적인 전자감독 준수사항과 매우 흡사하다.

13. 대상자는 반드시:

a)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b) ICO를 발행한 법원의 24시간(업무일 기준) 이내에 지역 보호관찰소에 보고하십시오.
c) 사전 승인을 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주소 변경에 대해 보호관찰관의 사전 승인을 구합니다. 이 경우 대상자는 24시간 이내에 주소 변경을 보고해야 합니다. 먼저 직접 방문으로 보고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는 전화로라도 보고해야 합니다.
d) 위원 또는 그 대리인의 허가 없이 NSW를 떠나지 마십시오.
e) 주 가석방 당국(SPA)의 허가 없이 호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f) 보호관찰관의 규정 준수 또는 커미셔너(대리인 포함)의 모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지시를 준수합니다.
g) 보호관찰관이 언제든지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h) 보호관찰관이 지시에 따라 자신의 즉각적인 통제 하에 있는 장소 또는 사물의 수색에 복종합니다.
i) 알코올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j)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약물을 획득하거나, 합법적으로 획득한 약물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k)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 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검사, 소변 검사 또는 기타 의학적으로 승인된 검사 절차를 따르십시오.
l) 화기 또는 기타 공격용 무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m) 의사, 치료사 또는 상담가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감독관에게 제공할 권한을 허락합니다.
n) 보호관찰관이 부과한 통행금지 조건을 준수합니다.
o)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최소 32시간의 지역사회 활동과 추가적인 프로그램 또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p)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감독을 받아야 하며, 전자감시와 관련된 작동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관이 제공하는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q) 전자장치를 조작하거나 손상시키거나 비활성화하지 마십시오.
r)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형태의 직업이나 고용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s) 고용 유지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락합니다.
t)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사람 또는 특정 부류의 사람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u)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 또는 지역에 방문하지 않습니다.

* 자료출처: Sentencing Council.(2008).

가택 구금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준수사항 위반이 매우 적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감독의 조건사항 중 하나

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전에 결정된 제재 조건의 위반 조치가 시작되고, 위반이 입증될 경우 범죄자는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Provan, 2007) 위반사례가 매우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반사항 제재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제2절 | 미국 비교법 기반 국내 적용 법리적 검토

1. 미국의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조치 법률분석

미국의 전자감독제도는 1983년 뉴멕시코 주 지방법원의 J. Love 판사가 사회 내 처우 결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감독하는 방식으로 처음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전자감시가 수반되는 보호관찰을 도입한 것이다. 이후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전자감시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의 전자감독제도는 대부분 교도소 수감자들을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전자감독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2000년대까지도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와 같은 경미한 생활범죄들이 전자감독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2005년에 플로리다에서 제정된 '제시카 런스포드 법(Jessica Lunsford Act)'이다.[47] 성범죄자였던 존 코위(John Couey)가 어린 소녀인 제시카 런스포드를 강간 살해한 사건이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게 평생동안 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제시카 런스포드 법은 이후 미국 내 다른 주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성범죄자 등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48]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제도도 제시카 런스포드 법을

46) Council, T. C. J. P. (1986).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47) Jessica's Law – The Jessica Lunsford Act, https://www.floridabackgroundchecks.com/jessicas-law-the-jessica-lunsford-act/ 우리의 전자감독 제도 관련 법률도 제시카 런스포트 법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2007년 제정된 우리나라의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도 제시카 런스포드 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 및 모든 주정부는 전자감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49] 전자감독은 판결 전에 이루어지는 것과 판결 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50] 피고인의 법정 출두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a cond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을 명할 수 있다.[51]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성범죄의 경우는 반드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장치 부착은 판결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집행유예(Probation),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 조기석방(Prerelease Custody), 감독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중간 제재(Intermediate Sanction for Supervision Noncompliance)에 부가된 전자장치 부착으로 나누어진다. 집행유예 또는 감독조건부 석방자의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52] 조기석방은 교정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교도소 위원회(Bureau of Prisons)는 수감기간의 마지막 10% 또는 6개월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수감자를 자택에 구금할 권한이 있는데, 석방된 자가 자택 구금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전자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53] 감독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중간 제재의 경우, 대상자가 보호관찰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법원이 심리 후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명할 수 있다.[54]

---

49) 2016. 9. 7. Use of Electronic Offender-Tracking Devices Expands Sharply,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6/09/use-of-electronic-offender-tracking-devices-expands-sharply

50) 18 U.S. Code § 3141 - Release and detention authority generally

51) 18 U.S. Code § 3142 - Release or detention of a defendant pending trial

52) 18 U.S. Code § 3563 - Conditions of probation (b)(19) (remain at his place of residence during nonworking hours and, if the court finds it appropriate, that compliance with this condition be monitored by telephonic or electronic signaling devices, except that a condition under this paragraph may be imposed only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53) 18 U.S. Code § 3624 - Release of a prisoner In general.
§ 3624 (g) (2) (A) (I) (I) (A prisoner placed in prerelease custody pursuant to this subsection who is placed in home confinement shall—(I)be subject to 24-hour electronic monitoring that enables the prompt identification of the prisoner, location, and time, in the case of any violation of subclause (II)). 이 경우 교도소위원회는 집에 수감된 수감자를 감독하기 위해 미국 보호 관찰 및 미결 서비스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8 USC § 3624(g)(2)(7).

54) 18 U.S. Code § 3583 - Inclusion of a term of supervised release after imprisonment
18 U.S.C. § 3583(e)(4) (order the defendant to remain at his place of residence during nonworking hours and, if the court so directs, to have compliance monitored by

한편, 미국의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제도에서 흥미로운 점은 대상자에 대한 상당히 광범위한 수준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55]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의 상당부분을 포기하는 조건이 부가된다. 이에 근거하여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거주지, 차량, 핸드폰, 컴퓨터, 전자장비, 핸드폰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핸드폰을 통해 동영상, 사진 등을 전송하도록 하거나, 음주수치 및 수면패턴 등이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감독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특징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56] 잘 알려져 있듯,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의 95% 이상은 플리바게닝을 통해 종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게 된다. 이 조건에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시하는 구체적인 형량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과 관련된 내용 들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위와 같이 민감한 정보들의 공개 조건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일부 제기되지만,[57] 범법자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에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준수사항 위반 관련

전자감독 감시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 등을 취소하고 재구금할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은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 감독 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중간 제재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형집행이 유예 또는 중단되었거나, 재판 중 구금에서 일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법원 또는 교정당국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심리를 통해 다시 구금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집행유예 상태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자. 대상자

---

telephone or electronic signaling devices, except that an order under this paragraph may be imposed only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55) Weisburd, K. (2019). Sentenced to Surveillance: Fourth Amendment Limits on Electronic Monitoring. NCL Rev., 98, 717.

56) Weisburd, K. (2019). Sentenced to Surveillance: Fourth Amendment Limits on Electronic Monitoring. NCL Rev., 98, 717.

57) Weisburd, K. (2019). Sentenced to Surveillance: Fourth Amendment Limits on Electronic Monitoring. NCL Rev., 98, 717.

가 집행유예 기간 종료 전에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32조에 근거하여 심리를 실시하고,[58]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여[59] 1) 조건을 수정·가중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연장하거나, 2)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대상자에 대한 형을 집행할 수 있다.[60] 그러나 만약 대상자가 마약(Controlled Substance) 또는 총기를 소지하거나, 마약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유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1]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취소의 연기도 가능하다.[62]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에 부가된 준수사항 위반도 유사하게 처리된다.[63]

구체적인 준수사항은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고, 개별 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종류별 대략적인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4-5] 종류별 준수사항 예시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
준수사항 예시	- 보호관찰관과 정기적인 미팅 - 법원에 지정된 기일에 출석 - 벌금 납부 또는 피해회복 완료 - 특정 인물 또는 장소 회피 -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state) 밖으로 여행 금지 - 과도한 음주 금지 - 음주 또는 마약 검사에 협조	-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정기적 보고 - 관할 밖으로의 여행시 신고 -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할 것 - 거주지 변경 신고 - 직업 변경시 신고 - 범죄자와 접촉 시 신고 - 범죄정보원으로의 활동 - 감독조건부 석방에 따른 지시 이행	자택거주 (예외사유) - 출근하거나 구직활동 - 재범방지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에 참석 -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 - 피해자 회복활동에 참여 - 의료 처방 - 종교활동에 참여 - 가족활동에 참여

* 자료출처: 표는 다음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재구성한 것임. https://www.findlaw.com/criminal/criminal-procedure/probation-faq.html;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overview-probation-supervised-release-conditions;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90304_R45558_cd2f78a8051281a0b15f7a318513e65675860c25.pdf

58) Fed. R. Crim. P. 32.1 - Revoking or Modifying Probation or Supervised Release
59) 18 U.S. Code § 3553 - Imposition of a sentence (a) Factors To Be Considered in Imposing a Sentence
60) 18 U.S. Code § 3565 - Revocation of probation (a) Continuation or Revocation.
61) 18 U.S. Code § 3565 - Revocation of probation (b) Mandatory Revocation for Possession of Controlled Substance or Firearm or Refusal To Comply With Drug Testing.
62) 18 U.S. Code § 3565 - Revocation of probation (c) Delayed Revocation.
63) 18 U.S. Code § 3624 - Release of a prisoner; 18 U.S. Code § 3563 - Conditions of probation

한편, 위와 같은 준수사항들이 개별적인 보호관찰의 조건으로 규정되는 내용 및 방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각의 준수사항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문구들이기 때문에, 실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 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조건들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들이 부가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조건 위반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경미한 일탈에 해당되기 때문에, 섣불리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보호관찰관들이 대상자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실제 연방 형사사건에서의 보호관찰과 관련된 조건들이 기재된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문구들을 살펴보면, 보호관찰관들에게 상당한 권한 내지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United States of America v. Scott A. Maasen 사건

- 미국 애리조나 주에 소재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 대상자는 2018. 4. 20. 중범죄인 '파산시 재산은닉'죄에 대하여 플리바게닝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법원은 징역 18개월, 3년의 감독조건부 석방,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몰수를 선고
- 벌금은 면제되었으나, 1,392,000$의 배상금액을 선고

Case 2:16-cr-01357-DGC Document 129 Filed 12/03/18 Page 1 of 5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RIZONA

United States of America

v.

Scott A. Maasen

AMENDED (to add restitution)
JUDGMENT IN A CRIMINAL CASE
(For Offenses Committed On or After November 1, 1987)

No. CR-16-01357-001-PHX-DGC

Kurt Altman (Retained)
Attorney for Defendant

USM#: 68905-408

THE DEFENDANT ENTERED A PLEA OF guilty on 4/20/2018 to Count 4 of the Superseding Indictment.

ACCORDINGLY, THE COURT HAS ADJUDICATED THAT THE DEFENDANT IS GUILTY OF THE FOLLOWING OFFENSE(S): violating Title 18, U.S.C. §152(1), Concealment of Assets in Bankruptcy, a Class D Felony offense, as charged in Count 4 of the Superseding Indictment.

IT IS THE JUDGMENT OF THIS COURT THAT the defendant is committed to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for a term of **EIGHTEEN (18) MONTHS**. Upon release from imprisonment, the defendant shall be placed on supervised release for a term of **THREE (3) YEARS.**

IT IS ORDERED that all remaining counts are dismissed on motion of the United States.

IT IS FURTHER ORDERED that defendant's interest in the following property shall be forfeited to the United States: All the lot or parcel of land, together with its buildings, appurtenances, Improvements, fixtures, attachments and easements, located at 19445 N. 101st St., Scottsdale, AZ 85255.

CRIMINAL MONETARY PENALTIES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Clerk the following total criminal monetary penalties:

SPECIAL ASSESSMENT: $100.00 **FINE:** WAIVED **RESTITUTION:** $1,392,000.00

The defendant shall pay a special assessment of $100.00.

The Court finds the defendan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pay a fine and orders the fine waived.

The defendant shall pay restitution to the following victim(s) in the following amount(s):
United State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n the amount of $1,392,000.00.

-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 : 피고인은 본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다음과 같은 의무적 & 표준 조건들을 이행해야 함. 특히 피고인은 감독기간 중 연방, 주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됨. 석방 후 72시간 이내에 피고인은 석방된 지역의 보호관찰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함
- 의무적 조건(Mandatory Conditions) : 피고인은 1) 연방, 주, 지역의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되고, 2) **마약물질을 소유해서는 안되고 (의사의 처방이 있는 마리화나도 마찬가지임)**, 3) **석방 후 15일 이내에 마약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함**
- 표준 조건(Standard Conditions) : 피고인은 1) 석방된 후 72시간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사무소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2) 법원으로부터 보고와 관련된 의무를 전달받게 될 것이고,

Case 2:16-cr-01357-DGC Document 129 Filed 12/03/18 Page 2 of 5

CR-16-01357-001-PHX-DGC
USA vs. Scott A. Maasen

Page 2 of 5

The defendant shall pay a total of $1,392,100.00 in criminal monetary penalties. Having assessed the defendant's ability to pay, payments of the total criminal monetary penalties are due as follows: Balance is due in equal monthly installments of $500.00 to commence 60 days after the release from imprisonment to a term of supervised release.

If incarcerated, payment of criminal monetary penalties are due during imprisonment at a rate of not less than $25 per quarter and payment shall be made through the Bureau of Prisons' Inmate Financial Responsibility Program. Criminal monetary payments shall be made to the Clerk of U.S. District Court, Attention: Finance, Suite 130, 401 West Washington Street, SPC 1, Phoenix, Arizona 85003-2118. Payments should be credited to the various monetary penalties imposed by the Court in the priority established under 18 U.S.C. § 3612(c). The total special assessment of $100.00 shall be paid pursuant to Title 18, United States Code, Section 3013 for Count 4 of the Superseding Indictment.

Any unpaid balance shall become a condition of supervision and shall be paid within 90 days prior to the expiration of supervision. Until all restitutions, fines, special assessments and costs are fully paid, the defendan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Clerk, U.S. District Court, of any change in name and address. The Court hereby waives the imposition of interest and penalties on any unpaid balances.

SUPERVISED RELEASE

It is ordered that while on supervised release, the defendant must comply with the mandatory and standard conditions of supervision as adopted by this court, in General Order 17-18, which incorporates the requirements of USSG §§ 5B1.3 and 5D1.2. Of particular importance, the defendant must not commit another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during the term of supervision. Within 72 hours of sentencing or release from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defendant must report in person to the Probation Office in the district to which the defendant is released. The defendant must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MANDATORY CONDITIONS

1) You must not commit another federal, state or local crime.
2) You must not unlawfully possess a controlled substance. The use or possession of marijuana, even with a physician's certification, is not permitted.
3) You must refrain from any unlawful use of a controlled substance. The use or possession of marijuana, even with a physician's certification, is not permitted. Unless suspended by the Court, you must submit to one drug test within 15 days of release from imprisonment and at least two periodic drug tests thereafter, as determined by the court.

STANDARD CONDITIONS

1)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 in the federal judicial district where you are authorized to reside within 72 hours of sentencing or your release from imprison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instructs you to report to a different probation office or within a different time frame.
2) After initially reporting to the probation office, you will receive instructions from the court or

피고인은 3)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관할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4)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야 하고**, 5) 보호관찰관이 승인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추가조건 有), 6) **보호관찰관이 아무 때나 피고인의 집 기타 장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고, 피고인이 조건에 위반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 보호관찰관은 언제든지 해당 물건을 가져갈 수 있고,** 7) 최소 주당 30시간 이상 합법적인 직장에서 일해야 하고, 풀타임 직업이 없을 경우 구직활동을 계속 해야 함 (기타 이직 관련 조건), 8)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과 교류해서는 안되고, 9) 경찰에 체포 또는 신문당할 경우, 보호관찰관에게 72시간 내에 통지해야 하고, 10) **총기, 화기, 무기 등을 소지해서는 안되고**, 11)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법집행기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해서는 안되고, 12)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 13) **감독 조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함**

Case 2:16-cr-01357-DGC Document 129 Filed 12/03/18 Page 3 of 5

CR-16-01357-001-PHX-DGC
USA vs. Scott A. Maasen

Page 3 of 5

the probation officer about how and when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r, and you must report to the probation officer as instructed.

3) You must not knowingly leave the federal judicial district where you are authorized to reside without first getting permission from the court or the probation officer.
4) You must answer truthfully the questions asked by your probation officer.
5) You must live at a place approved by the probation officer. If you plan to change where you live or anything about your living arrangements (such as the people you live with),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before the change. If notifying the probation officer in advance is not possible due to unanticipated circumstanc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of becoming aware of a change or expected change.
6) You must allow the probation officer to visit you at any time at your home or elsewhere, and you must permit the probation officer to take any items prohibited by the conditions of your supervision that he or she observes in plain view.
7) You must work full time (at least 30 hours per week) at a lawful type of employ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excuses you from doing so. If you do not have full-time employment you must try to find full-time employment, unless the probation officer excuses you from doing so. If you plan to change where you work or anything about your work (such as your position or your job responsibiliti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before the change. If notifying the probation officer at least 10 days in advance is not possible due to unanticipated circumstances,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of becoming aware of a change or expected change.
8) You must not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someone you know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If you know someone has been convicted of a felony, you must not knowingly communicate or interact with that person without first getting the permission of the probation officer.
9) If you are arrested or questioned by a law enforcement officer, you must notify the probation officer within 72 hours.
10) You must not own, possess, or have access to a firearm, ammunition, destructive device, or dangerous weapon (i.e., anything that was designed, or was modified for, the specific purpose of causing bodily injury or death to another person such as nunchakus or tasers).
11) You must not act or make any agreement with a law enforcement agency to act as a confidential human source or informant without first getting the permission of the court.
12) If the probation officer determines that you pose a risk to another person (including an organization), the probation officer may require you to notify the person about the risk and you must comply with that instruction. The probation officer may contact the person and confirm that you have notified the person about the risk.
13) You must follow the instructions of the probation officer related to the conditions of supervision.

특별한 조건 : 피고인은 1) **보호관찰관에게 모든 재정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은 재정적 정보를 연방검찰과 공유할 수 있고**, 2) **보호관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한 거래를 할 수 없고,** 3)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의해 DNA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4) 보상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 상태에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고지해야 함

법원은 이상 기술한 조건 하에 유죄 인정을 받아들이며, 피고인이 항소할 권리와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포기함을 확인함

법원은 집행유예 또는 감독조건부 석방에 부가된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고, 피고인이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존의 양형 조건을 취소할 수 있음

SPECIAL CONDITIONS

The following special conditions are in addition to the conditions of supervised release or supersede any related standard condition:

1) You must provide the probation officer with access to any requested financial information and authorize the release of any financial information. The probation office may share financial information with the U.S. Attorney's Office.
2) You are prohibited from making major purchases, incurring new financial obligations, or entering into any financial contracts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probation officer.
3) You must cooperate in the collection of DNA as directed by the probation officer.
4) You must notify the court of any material change in your economic circumstances that might affect your ability to pay restitution, fines or special assessments.

THE COURT FINDS that you have been sentenc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plea agreement and that you have waived your right to appeal and to collaterally attack this matter. The waiver has been knowingly and voluntarily made with a factual basis and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consequences of the waiver.

The Court may change the conditions of probation or supervised release or extend the term of supervision, if less than the authorized maximum,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or supervised release. The Court may issue a warrant and revoke the original or any subsequent sentence for a violation occurring during the period of probation or supervised release.

The Court orders commitment to the custody of the Bureau of Prisons.

The defendant shall self-surrender for service of sentence at the institution designated by the Bureau of Prisons or United States Marshal by 2:00 P.M. on January 11, 2019.

Date of Imposition of Sentence: **Tuesday, November 13, 2018**

Dated this 3rd day of December, 2018.

David G. Campbell
Senior United States District Judge

나. 부착장치 훼손 관련

미국에서도 전자감독 부착장치 훼손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경우,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원 명령에 따라 또는 플로리다 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착용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전자 모니터링 장치를 제거, 파괴, 변경, 조작, 손상"하는 행위는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3급 중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64]

반면 경미한 형량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65] 예를 들어 워싱턴 D.C. 지역에서는 전자감시 장치를 "의도적으로 장치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장치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가리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장치를 제거 또는 변경하도록 의도적으로 허용하거나 장치의 작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가리거나, 방해하려고 시도"하거나, "의도적으로 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않거나 장치의 배터리 충전 또는 전원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들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형량은 180일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이하의 벌금으로 플로리다 주에 비해서는 가벼운 것으로 확인된다.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등 법집행 강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전자감독은 집행유예, 감독조건부 석방, 조기석방된 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법원 또는 교정당국은 전자감독 등 다양한 보호관찰 조건을 부과하며, 위반시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대상자는 다시 구금상태로 복귀할 수 있다.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취소 비율은 각 주별로 상이하지만, 50% 중후반에 이르는 주도 있다고 한다.[66] 이는 미국 보호관찰

64) The 2021 Florida 843.23 Tampering with an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Statutes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800-0899/0843/Sections/0843.23.html

65) § 22-1211. Tampering with a detection device https://code.dccouncil.us/us/dc/council/code/sections/22-1211.html

관이 현장에서 제재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소 상이하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상당수는 이미 형집행이 종료된 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보호관찰이 취소되고 다시 구금상태로 돌아갈 여지는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부착법」의 형벌 규정이 대상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유일한 제재수단이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에서는 피부착자 등이 동법 제9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7] 또한 피부착자 등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68]

---

66)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집행유예의 취소 비율이 로드아일랜드 주는 61%, 조지아주는 55%에 이른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주로는 메사추세츠와 네브레스카가 있는데, 각각 19%, 8%라고 한다. 2018. 9. 25. Probation and Parole Systems Marked by High Stakes, Missed Opportunities,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8/09/probation-and-parole-systems-marked-by-high-stakes-missed-opportunities

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제재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구금 또는 형집행이 회복되는지, 새로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제재수단 모두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특히 이제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도입된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전자감독 관련 준수사항 및 보호관찰관의 권한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권한은 결국 구체적인 준수사항 조건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준수사항이 다양하고 구체적일 경우 보호관찰관은 보다 효과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다. 반면 준수사항이 제한적·추상적일 경우 현장에서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법집행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조되는 최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서 보호관찰관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준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연방지방법원의 서류를 살펴보면, 보호관찰관에게 상당한 재량 및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호관찰관은 '아무 때나 피고인의 집 기타 장소에 방문'할 수 있고, 만약 피고인이 '조건에 위반되는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육안으로 확인될 경우 보호관찰관은 언제든지 '해당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 외에도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위험성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고, 대상자는 감독 조건에 대하여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이처럼 구체적인 대상자의 의무와 보호관찰관의 권한은 우리나라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와 비교하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준수사항의 부과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보호관찰관의 권한 강화를 보다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① 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②항 및 ③항에서는 법원 등이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준수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상자의 '외출제한, 접근금지, 사용금지' 등의 위반행위 내용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위반행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일탈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현장에서의 판단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호관찰관들의 권한 강화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준수사항에서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상당한 수범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로도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준수사항) 제①항 제6호에서는 법원은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면, 대상자에게 보호관찰관에 대한 보다 강화된 협력의무 등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 및 한계점

성유리 · 최지선

제5장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 및 한계점

본 장에서는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변화한 운영사항과 점검해야할 이슈를 파악한 후, 각 쟁점에 대해 실무자가 갖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운영실태 간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절에서는 신속수사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신속수사팀의 업무가 기존 전자감독제도의 비효율적인 제재 방법을 개선하여 제재 효과를 상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신속수사팀 업무를 위해 지원되어야 할 자원을 파악하고, 정서적·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 필요한 인식 및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제2절에서는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원(팀장 포함)을 대상으로 신속수사팀의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제도안착을 위해 확보되어야할 자원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받았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전자감독 제재를 수행할 때 협조가 필요한 공조기관을 대상으로 특사경의 성공적인 제도안착을 위한 자문을 청취하였다.

제1절 | 신속수사팀장 대상 심층면담(FGI)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신속수사팀이 신설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하므로 실무가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신속수사팀

의 신설로 변화된 업무, 전자감독 전담직원과의 협업, 경찰과의 공조 과정을 확인하고, 신속수사팀과 전자감독 특사경의 한계점과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심층면담 개요

본 조사는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변화된 전자감독제도 업무 수행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탐색하여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신속수사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신속수사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실무가는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신속수사팀장으로 이들의 평균 보호관찰 업무 수행기간은 약 15년 3개월이었으며(183.5개월), 평균 전자감독 업무 수행기간은 약 4년 7개월(54.8개월)이었다. 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은 [표 5-1]에 제시하였다. 전체 신속수사팀장은 총 13명으로 한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각 면담 내용 역시 어떤 참여자가 언급하였는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표 5-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인적 특성

일련번호	참여자	연령	보호관찰담당기간	전자감독담당기간
1	팀장A	40대	10년 이상	2년
2	팀장B	40대	3년	2년
3	팀장C	40대	15년 이상	5년 이상
4	팀장D	40대	15년 이상	5년 이상
5	팀장E	40대	15년 이상	2년
6	팀장F	40대	15년 이상	3년 이상

심층면접 질문지는 법무부의 신속수사팀 출범 목표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침,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전자감독 수사의뢰 과정에서의 문제점, 자문회의를 통해 수집한 특사경 제도의 방향 및 한계점 등을 종합하여 구성하였다([표 5-2] 참조). 구체적은 조사항목은 ① 기본사항, ② 업무구조. ③ 수사과정, ④ 전담직원의 인식, ⑤ 타 기관과의 공조, ⑥ 기타 제안 사항이다. ② 업무구조에서는 현재 신속수사팀의 업무 수행내용과 체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③ 수사과정에서는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

의 수사의뢰 시 문제점들과 신속수사팀 출범이후 해당 문제가 사라졌는지 여부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였다.

[표 5-2] 심층면접 질문지 내용

일련번호	조사영역	세부항목
1	기본사항	• 전자감독 업무 경력
2	업무구조	• 현재 팀의 업무내용과 업무분장 • 고위험대상자 경보 처리과정 • 신속수사팀 근무 이후 전담직원으로 복귀할 경우의 이슈
3	수사과정	• 수사 및 수사의뢰건수 • (이전) 수사의뢰 저해 요소 • (이전 및 현재) 수사의뢰까지 위반횟수 • 엄정한 수사의 효과성
4	전담직원의 인식	• 현장에서의 전담직원 대응 • 전담직원의 인식 •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에 따른 전담직원의 변화
5	타 기관과의 공조	• 경찰과의 공조 수준 변화, 달라진 협조체계 • 즉시 출동의 문제(넓은 관할지역)
6	기타 제안 사항	• 신속수사팀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심층면담은 2021년 10월 20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신속수사팀장 6인을 3인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방역에 주의하며 면담을 진행하였고,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와 면접 과정에 대한 녹취 및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소요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지를 사용하였다.

2. 심층면담 주요 결과

먼저 가. 수사과정에서는 신속수사팀의 수사과정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변화된 수사의뢰에 대해 면담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나. 경보대응에서는 신속수사팀의 주 업무 중 하나인 경보대응 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를 살펴보았고, 다. 전담직원과의 협업에서는 전담직원과의 협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라. 공조에서는 경찰 공조과정에서 어려웠던 사항 및 현재 남아있는 공조 문제를 조사하였고, 마지막으로 마. 그 밖의 문제점에서는 특사경과 신속수

사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제시하였다.

가. 수사과정

신속수사팀 출범 이전에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한 내용이 축적되거나 심각한 수준의 위반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였던 것과 달리 현재는 위반사항 발생시 신속수사팀에게 수사를 의뢰하며 신속수사팀은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를 수행한다. 즉 전담직원이 수사의뢰를 하는 행위 자체는 변화가 없으나, 수사의뢰를 하는 대상이 경찰에서 신속수사팀으로 변경되었다.

1)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 수사의뢰 저해 요소

신속수사팀의 수사의뢰 적합성에 대해 면담하기에 앞서 그동안 전담직원의 수사의뢰를 저해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확인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신속수사팀장은 대상자 관리 방안, 경찰이 전자감독제도 전반을 이해해야하는 어려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등이 그간의 수사의뢰를 저해했다고 언급하였다.

전자감독제도가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이 거듭되면서 전자장치 최대 부착기간이 초기 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되었고, 성폭행 형기종료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평균 부착기간이 10.4년으로 보고되는 등(연성진 · 유진, 2015) 전자발찌의 부착기간이 장기화되었다. 오랜 시간동안 피부착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해야 하는 전담직원은 위험성이 크지 않은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전자감독 전담직원은 일반 보호관찰직원에 비해 고소나 소송을 당한 경험이 더 많고, 신체적인 폭행이나 욕설, 모욕, 협박을 수시로 당하는 등 다양한 피해경험을 보고하고 있는 사실(김지선 외, 2013; 연성진, 유진, 2015) 또한 전담직원의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보호관찰 하다보면 온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수사의뢰 하면은 예상되는 결과가 벌금인데 (벌금으로는 제재효과가 없고). 대상자가 상당히 잘못 행동하지 않는 한 웬만하면 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 대상자들을 관리하려면 매번 수사의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상자들을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전담직원이 말하는 것도 안 들어 줄뿐더러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에 직원들의 피로감도 쌓이거든요.

경찰의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수사의뢰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경찰이 처리하는 전체 사건 수에 비해 전자감독 준수사항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건의 빈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전자감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전자감독 관련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에게 다시 수사가 의뢰될 가능성은 극히 희소하다. 전담직원은 수사를 의뢰할 때마다 새로운 담당 경찰에게 전자감독제도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부터 위반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까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안게 된다.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일 자체를 직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어요. 한 건에 대해서 수사의뢰 할 수 있어?하는 생각이 있고, 또 경찰 중엔 '뭐 이런 걸 보내냐.' 이런 시각으로 대응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은 배당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경찰들도 통상적으로 하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훼손사건이 지능팀에 배당된 적도 있어요. 또 경찰도 (전자감독 업무를) 한 번 수사한 그 사람이 근무하는 동안 전자감독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뢰 할 때마다 (제도와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설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반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도 수사를 저해하는 요소였다고 언급하였다.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이해가 낮은 사람은 효용유지의무나 준수사항 위반 내용을 사사로운 위반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는 자정 이전에 반드시 귀가해야 한다. 해당 준수사항은 피부착자가 부착 이전에 야간 범행을 반복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가 야간에 귀가하지 않은 일은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중대한 위반사실이지만, 경찰은 단순히 10분 늦게 귀가를 반복하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위반의 위험성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는 벌금형과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준수사항 위반이) 사소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제한위반 10분이라면 경찰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경찰에 작업을 해서 넘길 정도면 확실한 결과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한 거죠. 경미한 처벌이 예상될 바에야 사건으로 고려하지 않는 편이었죠. 기존에는 외출제한 같은 경우에는 열 번 이상 위반했을 때 비로소 수사의뢰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쌓여야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최소한 벌금이 됐든 뭐라도 해줄 것 같으니까요.

2)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개선사항

수사의뢰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전자감독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의뢰에 대한 전담직원의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의뢰를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되고, 수사의뢰와 관련한 업무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에는 전담직원이 수사 자료를 모두 만들어서 경찰에 제공하였으며, 이 자료에는 경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설명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따른 제재 정도에 대한 자료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전담직원은 위반사실과 관련한 자료만 제공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인 수사 자료가 필요할 시 신속수사팀이 직접 CCTV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수사 의뢰를 위해 필요한 업무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는 우리가 수사 자료를 다 만들어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야했는데 지금은 우리(신속수사팀)가 받으면 (필요시) 자료요청하고, 충분히 서류를 다 받아서 처리해주니까 제재조치나 수사의뢰 입장에서 범죄예방팀은 굉장히 수월하고 더 편해진 거죠.

저희는 수사의뢰서가 한 장으로 왔어요. 경찰에 수사의뢰할 때에는 경찰이 기본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전담팀에서 이만큼(전자감독제도의 전반)을 써서 줬었죠. 그런데도 (경찰은 보낸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위치가 확인되고 전자발찌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인수 받아서 저희가 (위반사실을) 보니까, 아주 간결한 준수사항위반에 대한 사항만 써줘도 다 아니까 전보다 편해졌죠.

> 저희 팀은 경찰에 의뢰했던 수준이랑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다만 그 전에는 경찰에게 전체 자료를 줬고, 지금은 왜 수사를 의뢰하려는지 정도를 먼저 보내고 진술이나 기타 자료는 추후에 담당자가 보냅니다. 사건 내용은 메일로 받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월해진 거죠. 그 전에는 자료준비를 다 해서 한 번에 보냈어야 했는데, 이젠 추가 수사하면서 부족할 때 보강하면 되기 때문에 일선기관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죠.

더불어 과거에는 수사의뢰 건이 생길 때마다 경찰에 의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위반 사실이 축적된 후 의뢰하였기 때문에 위반으로부터 제재조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2020년 기준으로 경찰이 수사의뢰를 받아 송치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34일 이상으로 수사 자체에 소요되는 시간도 신속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단 한 건의 위반사실에도 즉각적으로 수사의뢰하게 되었으며 총 수사 기간을 2주 내로 권장하고 있는 만큼 제재조치의 즉시성이 보장되게 되었다.

> 범죄예방팀에서는 좀 더 편해진 거 같아요. 경찰에게 수사를 넘길 때는 한 건, 두 건 넘기기가 민망하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건건별로 (수사의뢰 하니까요). 외출제한위반 한 건도 수사의뢰합니다. 범죄예방팀도 부담 없이 우리에게 수사의뢰나 수사협조를 하니까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경찰은 송치까지 한 38일 걸렸다고 하던데 우리는 인지사건은 앞으로 2주일 안에는 끝낼 수 있을 거 같아요.

> 수사의뢰 하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소환조사 전화가 가니까 대상자 입장에서는 시간적 차이가 경찰하고는 다르죠. 상당이 짧아졌을 겁니다. 예전에는 한참 있다가 경찰에서 조사 나왔죠.

> 확실한 것은 이제 특사경 뿐만 아니라 신속수사팀도 발족했기 때문에 (매 건마다 의뢰하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부담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직원이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수사의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 직원들이나 지소 직원들이 편하게 의뢰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3) 수사 전반에 대한 우려

신속수사팀의 신설에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속수사팀의 업무에는

직권수사가 포함되어 있다. 직권수사는 피부착자의 위반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신속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하여 피부착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전담직원이 의뢰하지 않은 위반사실을 신속수사팀이 찾아내 수사할 경우에는 해당 피부착자의 담당 전담직원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담직원이 원활한 지도·감독을 위해 엄정하게 제재하지 않았던 위반사항을 신속수사팀이 직권으로 수사하게 될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 문제는 전담직원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직권으로 찾아내야하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맞닥뜨렸을 때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담직원이 조금은 우리 지침하고 어긋나지만 대상자를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줬던 일이 신속수사팀이 봤을 때에는 지침위반이고 준수사항 위반일 수 있으니까요. 수사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하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 직권수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건드리는 부분이 꽤 생길 거 같아요. 외출제한을 풀어주었으면 정당하게 풀어주었는가. 예를 들어, 외출제한을 풀어주지 않아야 될 사항인데 대상자가 거짓말을 해서 외출제한을 풀었습니다. 문제는 외출제한을 푼 사유가 현실성이 없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보여 출동해보니 외출제한을 풀어주었던 사유하곤 안 맞는 겁니다. 술을 마시고 있다거나 그렇게요. 담당직원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쪽에선 어떻게 기분이 들까?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해왔던 업무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위반여부)들을 다루다보면 분명히 전담직원과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상자하고도 크게 싸울 거 같고요. '담당자가 다해주었는데 네가 뭔데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느냐'. 이런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권수사는 전담직원이나 피부착자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는 신속수사팀에게도 부담인 업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담직원이 피부착자와 라포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이거나, 더 위험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여겨지는 위반사실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신속수사팀이 직권수사를 진행할 경우, 전담직원과 피부착자의 관계 및 지도·감독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신속수사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속수사팀도 전자감독 전담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으므로 현재의 범죄예방팀과도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고 있어 더욱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순환보직으로 다시 다른 업무 장면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이 묵과한 위반사실을 신속수사팀이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일 것으로 짐작된다.

> 직권수사 할 때 범죄예방팀에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대상자를 조정하고 있는 중 일수도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현장에서는 대상자와 유연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관리하기도 하는데 (직권수사가 시작되면) 충돌은 발생할 수 있겠죠.

> 결정적으로 '외출제한 허가해주면 안되고 경고 줬어야 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했느냐.' 하고 직원의 잘못을 끄집어 올려야하는 직권수사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저 팀에서 같이 한솥밥 먹다가 신속수사팀으로 온 것뿐인데, 저렇게 모질게 행동하기 쉽지 않죠. 영영 안 볼 것도 아니고 조금 있으면 다시 근무해서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신속수사팀은 수사기법이나 노하우가 부족한 면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직무상 수사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부가 실시한 특사경 직무교육은 총 세 차례로, 특사경 도입 이전에 전체 전담직원 중 19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한차례 실시하였으며, 전자감독 광역수사요원 6인을 대상으로 실무심화교육을 1박 2일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신속수사팀이 신설된 이후에는 다시 신속수사팀원을 대상으로 실무심화교육을 1박 2일 동안 1회 실시하였다. 새롭게 신설된 제도에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신속수사팀에게는 매우 부족한 교육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당장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신속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인 것은 확실하다. 광역수사요원이었던 신속수사팀장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경험이 배움에 도움이 크게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언급하였다.

> 저희가 보호관찰경력 십 몇 년씩 됐어도 같은 기간의 경력이 있는 경찰이 수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저희도 보호관찰 전문가인 것처럼, 경찰도 수사전문가기 때문에요. CCTV를 따고 블랙박스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입사해서 지금까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글로 공부해서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신속수사팀 이전에 광역수사요원 때는 교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았죠.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받았었거든요. 형식적으로 받은 게 있기는 한데 충실하게는 하지 못하였어요. 사실은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나. 경보 대응

다음으로 신속수사팀의 주 업무 중 하나인 경보대응에 대한 업무구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수사업무가 특사경의 도입으로 새롭게 부과된 업무라면, 경보 대응은 전자감독 제도의 주 업무이었다. 초기 전자감독 특사경은 새롭게 추가된 업무인 수사만을 담당하였지만 신속수사팀은 수사와 함께 훼손 경보 및 고위험자의 경보에 대응하는 업무가 추가되어 전담직원과의 협업이 더욱 중요해졌다.

1) 훼손 경보 발생 시 업무구조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에 훼손경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제센터가 해당 지역 범죄예방팀에 경보를 이관하고 경찰 112신고센터에 피부착자 검거 요청을 하였다(「전자장치부착법」 시행지침 제54조 제5항).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훼손경보 발생 시 관제센터는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 경찰에 경보를 이관하며, 경보를 이관 받은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업무 구조가 변경되었다.

훼손경보가 발생하면 기존에는 범죄예방팀하고 경찰하고 연결되는 체계였는데, 지금은 범죄예방팀, 경찰, 그리고 신속수사팀 세 개의 팀에 연락되는 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훼손이 발생한 현장에 범죄예방팀만 도착했을 경우, 범죄예방팀은 특사경의 권한으로 훼손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전담직원이 피의자 심문조서나 영장조사를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인치 후 신속수사팀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지소 담당 지역에서) 훼손하고 바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다면 범죄예방팀이 인치를 하고 그 사이에 신속수사팀이 신속하게 가서 현행범 인계인수를 받아 수사

> 를 하게 됩니다. 지소에 있는 특사경들은 체포 정도까지의 선이 있는 거고, 체포가 된 그 다음 단계는 신속수사팀이 합니다. 신속수사팀이 생기기 전에는 그 전에 있는 그 지소에 있는 직원들도 수사를 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권한을 부여했지만 지금은 저희가 지휘를 하고, 영장청구하고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고 하는 거죠. 통신수사든 뭐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만약 훼손범이 도주하여 수색이 필요한 경우, 훼손이 발생한 지역에 수사본부가 세워지게 된다. 이때 수사본부에는 지소의 사무관과 신속수사팀의 팀장 두 사람의 팀장체제로 상호 협력하여 도주범을 수색한다. 전담직원은 훼손 지역으로 이동하여 관계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훼손된 전자장치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신속수사팀은 도주범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통신수사 및 추적수사를 진행한다. 만약 7일 안에 도주범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소 측 팀은 해산하고 신속수사팀만 남아 추적수사를 지속한다.

> 신속수사팀 출범 이전에는 지소의 소장님이 수사본부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신속수사팀이 전부 그쪽(훼손 지역)으로 출동을 해 사무실이 꾸려집니다. 또 만일 7일 안에 체포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소 측 팀은 해산이 되고 신속수사팀이 추적수사를 하는 거죠.

2) 고위험대상자 경보 처리 업무구조

훼손의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중대한 행위이므로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준수사항 위반 경보는 그 내용이나 대상자의 성향에 따라 위반의 경중이 다르며, 의심경보를 포함하여 훼손에 비해 경보 자체도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출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수사팀이 광역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가 먼 곳에서 경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수사팀이 출동하는 동안 위반사건에 대한 범죄예방팀의 대응이 종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한 경보처리 업무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담하였다.

면담 이후 경보처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거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죄예방팀이 출동하여 신속수사팀의 지휘 하에 경보에 대응하도록 업무구조가 변화하였다. 단순한 오작동일 경우에는 범죄예방팀 차원에서 경보대응을 마무리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경보의 처리는 신속수사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과거에는 담당직원과 과장, 소장의 지시를 받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수사팀이라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 과장과 담당자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시하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죠.

> 사실 지침 상으로는 100% 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이 지소 지역까지 한 시간 반 걸려서 가다보면 이미 대상자는 자리 떠서 다른 곳에 이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case by case로 처리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유선 상으로 이동하면서 거기서 (범죄예방팀이) 상황 종료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죠.

> 우리가 신속수사팀으로써 하는 것은 그 경보의 진위여부도 보는 것이니까요. 지금 본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속수사팀이 그 경보를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입건할지 말지, 어떻게 조치할지.

신속수사팀은 특히 경보 대응 과정에서 전담직원, 특히 범죄예방팀과의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예방팀의 입장에서는 경보에 대응하는 과정에 신속수사팀에게 연락하고 업무 지시를 받는 새로운 과정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 현장에 거의 신속수사팀이 늦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항상 우리가 범죄예방팀에게 좀 지시하게 됩니다. 원래 구조상으로도 신속수사팀이 지휘하게 되어있지만, 항상 늦게 가면서 지시하는 건 전담직원한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괜히 시어머니처럼 간섭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걱정은 되죠.

다만 신속수사팀장과의 면담은 신속수사팀이 신설된 지 열흘이 된 시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속수사팀과 각 지소 간의 간담회 등 협의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전담직원과의 협업 구조는 유기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본 절에 기술한 훼손 및 경보 대응 업무구조는 신속수사팀 초기의 업무 형태로 이해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다. 전담직원과의 협업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와 신속수사팀의 신설은 전담직원의 수사의뢰 업무를 간소화시켰으나 직권수사나 경보 대응과 같이 기존 업무 중 새로운 절차 및 체제가 구축된 부분도 있어 전담직원의 업무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원은 곧 전자감독 특사경이므로 일정부분 신속수사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렇듯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있으나 그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협업 과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전담직원의 인식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협업은 전자감독 특사경 체제에서 매우 필수적이다.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전담직원이 신속수사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확인하고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이 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두 집단 간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속수사팀의 신설 초기에 이루어진 만큼 전담직원이 신속수사팀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초기 인식을 확인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먼저 신속수사팀장은 전담직원이 제재 조치가 수월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 신속수사팀의 수사업무에 긍정적이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피부착자가 제재조치 후 사회에 복귀한 상황은 모두 겪어보지 않았으므로 엄정한 제재조치가 지속된 이후 전담직원의 인식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 일단은 (출범) 2주차이기 때문에 속단할 순 없겠지만, 범죄예방팀에서는 '잘됐다. 제재조치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악역은 안 해도 되고 신속수사팀에 넘기면 되겠다는 인식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 전담직원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사의뢰를 하고 있지만 어디 부분까지 신속수사팀이 자료를 요구할 것인지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고), 실제 경보 발생해서 현장에 갔을 때, 신속수

> 사팀이 대상자를 흔들어 놓고 나왔을 때, 그 후 전담직원과 대상자와의 관계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직 발현된 건 아니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신속수사팀장은 전담직원이 수사의뢰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직권수사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 만족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하나는 우리가 수사지휘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니까 전담직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옥상옥 아니냐,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느냐. 약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지소, 각 팀원 중에 좀 있는 거 같구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 직권수사를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 (인식이) 명확하게 떨어지더라고요. 인지수사 쪽은 좋아해요. 그런데 직권수사를 들어가려고 했을 때나 경보가 발생했을 때, 같은 직원으로써 (지휘보다는 부탁)하는 건데 전담직원 입장에서는 우리를 통제한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본부에서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수사팀으로 기존 직원이 배치되면서 남은 전담직원의 업무량이 과도해지고 새로운 전담직원을 훈련시켜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응답도 있었다.

> 기본적으로 안 좋죠. 기본적으로 업무 할 수 있는 직원들을 차출하면 거기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트레이닝 해야 하니까요. 당장 그 소에서 두 명 빠지면 힘들고요. 수사가 엄청나게 많이 (지도·감독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면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는 과정 중에 또 실제 업무(경보 대응 등)를 하다보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너희들이 와서 좀 해줘라'하고 (업무) 전가도 발생할 수 있고. 신속수사팀이 뭔가를 요청해서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감정이 계속 쌓일 수도 있어요.

2) 협업의 어려움

일부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이 직권수사하거나 현장에서 경보에 대응할 때 수사를 지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 신설로

더욱 부족해진 전자감독 인력과 이로 인한 업무량 증가로 신속수사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쌓여 업무 전가로 표출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신속수사팀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역할 갈등과 감정적인 문제로 인한 전담직원의 부정적인 반응 또는 인식은 본부의 역할 조정을 통해 개선해야할 영역으로 사료된다.

신속수사팀이 토로하는 전담직원과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면담한 결과, 일선 직원이 본인의 업무를 신속수사팀에게 전가하는 일이 신속수사팀 신설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금 일선직원들은 약간 기본업무도 우리에게 전가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주측정을 하러 같이 출동했는데 신속수사팀에게 음주측정을 하라는 거죠. 음주 측정 확인하고 외출제한을 감독하고 귀가시키는 건 지도 감독의 영역이거든요. 위반에 대한 사법권이 제재의 영역인데. 이제는 나쁜 역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 (모든 경보 대응에) '수사팀이 해야 하는 업무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 신속수사팀은 출동한 직원들의 직급이 좀 낮고. 범죄예방팀에서 출동한 직원의 직급이 좀 높아서. 그런 상황에서 (업무 전가가 있는 것 같아요).

라. 공조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에도 유치장 입감 의뢰와 같이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이 남아있다. 신속수사팀장을 대상으로 경찰과의 변화된 공조수준과 여전히 필요한 공조 영역을 확인하였다.

먼저 전자감독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경찰의 공조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면담하였다. 여러 지역의 팀장은 강윤성 사건 이후 경찰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무엇보다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다고 느꼈다.

> 각 경찰서마다 강력팀에서 전화는 많이 오더라고요.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하려고.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강윤성 사건으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파악하고 좀 더 정보 수집을 하는 거 같아요. 일단은 경찰도 경각심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강윤성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서에서도 지시가 많이 내려와서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전자감독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잘 해줘라하는 지시가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강윤성 사건 이후로 공기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긴 같더라고요.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경찰이 조금씩 전화해서 명단도 물어보고 관심도 표했지만, 이번엔 좀 더 다른 것 같거든요. 저희도 경찰청에서 형사과장 주재로 형사과장들을 다 모은 자리에 저희 초청하기도 하고.

이전에는 훼손은 보호관찰관 일인데 우리(경찰)가 대신 잡아준다는 느낌이었는데 강윤성이 살해를 두 건이나 하면서 주가 살해고 부가 발찌(훼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찌 사건은 단순한 발찌 사건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발찌는 우리 사건. 훼손은 우리 사건. 약간 그런 식으로 회의를 주재하더라고요.

경찰의 인식 변화는 신속수사팀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사에 대한 사법권을 신속수사팀이 행사하므로 경찰의 공조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수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사노하우가 앞서가는 경찰의 공조가 절실하다. 특히 경찰의 공조가 필요한 영역은 CCTV 관련 권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CCTV가 없으므로 신속수사팀은 협조공문을 발부하거나 검찰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의 방범 및 교통 CCTV 영상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훼손에 대해서 소재추적은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신조회 한다고 해도 딱 그 장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반경 한 50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합니다. 여기서 또 cctv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노하우와 능력으로는 어렵고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소재추적은 경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훼손 사건인 경우 경찰이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신속하게 잘합니다. 10월 달만 훼손사

건이 두 건 있었는데, 형사들이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잡아주더라고요.

강윤성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을 넘어 이동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력 1팀이나 2팀을 지정을 해서 대상자가 어느 지역을 넘어가든 끝까지 남아서 cctv 협조해주기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밖에 경찰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부착자의 과도한 저항이 있는 경우가 지적되었다. 특히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피부착자는 경험적으로 주취상태일 경우가 많고, 주취상태에서의 반항은 때때로 위험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69]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야간외출제한 사항에서 대상자가 반항을 한다거나, 야간외출제한 위반인 경우 주취자가 많을 테니 난동을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이런다면 일단 (그 행위가) 경찰관에게는 공무집행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니 현행범 체포도 사실 경찰은 가능하니까요.

대상자 중에서는 진짜 위험한 유형도 있거든요. '죽인다'고 협박하는 대상자들도 있고. 그런 대상자들의 경보가 울리면 경찰도움이 필요하죠.

유치장 사용에도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 상으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의뢰를 한 경우에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다(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침, 제50조 제6항). 문제는 현재 보호관찰소에는 유치장과 같이 위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까지 유치가 필요한 경우 외에 도주 위험이 있는 현행범을 유치하는데 에도 유치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경찰의 협조로 구속영장 신청 없이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유치장 사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구속영장 처리할 대상자는 할 수 있죠. 입건지휘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현행범 체포 후에 석방할 대상자들은 안 해주려고 하죠.

---

69) 전자감독 특사경은 피부착자의 폭행 등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구속영장으로는 할 수도 있는데, 현행범체포는 안 됩니다. (부족한 인력으로) 대상자를 12시간~13시간 잡고 있기도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경찰 측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점이 (유치장 사용) 그런 겁니다.

마. 그 밖의 문제점

신속수사팀의 평가에는 양적·질적인 평가가 다방면으로 이뤄질 것이고, 양적 평가 기준 중 한 가지는 높은 확률로 수사건수일 것이다. 그러나 수사건수를 중점적으로 각 신속수사팀의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일 수 있다. 먼저 수사건수로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신설 초기의 신속수사팀원에게 과도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새로운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신속수사팀원은 새 업무에 적응하고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업무량이 과도할 것이다. 더욱이 팀장을 포함한 신속수사팀 전원은 4교대 24시간 체제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근무피로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적은 인원이 4교대 근무할 경우, 휴가를 쓸 수 없고 비상시에도 근무를 교대할 인력이 없어 신속수사팀의 피로는 빠르게 과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에 수사건수에 대한 실적압박이 더해진다면 신속수사팀에 대한 선호나 지원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전자감독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원호 등의 보호관찰을 통해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할 때마다 수사의뢰가 이뤄진다면 필연적으로 대상자의 재범기록은 증가할 것이고, 증가한 재범기록은 대상자의 재사회화를 훼방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건수가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보호관찰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국민 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신속수사팀이 활약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범죄경력을 하나 더 씌우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하고 우리가 굉장히 상반되는, 상충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오히려 신속수사팀이 생겨서 범죄경력이 한 줄 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수사의뢰 건수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재범률과 위반율은 높아진다. 제재이론을

적용했을 때에도 범죄건수를 덧씌우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수사팀이 신설된 이유는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피부착자의 위반 행위를 감소시키고, 범죄 기회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수의 신속수사팀장은 신설 초기에는 법무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과연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 사람에 대한 행동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된다는 것이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행동통제권을 가지고 강화를 해서 재범률이 완화가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건데. 대상자들이 만만하지가 않고 대상자들과 우리가 강 대 강으로 갔을 때 대상자들이 다른 방향으로 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만히 두었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해 반발하게 만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 초창기에는 상관없겠지만, 대상자가 워낙 법무부 식구가 된지 오래된 사람들이라. 내성이 생겼을 때 (세 번 수사의뢰 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법이라고 가정하면) '두 번 다 했으니까 엎어 보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풍선효과처럼 누르면 다른 문제가 튕겨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도 좀 됩니다.

또한 엄정한 대응을 하는 주체인 신속수사팀에 대한 피부착자의 반발과 이로 인한 신체적 위협도 걱정하였다.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에도 경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출동한 범죄예방팀에게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응답한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방어복만 있을 뿐, 삼단봉이나 테이저건과 같이 위협을 방위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 위험에 노출된 현재의 업무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 그렇게 강하게 가다보면 신속수사팀은 악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범죄예방팀이 밤에 맞고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신속수사팀이 더 강력하게 수갑 채우고 한다면 우리 팀이 안 다칠까? 그런 염려가 진짜 좀 많이 있습니다.

>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팀원들이 위험한 대상자를 상대하게 될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데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단봉을 휘두를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긴 하죠.

신속수사팀은 수사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충분한 훈련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으나, 이들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하는 등 업무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가지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부착자로부터 고소나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신속수사팀장은 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토로하였다.

>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 불법체포가 된다던지, 이런 게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험치가 축적되지도 않다보니까 절차에서 어떤 하자가 생길까 걱정이 됩니다. 모호한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데, 소송이 걸리거나, 불법체포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소송에 걸린다면 정말 부담스럽거든요.

> 모호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칼로 발찌 안을 긁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발찌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범죄예방팀에게) 전해 듣고 수사를 개시해야하는데, 검사에게 전화해도 검사는 부재중이고. (발찌를 칼로 긁은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대상자를 긴급체포 해야 되는데 ... 만약 이 상황에서 긴급체포를 했는데 나중에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의 징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제2절 |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설문조사

신속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신속수사팀의 신설이 기존에 억류되어있던 수사의뢰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반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각적인 제재조치는 처벌의 효과를 높여 궁극적으로 피부착자의 전자감독제도 순응도를 높이고, 위반행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실제 신속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신속수사팀원이나, 수사를 의뢰하고 고위험자의 경보를 함께 처리하는 전자감독 전담직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원은 신속수사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전

담직원 경력이 짧으며 자원하여 신속수사팀에 배치된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인식하는 신속수사팀의 업무와 부족한 점,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문제는 신속수사팀장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경우에는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수사 기법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지 않은 동료 전담직원이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업무의 질이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전자감독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제도와 신속수사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고자 한다.

1. 조사개요

가. 설문조사 문항 개발

신속수사팀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조사하고 신속수사팀의 역할을 정의하기 위해 먼저 신속수사팀장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신속수사팀의 현 실정을 확인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조사하여 객관식 문항을 추출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2021년 10월 20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추출한 사항은 [표 5-3]과 같다.

[표 5-3] 설문조사 개발을 위한 개방형 조사 내용

일련번호	설문조사 내용
1	①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 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역할, ③ 신속수사팀의 역할
2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하는 물적 자원(인적 자원 제외)
3	현재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에게 주어진 권한의 수준(자체 수사의 적정성) 및 필요 권한
4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의 협업체계
5	신속수사팀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혹은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6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업무로 인해 나타날 내부/외부, 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7	전자감독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자원, 제도, 체제, 인식 등)

나. 본 설문조사 설계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응답을 우선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소수의 의견은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확인한 뒤 문항에 적용하였다. 개방형 설문지로 신속수사팀장의 인식을 조사한 시점부터 설문조사가 이뤄진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데, 초기 도입된 제도인 만큼 단시간에 많은 사항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미 반영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이에 법무부 전자감독과와 업무협의회를 통해 신속수사팀 운영에 변경사항과 예정되어있는 운영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조사시점에 반영되지 않은 개선 필요사항이나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물적 자원 및 권한 등만을 정리하여 설문조사지를 완성하였다. 그 밖에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에 대한 전담직원의 인식은 실무가 및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과 신속수사팀에 대한 기사 등의 내용을 통합하여 주요 사항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한 설문조사 내용은 [표 5-4]와 같다.

[표 5-4] 설문조사 내용

일련 번호	설문조사 내용	신속 수사팀	전담 직원
1	신속수사팀 전반에 대한 인식	○	○
2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나타날 변화(수사 등)에 대한 인식		○
3	신속수사팀과 업무 경험여부와 각 경험의 만족도		○
4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하는 물적 자원	○	
5	현재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성에	○	
6	원활한 자체 수사를 위해 신속수사팀에게 필요한 권한	○	
7	신속수사팀-협조중심경찰서 협업체계에서 특정 내용의 필요성	○	
8	신속수사팀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혹은 상황)	○	
9	①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 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역할 ③ 신속수사팀의 역할	○	○
10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	○	
11	신속수사팀과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불만사항		○

본 설문조사는 신속수사팀장을 포함한 신속수사팀 전원(80명)[70]과 전자감독 전담직원 50명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조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법무부 전자감독과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 희망대상자 및 신속수사팀원의 메일주소를 전달받았고, 설문지를 각 개인에게 전송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응답을 마친 설문조사 결과를 메일 혹은 우편으로 회신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내용은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조사연구원이 숫자로 전환 및 코딩하였으며, 본 분석을 실시한 연구진에게는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신속수사팀 64명, 전담직원 50명이며, 신속수사팀 중 2명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62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확인하였다([표 5-5] 참조). 신속수사팀 62명 중 10명은 팀장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신속수사팀의 평균 연령이 42.42세(범위: 31~52세)로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평균 연령인 39.12세(범위: 27~49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의 보호관찰직 종사기간도 신속수사팀이 141.32개월(범위: 6~252개월), 전담직원이 102.52개월(범위: 8~240개월)로 신속수사팀의 종사기간이 전담직원보다 더 길었으나, 총 전자감독 담당기간은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각각 43.29개월(범위: 0~123개월)과 49.53개월(범위: 1~126개월)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범죄예방팀 근무경험의 경우, 본 조사의 전담직원은 모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속수사팀의 경우 56명(90.3%)은 경험이 있는 반면, 6명(9.7%)은 경험이 없었다. 본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의 대부분은 7급이었으며(신속수사팀 46.8%, 전담직원 42.0%), 신속수사팀은 8급에서 6급이 본 조사에 응답하였고, 전담직원은 9급부터 6급까지 보다 다양한 계급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70) 조사 시점의 전체 신속수사팀 인원임

[표 5-5]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M(SD))

구분		빈도(%)		평균(표준편차)		검증
		신속수사팀	전담직원	신속수사팀	전담직원	
성별	남성	62(100.0)	50(100.0)	-	-	-
연령	20대	-	3(6.0)	42.42 (5.6)	39.12 (6.32)	t=2.926**
	30대	23(37.1)	23(46.0)			
	40대	33(53.2)	24(48.0)			
	50대 이상	6(9.7)	-			
보호관찰직 종사기간	1년 이하	1(1.6)	3(6.0)	141.32 (67.24)	102.52 (65.35)	t=3.074**
	1년 이상-3년 미만	3(4.8)	8(16.0)			
	3년 이상-5년 미만	3(4.8)	5(10.0)			
	5년 이상-10년 미만	19(30.6)	15(30.0)			
	10년 이상-15년 미만	12(19.4)	11(22.0)			
	15년 이상	24(38.7)	8(16.0)			
총 전자감독 담당기간	1년 이하	9(14.5)	8(16.0)	43.29 (30.22)	49.58 (35.08)	t=-1.019
	1년 이상-3년 미만	17(27.4)	13(26.0)			
	3년 이상-5년 미만	17(27.4)	9(18.0)			
	5년 이상-10년 미만	17(27.4)	17(34.0)			
	10년 이상-15년 미만	2(3.2)	3(6.0)			
범죄예방팀 근무경험	경험있음	56(90.3)	50(100.0)	-	-	χ^2=5.113*
	경험없음	6(9.7)	-			
계급	6급	18(29.0)	7(14.0)	-	-	χ^2=13.018**
	7급	29(46.8)	21(42.0)			
	8급	15(24.2)	14(28.0)			
	9급	-	8(16.0)			

* 주1: 신속수사팀 2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인구사회학적 분석에서 제외함
** 주2: **p<.01, *p<.05

2. 결과분석

가. 신속수사팀 업무수행을 위한 자원 및 권한

먼저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하는 물적 자원이 무엇인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파악하였다. 필요한 물적 자원의 종류는 신속수사팀장 대상 개방형 설문조사 결과에서 추출하였다. 1순위로 선택된 물적 자원은 승용차 관용차량으로 응답자의 17.2%가 가장 먼저 필요한 자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필요한 자원은 승합차 관용차량(15.6%)으로 나타나 긴급출동을 위한 신속수사팀만의 고유 차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량 외에 수사를 위해 필요한 물적 자원은 유치공간(10.9%)과 CCTV 등 위치정보(10.9%)로 나타났다. 본 설문조사 기간은 신속수사팀의 업무체계가 잡혀가던 신설초기인 만큼 수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CCTV 등 위치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 종료 한 달 후, 기관사례 점검 시에는 본 조사에서 언급한 것보다는 위치정보 협조가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추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즉각적인 협조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여 현실적인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선택된 물적 자원은 숙식공간(17.2%)과 체포자 보호공간(14.1%)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숙식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더욱이 신속수사팀 신설 초기인 현재는 수사 및 경보 대응 업무에 비해 근무인원이 적어 체포영장 발부 등과 같은 시간제한이 있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비번인 직원까지 전 직원이 출근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듯 숙식공간에 대한 필요도는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행범을 체포하여 진술 조사할 경우에는 체포자를 구금할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체포자가 조사 전후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이로 인한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3순위로 뽑힌 물적 자원은 호신술 등을 위한 자기개발비(20.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용 휴대폰과 승용차 관용차량이 각각 15.6%로 높게 나타났다.

각 순위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기 위해 순위에 가중치를 곱해 신속수사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물적 자원을 확인하였다. 가중치 점수는 1순위에 300%를 곱하고, 2순위에는 200%, 3순위는 100%를 곱한 뒤 세 수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가중치를 고려하였을 때, 신속수사팀이 가장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물적 자원은 승용차 관용차량(51점, 1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승합차 관용차량과 체포자 보호공간이 각각 48점(12.5%)로 높았다. 사무공간의 가중치 점수가 35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신속수사팀만의 사무공간이 당연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급작스러운 출범으로 사무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6]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속수사팀의 요구하는 물적 자원의 각 빈도가 다양하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빈도와 가중치 점수를 가지는 특정 항목이 없는 점은 응답자 다수가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는 물적 자원이 부재함을 뜻할 수도 있고, 제시한 대부분의 항목이 모두 필요로 하거나 신속수사팀의 니즈(needs)가 다양하게 존재하다는 뜻일 수도 있다. 신속수사팀이 신설된 초기에 본 설문조사가 실시되었고, 신속수사팀의 출범이 신속하게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물적 자원 우선순위에서 각 순위의 빈도와 가중치점수가 고르게 분포한 결과는 신속수사팀에게 아래의 자원 대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6]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 하는 물적 자원 우선순위

(단위 : N(%))

물적자원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사무공간	9(14.1)	2(3.1)	4(6.3)	35(9.1)
샤워공간	1(1.6)	2(3.1)	-	7(1.8)
숙식공간	2(3.1)	11(17.2)	7(10.9)	35(9.1)
조사실	2(3.1)	3(4.7)	2(3.1)	14(3.6)
체포자 보호공간	8(12.5)	9(14.1)	6(9.4)	48(12.5)
유치공간	7(10.9)	6(9.4)	4(6.3)	37(9.6)
관용차량-승합차	10(15.6)	8(12.5)	2(3.1)	48(12.5)
관용차량-승용차	11(17.2)	4(6.3)	10(15.6)	51(13.3)
보호장구	1(1.6)	4(6.3)	4(6.3)	15(3.9)
업무용 핸드폰	1(1.6)	5(7.8)	10(15.6)	23(6)

물적자원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개인사물함	-	1(1.6)	-	2(0.5)
CCTV등 위치정보	7(10.9)	3(4.7)	1(1.6)	28(7.3)
호신술 등을 위한 자기개발비	5(7.8)	6(9.4)	13(20.3)	40(10.4)
기타	-	-	1(1.6)	1(0.3)
전체	64(100)	64(100)	64(100)	384(100)

현재 신속수사팀이 지닌 권한은 직접수사(압수수색,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영창, 통신수사, 공개수배), 임의수사, 직권수사 개시 권한 등이다. 1에서 7점 척도로 각 권한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신속수사팀은 대부분의 권한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식하였다. 평균 4점에 가까울수록 각 권한이 적정하다고 인식함을 나타내며, 1점에 가까울수록 각 권한이 부족하고, 7점에 가까울수록 각 권한이 과도하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표 5-7]에 각 권한에 대해 신속수사팀이 응답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설문에 응답한 신속수사팀은 대체로 신속수사팀이 각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8.1%의 팀원은 통신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통신수사의 경우, 전산망이 완성되지 않아 권한은 있으나 사용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통신수사 권한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현행범체포나 공개수배, 직권수사 개시 권한에 대해서는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팀원이 각 14.1%, 12.5%, 15.6%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은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감독 전담 직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인력이 배치되면서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과중해진 역할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직권수사의 경우에는 전담직원과의 마찰을 예상하기 때문에 해당 권한이 과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표 5-7] 권한의 적정성

(단위 : M(SD), N(%))

구 분	M(SD)	빈도		
		부족	적정	과도
압수수색	3.88(0.68)	9(14.1)	51(79.7)	4(6.3)

구 분	M(SD)	빈도		
		부족	적정	과도
긴급체포	4.00(0.64)	8(12.5)	50(78.1)	6(9.4)
현행범체포	4.14(0.64)	3(4.7)	52(81.3)	9(14.1)
체포영장	4.03(0.50)	5(7.8)	54(84.4)	5(7.8)
통신수사	3.66(0.96)	18(28.1)	43(67.2)	3(4.7)
공개수배	4.11(0.80)	5(7.8)	51(79.7)	8(12.5)
임의수사	4.08(0.60)	3(4.8)	55(87.3)	5(7.9)
직권수사 개시	4.16(0.78)	4(6.3)	50(78.1)	10(15.6)

다음으로 신속수사팀이 원활한 자체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권한은 업무의 재량이나 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권한이 무엇인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조사한 각 순위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 후, 순위에 따른 가중치점수를 산출하여 [표 5-8]에 제시하였다.

먼저 1순위로 필요한 권한 중 '현장출동 및 대상자 면담 등 수사과정에서 전담직원의 협조체계 정비'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권한은 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26.6%) 각 순위의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치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87점, 22.7%). 피부착자에 대한 제재가 전담직원의 업무로 분리되어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구분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전담직원이 피부착자에 대한 제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이 경보에 대응하여 출동할 경우 두 집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있지 않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모든 현장에는 각각의 특이점이 있으므로 지침으로 역할과 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만드는 일일 수 있으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업무 상충은 여러 경험적 사례가 쌓이고 신속수사팀의 업무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러나 훼손이나 야간외출금지 위반과 같이 잠재적인 위험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사업무가 안정화될 필요가 있기에 각 집단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가중치 점수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의 업무 분리(52점, 13.5%)'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중치 점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권한은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

절차 완화'로 나타났다(58점, 15.1%). 전자발찌 피부착자 대응시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 상황에서는 보호관찰관의 안전을 우선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피부착자와 그 관계자에게 신체적인 폭행이나 욕설, 모욕, 협박, 고소 및 소송 등의 피해를 경험한 전담직원이 꾸준히 존재하는 만큼(김지선 외, 2013; 연성진 · 유진, 2015) 피부착자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8] 원활한 자체 수사를 위해 신속수사팀에게 필요한 권한 우선순위

(단위 : N(%))

권 한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준수사항위반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7(10.9)	5(7.8)	6(9.4)	37(9.6)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 절차 완화	10(15.6)	11(17.2)	6(9.4)	58(15.1)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의 업무 분리	10(15.6)	7(10.9)	8(12.5)	52(13.5)
현장출동 및 대상자 면담 등 수사과정에 전담직원의 협조체계 정비	15(23.4)	17(26.6)	8(12.5)	87(22.7)
6급체제에서 5급이상 상향	10(15.6)	6(9.4)	7(10.9)	49(12.8)
준수사항 추가, 변경 요청	4(6.3)	7(10.9)	16(25)	42(10.9)
잘못된 지도감독 적의조치	6(9.4)	8(12.5)	8(12.5)	42(10.9)
지도감독 불응자 경고조치	2(3.1)	3(4.7)	5(7.8)	17(4.4)
전체	64(100)	64(100)	64(100)	384(100)

나. 신속수사팀 운영 상 예상되는 문제

다음으로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신속수사팀 출범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혹은 상황)을 조사하였다. 신속수사팀 운영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신속수사팀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신속수사팀의 대상자 대응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범죄예방팀과의 협업이나 경찰 · 검찰 공조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구분되었다. 각 영역별로 다시 예상되는 문제를 구분하여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각 문제들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의 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다([표 5-9] 참조).

먼저 신속수사팀 내 예상문제 중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항 1순위는 '신속수사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이 해당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속수사팀의 근무평가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사건수로 각 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건수로 근무성과를 평가하게 될 경우, 기관 간의 수사 의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며, 수사의뢰할 정도의 위반사실이 없거나 위반의 위험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신속수사팀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본부에서 무리한 수의 수사실적을 요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부는 단순한 수사건수 외의 다른 평가기준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71]

신속수사팀이 2순위로 선택한 문제 중 가장 높은 빈도는 수사 노하우 부족으로 나타났다(41.3%). 보호관찰관 채용에는 수사 관련 교과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관련 전공자를 우대하는 기준도 없다. 자연스럽게 현재의 신속수사팀원은 사전에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수사 경험도 없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은 단편적이며 이마저도 코로나로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수사 노하우 부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3순위로는 낮은 인사가점으로 인한 사기저하(29.0%)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중치 점수로 신속수사팀의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려사항은 신속수사팀 유지 및 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118점, 31.1%)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수사 노하우 부족(92점, 24.2%), 무리한 교대근무 시스템(63점, 16.6%)으로 나타났다.

[표 5-9]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신속수사팀 내 문제

(단위 : N(%))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신속수사팀 유지/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	32(50.0)	9(14.3)	4(6.5)	118(31.1)
수사 노하우 부족	10(15.6)	26(41.3)	10(16.1)	92(24.2)
개인의 역량/관점 차이로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조치 가능성	6(9.4)	10(15.9)	14(22.6)	52(13.7)

71) 구체적인 평가 방안과 예시는 제6장 제1절 시사점 및 제언에 제시하였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무리한 교대근무 시스템	12(18.8)	9(14.3)	9(14.5)	63(16.6)
불필요한 결재라인 (과장, 기관장 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 지연)	1(1.6)	4(6.3)	7(11.3)	18(4.7)
낮은 인사가점으로 인한 사기저하	3(4.7)	5(7.9)	18(29.0)	37(9.7)
전체	64(100)	63(100)	62(100)	380(100)

*주: 1순위만 응답한 대상자 1인, 2순위까지만 응답한 대상자 2인 있음

다음으로 대상자 대응 시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 중 신속수사팀이 1순위로 꼽은 사항은 '현장에서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항거할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45.3%로 나타났다. 김지선 외(2013) 연구에서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대상자와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전담직원의 36.6%가 대상자로 인한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신속수사팀의 업무는 업무 특성상 전자발찌 피부착자 대상자로부터의 물리적인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우려가 수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대상자의 물리적인 항거로 인한 위험 노출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2순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31.7%).

3순위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문제는 잦은 출동과 야간 운전 등 야간 근무 직원의 위험 노출로 나타났다(27.4%). 해당 사항은 1순위(26.6%)와 2순위(27.0%)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현재 지침은 모든 대상자의 훼손경보와 고위험자의 모든 경보에 신속수사팀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보가 저녁 18시에서 오전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연성진 · 유진, 2015) 야간 근무 시 피로감은 주간 근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현재의 신속수사팀은 1인 혹은 2인이 상시 근무하는 만큼, 경보 발생 시 근무 중인 직원이 모두 출동해야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야간에 발생하는 경보에 출동할 시 나타날 물리적인 피로감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이다.

각 순위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가중치 점수를 살펴보면, 현장 대응 시 피부착자의 물리적인 항거에 대한 위험노출이 137점(36.1%)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근무 직원의 위험 노출이 102점(26.8%),

유치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 후 난동자 제어의 위협이 96점(25.3%)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 신속수사팀 사무실에는 유치장이나 체포자 보호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실 유무나 구비된 수준도 각 보호관찰소마다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전자감독 특사경 신설 이전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수사의뢰 대상자나 훼손 및 동종범죄자의 9.3%가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준수사항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72] 신속수사팀이 대응하게 될 피부착자 열 명 중 약 한 명이 알코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을 예상할 수 있다. 유치장이나 체포자를 구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현 물리적 체계에서는 주취 후 난동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침상으로는 특사경이 경찰의 유치장을 공유할 수 있지만, 이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특별사법경찰(산림, 해사, 세무, 전매, 군 수사기관, 기타 사항) 중 전자감독 특사경이 포함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치를 허가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환경특별사법경찰제도는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 상 필요할 시 체포한 피의자를 근접한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임시 유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환경부 환경감시팀, 2014~2015). 그러나 전자감독 특사경은 이러한 가능성이 지침 상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에 유치장 사용 용이성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5-10]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대상자 대응 시 문제

(단위 : N(%))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잦은 출동과 야간 운전 등 야간 근무직원의 위험 노출	17(26.6)	17(27.0)	17(27.4)	102(26.8)
현장서 물리적으로 항거할 경우 위험 노출	29(45.3)	20(31.7)	10(16.1)	137(36.1)
유치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 후 난동자 제어의 위험	16(25)	16(25.4)	16(25.8)	96(25.3)
추후 대상자의 보복가능성	-	3(4.8)	6(9.7)	12(3.2)

72) 제3장 제1절에서 서면경고와 준수사항 위반, 훼손 및 재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준수사항 위반이나 재범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에 해당하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총 302명 자료를 대상으로 재분석하였다([표3-2] 참조). 위반자 302명이 부여받은 특별준수사항의 종류는 총 16가지로 이 중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위반자의 비율이 9.3%로 가장 높다.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엄정 대응으로 인한 대상자의 반항행동 증가	1(1.6)	7(11.1)	11(17.7)	28(7.4)
엄정 대응으로 인한 대상자의 위반율/재범율 증가	1(1.6)	-	2(3.2)	5(1.3)
전체	64(100)	63(100)	62(100)	380(100)

* 주: 1순위만 응답한 대상자 1인, 2순위까지만 응답한 대상자 2인 있음

신속수사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범죄예방팀과의 협업과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상황에서의 갈등이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 사항에서 우선적인 해결이 필요한 주요 문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표 5-11] 참조), 1순위로는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한 전담직원과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53.1%). 해당 사항은 2순위에서도 가장 높은 빈도로 선택을 받았으며(31.3%) 가중치 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145점, 37.9%). 신속수사팀은 직권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전담직원의 입장에서는 의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신속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일이 자신의 업무를 월권한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원활한 대상자 관리·감독을 위해 경고 등으로 처리한 사안을 신속수사팀이 들추어 수사할 경우에 대상자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신속수사팀 역시 전담직원으로 대상자를 관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에 대한 전담직원의 반발 및 갈등을 더욱 걱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중치 점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항은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간의 업무 지휘권/협조 문제(95점, 24.8%)'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1순위와 2순위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선택되었다(1순위: 26.6%, 2순위: 25.0%). 신속수사팀의 우려는 경보 대응 시 범죄예방팀과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은 일부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속수사팀장과의 면담에서 신속수사팀 신설 초기에 업무 구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역할 갈등으로 인해 전담직원과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업무 역할이 모호한 현재의 체제에서는 전담직원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3순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사항은 전담직원이 불편한 업무를 신속수사팀에게 전가할 것에 대한 우려이다(25.4%). 이러한 우려는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의 업무 및 역할이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음에서 초래한다.

[표 5-11] 해결해야 하는 사항 우선순위: 팀 외/전담직원과의 문제

(단위 : N(%))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점수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간의 업무 지휘권/협조 문제	17(26.6)	16(25.0)	12(19)	95(24.8)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한 전담직원과의 갈등	34(53.1)	20(31.3)	3(4.8)	145(37.9)
전담직원이 불편한 업무를 신속수사팀에게 전가	7(10.9)	7(10.9)	16(25.4)	51(13.3)
전담직원과의 갈등기피를 위해 소극적 입건판단 가능성	1(1.6)	6(9.4)	9(14.3)	24(6.3)
경찰의 미온적 협조	2(3.1)	5(7.8)	5(7.9)	21(5.5)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가능성	3(4.7)	10(15.6)	18(28.6)	47(12.3)
전체	64(100)	64(100)	63(100)	383(100)

* 주: 2순위까지만 응답한 대상자 1인 있음

다. 전담직원의 인식

신속수사팀이 우려하는 전담직원과의 마찰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담직원 50명 중 신속수사팀에게 수사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직원은 총 12명이었다. [표 5-12]는 신속수사팀에게 수사의뢰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구분하여 수사의뢰의 즉각성이나 전체 수사의뢰 기간의 단축, 제재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 감소 등 수사의뢰로 인해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전담직원의 업무 변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수사의뢰 경험집단이 소수이므로 정규성이 가정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7점 척도(1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매우 동의한다)를 사용하였으므로 4점에 가까울수록 보통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신속수사팀 수사의뢰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은 경험이 없는 전담직원보다 수사의뢰가 더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인식하였고, 수사의뢰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은 제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긍정적인 면은 신속수사팀을 경험하지 않은 전담직원도 수사의뢰의 즉각성이나(평균 5.47), 전체 수사의뢰 기간의 단축(평균 5.45), 제재 관련 업무 부담 감소(평균 4.97)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그 밖에 신속수사팀 수사의뢰 경험집단과 비경험집단 간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수사의뢰 서류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본 설문에 응답한 모든 전담직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수사의뢰 서류는 경찰에 의뢰할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경찰 의뢰 시에는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서류나 설명자료(예를 들어,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나 지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설명 등)가 필요했으나 신속수사팀에게는 부수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자를 지도·감독한 내용을 신속수사팀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항에는 전체 전담직원이 모두 동의하지 않아, 전담직원의 자신의 업무내용을 들추길 싫어할 것이라는 신속수사팀의 우려가 실제 전담직원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불균형한 우수인력의 배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동의를 보고하며 이에 대한 염려가 나타났고,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 간의 마찰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인식을 보이며 신속수사팀의 우려에 대해 전담직원들도 인식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전반적인 전담직원 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인식에도 약간의 동의가 나타나 업무부담 감소의 측면에서 신속수사팀의 업무에 대해 조금은 기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표 5-12]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M(SD))

구 분	신속수사팀 수사의뢰 경험여부	M(SD)	평균 순위	순위합	U
수사의뢰 서류가 간소화될 것이다	있다	3.75(2.45)	26.08	313	221.00
	없다	3.61(1.67)	25.32	962	
수사의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있다	6.00(1.54)	33.13	397.5	136.50*
	없다	5.47(0.89)	23.09	877.5	
수사의뢰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있다	6.17(1.19)	32.50	390	144.00*
	없다	5.45(1.18)	23.29	885	
제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있다	6.00(1.21)	33.08	397	137.00*
	없다	4.97(1.55)	23.11	878	
대상자를 지도 · 감독한 내용을 신속수사팀과 공유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있다	3.58(2.07)	28.96	347.5	186.50
	없다	2.89(1.61)	24.41	927.5	
우수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해질 것이다	있다	4.67(1.67)	26.92	323	211.00
	없다	4.50(1.41)	25.05	952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 간의 마찰(갈등)이 있을 것이다	있다	4.00(1.60)	19.46	233.5	155.50
	없다	4.79(1.38)	27.41	1041.5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전반적인 전자감독 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다	있다	4.83(1.64)	31.38	376.5	157.50
	없다	4.08(1.44)	23.64	898.5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협업은 수사의뢰 뿐만 아니라,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 고위험자의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한 대응, 전제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경보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장면에서 나타난다. [표 5-13]은 신속수사팀과 특정 업무를 협업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각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앞서 신속수사팀 수사의뢰 경험을 확인한 문항에서 경험 없다고 응답한 전담직원 중 6명이 본 문항에서 신속수사팀 수사의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먼저 신속수사팀에게 수사의뢰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은 수사의뢰 경험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평균 5.22).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를 경험한 전담직원은 9명(18.0%)이었고, 이들은 신속수사팀의 직권수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89). 현재 신속수사팀은 고위험자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 경보에 신속수사팀과 함께 대응한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

은 23명(46.0%)이었으며, 이들은 보통 이상으로 신속수사팀 업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91). 마지막으로 신속수사팀과 전자발찌 훼손 경보에 대한 대응 경험이 있는 전담직원은 8명(16.0%)이었으며, 그들의 경험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평균 4.63). 경험의 만족도만 보았을 때, 수사의뢰에 대한 경험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신속수사팀과 업무 경험여부 및 경험의 만족도

(단위 : N(%), M(SD))

구 분	경험자 빈도	경험 만족도
수사의뢰	18(36.0)	5.22(1.52)
신속수사팀 직권수사	9(18.0)	4.89(1.83)
준수사항 위반 경보 대응	23(46.0)	4.91(1.80)
전자발찌 훼손 경보 대응	8(16.0)	4.63(2.26)

신속수사팀과의 협업을 경험한 전담직원 중 만족도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부족한 수사역량이나,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급자에게 전화하여 지시받는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신속수사팀의 제재 업무 및 수사 이후 대상자의 지도감독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한 전담직원도 있었다. 시작 단계에서 전담직원과의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업무숙련에 집중할 것을 권유하거나, 경험부족으로 업무처리가 미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타났다.

종합하면 신속수사팀의 미숙한 업무처리 및 수사역량으로 인해 낮은 만족감을 표현한 전담직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신설 초기임을 감안하여 특사경 제도가 안정되면 현재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라. 전반적인 인식 및 역할

다음으로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표 5-14] 참조). 조사에는 7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 7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먼저 '신속수사팀의 업무수행으로 수사(엄벌)영역이 분리되면 전담직원의 대상자 지도·감독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모두 보통 이상으로 동의하였으며, 신속수사팀(평균 5.64)이 전담직원(평균 4.7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동의를 나타냈다.

그 외의 다른 문항에서는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간의 유의한 인식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모두 보통 이상으로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인한 현재의 문제는 신속수사팀 업무가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위반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대응이 강력범죄 재범이나 훼손사건 발생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들은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한 기대효과에 동의를 표하였지만, 신속수사팀에 대한 우려 및 부정적인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위반 경보가 발생할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팀이 신설되어 2021년 현재에는 56개의 범죄예방팀이 운영되고 있으나, 관할 지역이 넓은 지소의 경우에는 여전히 모든 경보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73] 이러한 문제는 광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신속수사팀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속수사팀은 현재 모든 훼손 경보와 고위험군의 경보에 즉각 출동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보에 상시 근무인원 1인 혹은 2인의 신속수사팀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에 응답한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신설로도 즉각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경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이 협력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출동에 대한 문제가 상쇄되고, 신속수사팀의 권한으로 통제되지 않는 피부착자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 현장 대응이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한

73) 법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인근 범죄예방팀(청주, 대전, 포항/경주, 대구, 진주)이 영동, 영덕, 거창 지소를 야간·휴일에 지원하고 있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신속수사팀 출범 이후, 음주제한 및 음주측정에 따라야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피부착자가 유흥지역에 체류하고 있다는 생활패턴 이탈 관제정보가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에게 이관되어 출동한 사례가 있었다. 피부착자는 현장출동한 직원을 피해 집으로 도주한 뒤 면담을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신속수사팀과 범죄예방팀의 제재 및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피부착자가 소환에도 불응하고 위반사실도 전면 부인하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자 신속수사팀은 음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점의 CCTV 영상 및 참고인 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상자를 구속시켰다.[74]

신속수사팀의 엄정 대응이 장기화된다면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모두 해당 우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속수사팀 평균 2.55, 전담직원 평균 3.32). 그 밖에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전담직원으로의 업무 등에 소외감을 느낀다거나(평균 2.86) 신제도에 대한 불신감을 경험한다는 내용(평균 3.48)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표 5-14] 직무별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인식

(단위 : M(SD))

구 분	신속수사팀 (n=64)	전담직원 (n=50)	검증
나는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14(1.27)	4.98(1.45)	t=0.629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인한 현재의 문제는 신속수사팀 업무가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5.02(1.58)	5.04(1.32)	t=-0.088
신속수사팀 신설로도 즉각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3.53(1.51)	3.96(1.58)	t=-1.474
수사(엄벌)영역이 분리되어 대상자 지도감독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5.64(1.17)	4.78(1.42)	t=3.463**
위반에 대한 즉각 대응은 강력범죄 재범 및 훼손사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5.73(1.10)	5.50(1.13)	t=1.115
신속수사팀의 엄정 대응은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이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한다	2.55(1.15)	3.32(1.48)	t=-3.139
신속수사팀 신설로 업무 등에 소외감을 느낀다	-	2.86(1.67)	-
신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	-	3.48(1.69)	-

74) '명령 어기고 음주'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전과자 재구속, KBS, 2021.11.0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093(검색일자: 2021.12.28.)

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제 중 한 가지는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업무 분배이다. 두 직군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각 직군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각 직군이 인식하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특사경, 신속수사팀의 역할을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피부착자 사회복귀, 재범예방, 전자장치 관리,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 등과 같은 각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이 전자감독 전담직원, 특사경, 신속수사팀 중 누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중복응답이 가능하였다([표 5-15] 참조).

먼저 주거지원이나 취업알선과 같은 원호를 지원하고 멘토/조력자 역할로 피부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는 역할은 신속수사팀(100.0%)과 전담직원(100.0%) 모두 전담직원의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피부착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생활사실을 확인하거나 행동 교정을 조력하는 역할도 신속수사팀의 98.4%와 전담직원의 98.0%가 전담직원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전자장치 관리 업무나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역할 역시 전담직원의 역할이라고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 만의 역할이라고 응답한 업무는 체포/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로 나타났다(신속수사팀: 96.8%, 전담직원: 98.0%).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장치 훼손 시 즉각적인 대응이나 신속 수사, 그리고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과의 공조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수사팀과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업무에 대해서는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모두 전담직원과 특사경, 신속수사팀 모두의 업무라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몇 가지 업무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역할의 주체가 구분되었으나,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인식이 불일치하는 영역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위험자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등 상시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 전담직원은 전담직원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면서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고 인식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통제를 벗어난 피부착자의 일탈·위험행위에 대한 대응과 같이 전담직원의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은 신속수사팀의 역할이라 인식하

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특사경의 역할이라고 인식하였다.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인식이 불일치하는 두 업무는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업무의 주체가 모호해진 영역으로 나타난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초기의 특사경 요원은 전담직원이 의뢰한 수사를 실시하는 비교적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전자감독제도의 약 1/4에 해당하는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이와 비례하는 업무가 할당되었다. 갑작스럽게 신설된 신속수사팀은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체를 특사경으로 지정하여 유사시에 특사경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법률화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모두가 특사경이 되면서, 과연 특사경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누가 언제 특사경이 되는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있다. 전담직원은 곧 특사경이며, 신속수사팀은 곧 특사경이다. 하지만 전담직원 모두가 신속수사팀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명제는 많은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역할의 혼돈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의 의견이 상이한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각 업무의 실제적인 역할 주체를 구분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표 5-15] 직무별 전담직원, 특사경, 신속수사팀의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N(%))

구 분	업무	전담직원의 역할	특사경의 역할	신속수사팀의 역할
피부착자 사회복귀 : 원호(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지원, 멘토/조력자 역할	신속수사팀	64(100.0)	7(12.1)	0(0.0)
	전담직원	50(100.0)	1(2.4)	0(0.0)
피부착자 재범 예방 : 생활 사실확인, 성행 교정 조력 (행동교정)	신속수사팀	63(98.4)	19(32.8)	9(14.3)
	전담직원	49(98.0)	12(28.6)	11(22.4)
전자장치 관리	신속수사팀	63(98.4)	9(15.5)	0(0.0)
	전담직원	50(100.0)	1(2.4)	1(2.0)
지도 · 감독: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신속수사팀	63(98.4)	20(34.5)	5(7.9)
	전담직원	50(100.0)	11(26.2)	6(12.2)
준수사항 위반, 장치 훼손시 즉각대응/신속수사	신속수사팀	21(32.8)	48(82.8)	61(96.8)
	전담직원	21(42.0)	34(81.0)	49(100.0)
고위험자 정보 수집, 사실 유무 확인 등 상시관리	신속수사팀	29(45.3)	51(87.9)	49(77.8)
	전담직원	42(84.0)	28(66.7)	36(73.5)

구 분	업무	전담직원의 역할	특사경의 역할	신속수사팀의 역할
전담직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적 개입: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통제를 벗어난 일탈 · 위험행위에 대한 대응	신속수사팀	25(39.1)	47(81.0)	37(58.7)
	전담직원	22(44.0)	29(69.0)	38(77.6)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	신속수사팀	44(68.8)	50(86.2)	56(88.9)
	전담직원	44(88.0)	32(76.2)	46(93.9)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 공조 업무	신속수사팀	28(43.8)	48(82.8)	59(93.7)
	전담직원	30(60.0)	33(78.6)	46(93.9)
체포/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	신속수사팀	4(6.3)	32(55.2)	61(96.8)
	전담직원	4(8.0)	28(66.7)	48(98.0)
전체	신속수사팀	64(100.0)	58(100.0)	63(100.0)
	전담직원	50(100.0)	42(100.0)	49(100.0)

* 주1: 응답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다중응답분석결과임
* 주2: 특사경의 역할에 대해 신속수사팀 6인과 전담직원 8인이, 신속수사팀의 역할에 대해 신속수사팀 1인과 전담직원 1인이 응답하지 않아 제외하고 분석함

마. 개선방안

1) 분석방법: IPGA

마지막으로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체계 및 시설을 확보하고, 신속수사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개선필요사항 중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하여 중요도-실행정도 차이 분석(Important-Performance Gap Analysis: IPGA)을 실시하였다.

IPGA는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t-Performance Analysis: IPA)에서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분석법이다. 먼저 IPA는 사업의 실행정도나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상품, 서비스, 정책 등의 중요도(important)와 실행정도(performance)를 측정하여 시각적으로 개선점이나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Martille, James, 1977). IPA는 중요도(Y축)와 실행정도(X축)의 중앙값을 중점으로 가지는 매트릭스 상에서 각 항목의 중요도-실행정도 좌표가 매트릭스 중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에 대한 정보로 응답자의 욕구나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비교적 유사한 사항들을 초기 IPA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

할 경우, 결과의 대부분이 한 개의 사분면에 모여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Rial, Rial, Varela, & Real, 2008). 이에 기존의 IPA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는 여러 기법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 IPGA는 다수의 항목이 동일 매트릭스 면에 위치하더라도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주요한 순위를 도출할 수 있어 유용하다(Cheng, Chen, Hsu, & Hu, 2012; Feng, Mangan, Wong, & Lalwani, 2014; Lin, Chan, & Tsai, 2009). IPGA는 IPA와 동일하게 매트릭스 사분면을 해석하며, IPGA 매트릭스의 중점은 (0, 1) 교차축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Lin et al., 2009).

매트릭스의 제Ⅰ사분면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모두 높은 항목이 위치하게 된다. 해당 영역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과나 실행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사회적, 실무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항목이 위치하며 실행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야할 항목으로 해석한다. 제Ⅱ사분면은 중점개선영역으로 상대적 중요도는 높으나 상대적인 실행정도는 낮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이 위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한 항목 중 중점(0, 1)과의 거리가 가장 먼 항목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정한다. 중점에 가까워질수록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한 항목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책안 및 실행안을 개발하여 유지강화 영역으로의 이동을 모색해야한다. 제Ⅲ사분면은 점진개선영역으로 상대적인 중요도와 실행정도가 모두 낮은 항목이 위치한다. 실행정도가 낮은 만큼 상대적인 중요도도 낮으므로 현재 집중해야할 항목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사분면은 지속유지 영역으로 상대적인 중요도는 낮으나 실행정도는 높은 항목이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유지강화 영역에 위치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정도가 낮아져 지속유지 영역으로 이동한다.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의 경우 현재의 실행정도를 지속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다.

IPGA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Tsai, Lin, & Chan, 2011): 먼저 중요도와 실행정도 값으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값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한다. 중요도와 실행정도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제Ⅱ사분면에 위치하더라도 그 거리를 해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평가한 값을

[그림 5-1] IPGA 매트릭스 사분면의 의미

사용하여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RI)와 상대적 실행정도(Relative Performance: RP)를 계산한다. 상대적 중요도는 중요도 j의 평균을 전체 혹은 각 영역의 중요도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상대적 실행정도는 세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 계산하는데, j의 실행도 평균이 j의 중요도 평균보다 클 경우, j의 실행도 평균을 전체 혹은 영역의 실행도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반대로 j의 실행도 평균이 j의 중요도 평균보다 작은 경우에는 j의 실행도 평균을 전체 혹은 영역의 실행도 평균으로 나눈 값을 역순한다. 본 조사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한 실행정도가 중요도보다 낮았으므로 각 사항의 실행정도의 평균을 각 영역의 실행정도 평균으로 나눈 값에 역순을 취하여 상대적 실행정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실행정도를 X축으로 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Y축으로 하는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RI-RP 좌표를 매트릭스 위에 배치하였으며 매트릭스의 중점(0, 1)에서의 거리($D_q(j)$)를 산출하였다.

2) 분석결과

신속수사팀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도를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표 5-16]은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각 중요도와 실행정도를 평가한 값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와 상대적 중요도와 상대적 실행정도를 계산한 값을 제시하였다. 이 중 제Ⅱ사분

[표 5-16] 신속수사팀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중요도-실행정도 차이 분석(IPGA) 결과

(단위 : M(SD))

개선필요사항	실행정도 -중요도	t	상대적 중요도	상대적 실행정도	사분면	*Dq(j)*
〈개인의 역량 향상〉	-3.18	-18.65***	1.01	-1.21	2	**1.21**
신속수사팀의 업무 숙련	-2.94	-14.71***	1.09	-0.79	2	0.80
수사교육(수사, 소재추적기법, 효과적 강제수사 등)	-3.25	-15.42***	1.07	-0.89	2	**0.90**
호신술 등 신체적 훈련 및 교육 지원	-3.48	-15.77***	0.89	-1.49	3	
형사법 등 법제도 교육	-3.06	-12.98***	0.98	-1.01	3	
근무평가나 성과금 포상 등 객관적 보상	-3.18	-12.42***	0.98	-1.04	3	
〈제도 개선〉	-2.10	-11.74***	0.95	-0.96	3	
적정한 권한	-1.60	-7.49***	1.01	-0.87	2	0.87
보직 및 경력관리를 통한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	-2.67	-13.18***	1.08	-1.02	2	**1.03**
보호직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조사)과 별개의 전자감독 직렬	-1.92	-7.04***	0.85	-1.23	3	
팀장에게 복무권한을 부여하여 독립된 팀으로 운영	-1.98	-7.01***	0.99	-0.98	3	
지원자 위주의 팀원 선발	-2.14	-7.22***	0.99	-1.02	3	
명확한 업무 범위	-2.27	-9.23***	1.07	-0.94	2	0.95
〈지원체계 및 시설 확보〉	-1.77	-15.39***	1.03	-0.79	2	0.79
독립적 사무공간	-1.65	-7.56***	1.03	-0.93	2	0.93
구체적인 업무 지침(매뉴얼)	-2.05	-10.28***	1.02	-1.04	2	1.04
킥스 시스템의 수사 절차 지원	-2.44	-12.02***	1.00	-1.18	2	**1.18**
전담직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2.16	-11.23***	1.01	-1.08	2	1.08
협조중심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2.43	-10.54***	0.98	-1.20	3	
경찰이 수사를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제반	-3.00	-12.70***	0.95	-1.52	3	
〈인식 개선〉	-2.69	-13.79***	1.02	-1.02	2	1.02
신속수사팀에 대한 보호관찰관 직원 전체의 긍정적 인식	-2.52	-11.12***	0.98	-0.98	3	
대상자의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경찰 · 검찰 · 법관의 인식	-2.89	-14.00***	1.04	-0.98	2	**0.98**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	-2.65	-11.42***	0.97	-1.04	3	

* 주1: *Dq(j)*=각 영역의 개선필요사항과 중점 간 거리.
* 주2: ***p〈.001
* 주3: 각 영역에서 개선필요사항과 중점 간 거리 값이 가장 큰 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함.

면에 배치한 사항에 블록을 처리하였으며, 거리($D_q(j)$)가 중점(0, 1)에서 가장 먼 사항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 결과, 모든 개선필요사항에서 실행정도와 중요도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모든 사항은 중점개선영역인 제Ⅱ사분면 혹은 점진개선영역인 제Ⅲ사분면에 위치하여 모든 사항이 개선이 필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각 하위영역별로 개선의 우선순위를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IPGA 매트릭스를 제시하였다. [표 5-16]에서 산출한 거리를 참고하여, 각 사항의 위치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먼저, 개인의 역량 향상 요인의 다섯 가지 개선필요사항 중 가장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중점(0, 1)에서의 거리를 확인하였다([그림 5-2] 참조). 중점개선 영역에 위치한 항목은 신속수사팀의 업무 숙련(◆)과 수사, 소재추적기법, 효과적인 강제수사 등 수사교육(■)이었으며 이 중 중점에서 보다 먼 거리에 있는 항목은 수사교육으로 나타났다(■, $D_q(j)$=0.90). 점진개선영역에 위치한 항목은 호신술과 같은 신체적 훈련 및 교육지원(▲)과 형사법 등 법제도 교육(×), 근무평가나 성과금 포상 등 객관적 보상(○)이었다.

종합하면, 신속수사팀은 개인의 역량 향상과 관련되어있는 여러 교육이나 업무 숙련이 모두 개선되어야 할 항목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항목은 수사에 대한 교육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요원이나 신속수사팀 배치 이전에는 수사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속수사팀은 피부착자의 특징과 준수사항 위반 사건이 갖는 성질,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경찰보다 빠르게 수사의뢰를 처리하고 있다. 향후 이들이 경찰의 수사기법을 장착하게 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수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의 숙련은 앞서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이 예상한 것처럼 다양한 수사를 수행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숙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다양한 수사기법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2] 개인의 역량 향상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다음으로 제도 개선 요인의 여섯 가지 개선필요사항 중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다([그림 5-3] 참조). 중점개선 영역에 위치한 항목은 적정한 권한(◆), 보호 및 경력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명확한 업무범위(●)로 나타났다. 팀장에게 복무권한을 부여하여 독립된 팀으로 운영(×), 지원자 위주의 팀원 선발(○) 사항은 중점개선영역과 점진개선영역 사이에 위치하였다. 보호직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조사)과 별개의 전자감독 직렬(▲) 사항은 점진개선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한 사항 중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중점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Dq(j)$=1.03), 명확한 업무 범위(●, $Dq(j)$=0.95), 적정한 권한(◆, $Dq(j)$=0.87) 순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종합하면,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업무환경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조사했던 물적 자원([표 5-6] 참조) 중 가중치 점수가 높았던 자원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대부분의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위한 독립적인 업무 공간과 조사실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신설 초기에는 각 신속수사팀원을 위한 사무책상과 컴퓨터도 배정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으나, 빠른 속도로 사무공간 등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된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유치장, 피부착자 구금시설 등과 같은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신속수사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림 5-3] 제도 개선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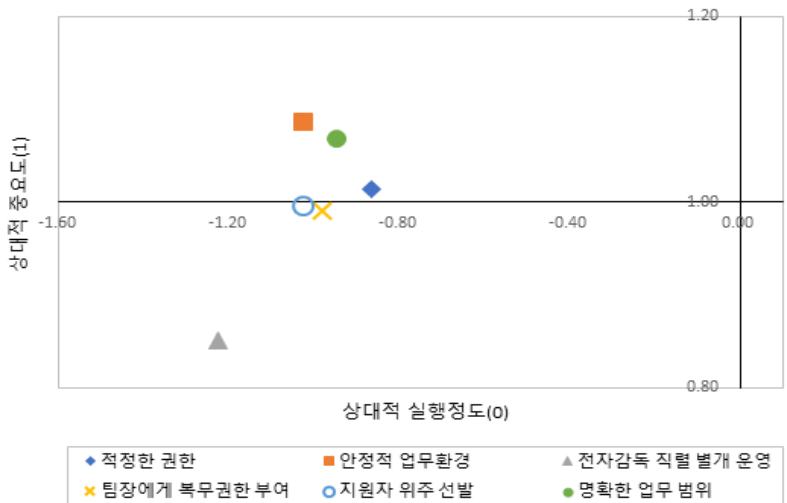

[그림 5-4]에서는 지원체계 및 시설 하위요인에서 신속수사팀이 우선적으로 확보되길 원하는 사항을 확인하였다. 모든 사항은 제Ⅱ사분면과 제Ⅲ사분면에 위치하였다. 먼저 중점개선 영역에 위치한 사항은 독립적인 사무공간(◆), 구체적인 업무 지침(매뉴얼)(■), 전담직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킥스 시스템의 수사 절차 지원(▲)으로 나타났으며, 점진개선 영역에는 협조중심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과 경찰이 수사를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제반(●)이 위치하였다.

중점개선영역에 위치한 사항 중 중점(0,1)과 거리가 가장 먼 사항은 킥스 시스템 지원(▲)으로 나타났다($Dq(j)$=1.18). 다음으로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 $Dq(j)$=1.08), 구체적인 업무 지침(■, $Dq(j)$=1.04), 독립적인 사무공간(◆, $Dq(j)$=0.93)으로 나타났다.

현재 킥스 시스템은 업그레이드 중으로 확인되었다. 킥스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면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은 영장신청 등을 전산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는 조사 전반에 걸쳐 신속수사팀에게서 나타난 우려이다. 그러나 충분한 교육 및 경험 축적을 통하여 신속수사팀의 업무 역량이 향상되고, 신속수사팀과 전담직원 간에 업무 범위가 명확해진다면 전담직원과의 협조체계는 우려보다 빠른 속도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침이 제공된다면 두 집단 사이의 마찰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신속수사팀의 인식은 앞서 제도 개선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업무환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상응한다.

[그림 5-4] 지원체계 및 시설 확보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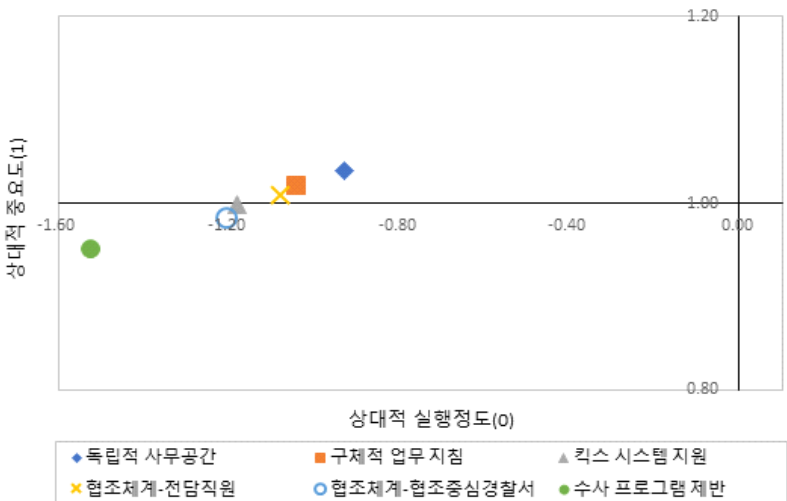

[그림 5-5]는 인식 개선 하위요인에 대한 IPGA 매트릭스이다. 중점개선 영역에는 경찰 · 검찰 · 법관의 인식(■)만이 위치하였으며, 거리($D_q(j)$)는 0.98이다. 앞선 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 법관은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소소한 규칙 위반 정도로 이해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없는 등 수사에 대한 적극성이 낮고, 위반 사실에 대해 기소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자감독제도에서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은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가벼이

취급할 단순규칙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는 수차례 범죄를 저지를 때마다 대부분 주취 혹은 만취상태였거나, 음주상태일 때 통제력을 잃고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주제한 준수사항이 부과된 피부착자가 음주를 한다는 사실은 동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야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준수사항 부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준수사항 위반 종류에 따라 재범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에 대해 긴급하고 위중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실무자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는 관계자들이 준수사항 위반 등이 위험한 위반임을 인식하고 대응해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강윤성 사건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검찰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였다는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는 다음 절 '기관 간 공조'에서 언급하였다.

강윤성 사건 이후 전자감독제도와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엄벌 수준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의 인식이 팽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보호관찰관 직원 전체의 인식은 점진개선영역에 위치하였다.

[그림 5-5] 인식 개선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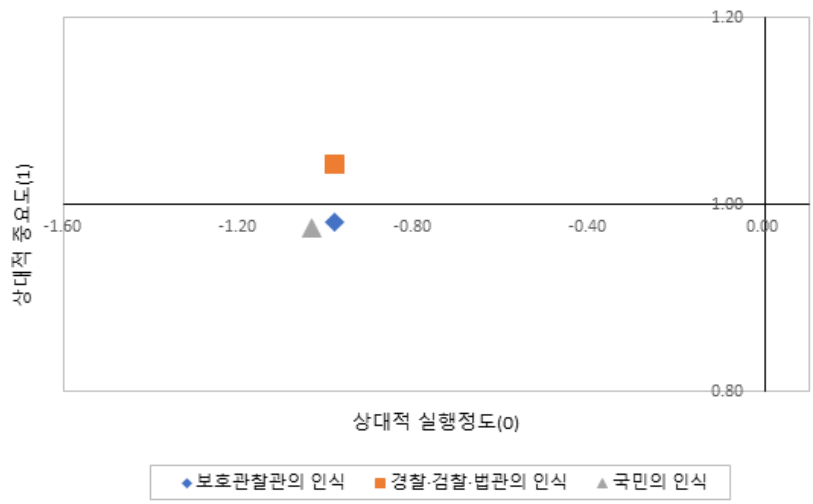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각 하위영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영역을 산출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 안에 있는 사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상대적 실행정도를 산출한 뒤 각 하위영역의 값을 IPGA 매트릭스에 배치하였다([그림 5-6] 참조).

중점(0, 1)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하위요인은 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나타나(◆, $Dq(j)$=1.21) 신속수사팀원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식 개선(×, $Dq(j)$=1.2), 지원체계 및 시설확보(▲, $Dq(j)$=0.79)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요인은 점진개선 영역에 위치하여 중점개선영역의 개선 이후 고려할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6] 전체 하위영역에 대한 IPGA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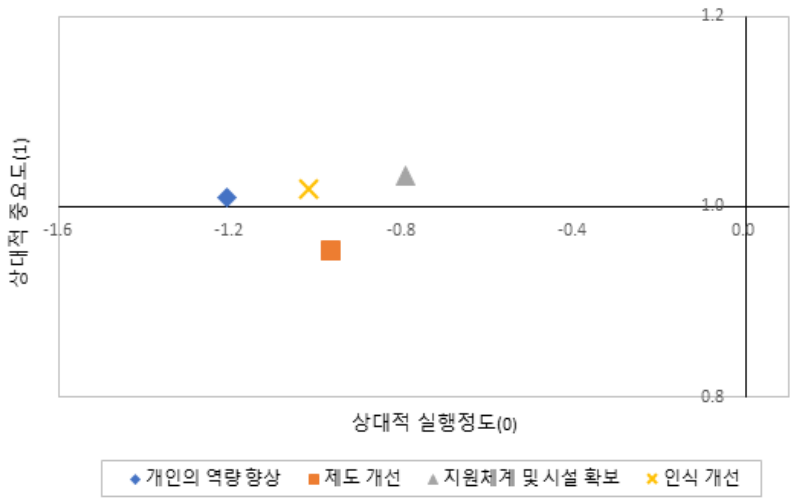

제3절 | 기관 간 공조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범죄에 대한 대응 및 비상시 신속한 협조를 위해 전국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경찰과의 공조는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자감독 특사경은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기존에 수행하지 않았던 구속절차까지 수행하면서 이전보다 검찰과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한 이해를 위해 2장에서 공조 관련 운영현황의 객관적인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공조 내용이나 한계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검찰과의 공조 면에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공조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경찰관과 검사 및 검찰 직원 면담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기관별 공조 상황과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향후 기관 간 공조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경찰 공조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범죄 수사를 위해 전적으로 경찰의 협조에 의존했다. 제도의 도입 이후 대상자의 의무 위반 범죄 대응에 있어서의 권한을 갖게 되었으나 도주자 추적의 시급성이나 의무 위반 범죄 이 외 추가범죄 발생 위험성 등의 이유로 경찰의 협조는 여전히 주요하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 위반, 오작동으로 인해 출동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 2명(경찰1, 경찰2)과 112신고접수를 총괄하고 있는 상황실 팀장(경찰3)과의 면담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업무 경험과 현황, 한계 및 문제점 파악하고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에 참고해야할 요소 및 향후 경찰과의 공조 체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신고로 현장 대응 경험이 있는 면담 대상 경찰관 중 한 명(경찰1)은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사건을 1건 씩 경험하였고, 다른 한 명(경찰2)은 전자발찌 오작동으로 출동한 경험이 있었다. 먼저 훼손사건의 경우 올해 7월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가 훼손을 시도한 사건으로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해 현장체포 한 사례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두 번째 준수사항 위반 사건은 야간귀가지도 중이던 보호관찰관의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였으며, 대상자가 주취 상태로 귀가를 거부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난동 상황에서 외출시간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해 현장체포로 이어졌다. 준수사항 위반 사건의 경우 제도 이전으로 보호관찰관이 특사경 권한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자발

찌 오작동 사건의 경우 올해 9월 발생했으며, 훼손 의심 신고 접수로 출동하였으나 확인 후 단순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철수한 사례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에 대해서 경찰도 대응의 시급성과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전자장치 훼손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 명령이 하달될 때 접수되는 대응코드가 코드 제로(Code 0)[75]로, 가장 중한 수준의 대응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특히, 강윤성 사건 이후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경찰이 훼손사건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동 시간은) 한 3분 정도? 4분?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 코드 제로(0)였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 급하게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때 순찰차 두 대? 형사에서도 나오고 저희 소장님, 팀장님 다 나와 가지고. 거의 다섯 명은 나갔던 것 같아요. 저희 지구대에서만.(경찰2)

> 대체로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신고 표현이. 그러다보니까 코드 제로(0)나 원(1), 긴급신고로 하달되지 이 외 코드로 하달되진 않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신고자의 톤이나 요청사항에 따라서 수정도 내려갈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없다고는 배제는 못하겠는데. 대체로 제로나 원, 긴급으로 들어갈 겁니다.(경찰3)

>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에서 떨어진 112신고 그런 거 제껴두고 다른 신고도 있는데 이제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처리를 하는... 일단은 좀 중요하게 떠요. 코드가. 저희가 코드가 제로, 1, 2, 3.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훼손사건 때) 코드 제로로 떨어졌나... 우선순위가 있어요.(경찰1)

그러나 경찰의 전체 업무 중 전자감독 대상자 대응과 같은 현장 대응이나 수사는 다소 이례적인 업무로, 실제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112신고가 하루에 만 여건 가량 접수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훼손사건 의심으로

---

75) 경찰 112 출동 대응 코드분류 (자료출처: 「경찰백서」)
- Code 0 : 코드 1 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 등의 경우
- Code 1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진행중·직후인 경우 또는 현행범
- Code 2 :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이 필요한 경우
- Code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하나 수사,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 Code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비출동 또는 타기관 이관)

인한 신고 접수 건수가 총 28건[76]인 것만을 확인하여도 일상적인 경찰 업무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질문자: 지금 전자발찌 관련한 위반 사례들을 두 건 경험하셨는데, 다른 경찰 분들도 5년에 한 두 건 정도 경험하시나요?

경찰1: 물론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분들도. 근데 이게 제가 ○지구대 ○년.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동안 전자발찌, 저희 팀에서 떨어진 건 (준수사항 위반) 한 건이었어요. 3년 동안. 저희가 4개 팀 있으니까,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1건. 거의 굉장히 적죠. 빈도수가.

저희 관내 사는 사람 중에 전자발찌 (찬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신고는 아니고. 이제 그 주변(기관)에서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런 식으로 공조 개념으로 경우는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했던 거는 그때(오작동 사건) 나간 것이 처음이었고.(경찰2)

일선 경찰 직원들은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체 업무에 비해 발생 빈도가 낮아 사건 경험이 부족하고 관심도도 높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관련 업무를 경험한 경찰관의 경우 이전과 다르게 체포 후 인계 과정이 달라짐으로써 제도의 도입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 외에는 제도가 이전부터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거나, 면담을 통해 새로 도입된 것을 파악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반사건 현행범 체포된 사람들이랑 똑같이 진행이 되는 데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사건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사건을 케이스 입력을 해가지고 저희 경찰서로 인계를 가서 형사과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게 뭐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 자체를 저희가 현장에서 특사경한테 인계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걸 몰랐는데.(경찰1)

또한, 준수사항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지 못해 관련 출동 후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도움을 받아 현장체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질문자 :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외출제한을 안 지키고

76) 2020.10.1.~2021.9.6. 약 1년간 전자발찌 훼손 의심 신고 건수, 경찰청 내부자료

야간 귀가를 안 한 거에 대한 위반(이었던 건가요?).

경찰1 : 저희도 그 당시 '이거 무슨 죄로 해야 되나'(했는데), 그때 보호관찰(소에서) 나오신 분이 이게(준수사항 위반) 유일한 적용범죄다 해가지고 그 상황으로 체포한 거죠.

기본적으로 일선 경찰은 전자감독 업무가 보호관찰관의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과중한 업무에 전자감독 관련된 업무까지 추가되는 것은 인력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법무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응까지 할 수 있게 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 사이에는 공무원은 경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구청에 방역법 관련해서 신고해도 당직자밖에 없으니까 경찰에게 출동해달라고하고, 주차 위반 같은 경우에는 구청 자치단체에서 가져간 지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112신고를 하면은 경찰은 안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전자감독) 업무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요. 사실 사건사고 일어나면 경찰은 관련이 안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 저희들이 또 전담을 한다고 하면은 어디 부서가 생기든지 해야지, 지구대에서는 모든 신고를 다 나가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경찰도 국민의 신체와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하는 업무도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할라고 하면은 내가 보기에는 법무부 쪽에서도 인력을 더 충원하셔가지고 조금 실질적으로도 좀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2)

> 특사경 생긴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제 그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게 더 이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처리하는 게 아마 더 빠를 거에요. 경찰 통해서 결국엔 인계를 받는데,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겼으니까. 사건을 직접 다를 수 있는 그게(권한이) 생겼으면은 거기서 하는 게 더 옳고. (경찰1)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일선 경찰관들이 대체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체포 상황 등 현장에서 극단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전반적인 체포나 수사 상황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다양한 현장 대응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대응에서 특별한 위험성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크게 위협적인, 몇몇 사건, 왜 누구 훼손하고 사람 죽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사람이 훼손 이후에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간에 지내다가 훼손할 수도 있겠지만, 훼손 자체만으로는 크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위협, 저희가 체포자 입장에서는 그게 위험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특사경이 맡을 수 있으면은 이제 전문적으로 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경찰1)

추가적으로, 경찰 일선에서는 보호관찰소와 상호 공조에 대한 현실감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협조중심경찰서'나 '합동훈련' 등도 다소 생소하게 받아들였으며, 관할 내 고위험군 관리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와의 협업 등도 경험한 면담 대상자는 없었다. 단, 이는 면담 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경찰은 전자감독 대상자 관련 의무 위반 범죄 중 훼손과 관련한 범죄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보호관찰 직원이 적극적으로 수사 개입 노력을 하거나 개인 수사관이 사건 자체에 중대한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전자감독 대상자 의무 위반 사건은 구속절차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도입을 통해 해소하고자 했던 문제점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공조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찰과의 협조관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해소되어야 할 문제점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긴급상황 시 원활한 자료공유에 관련한 것이다. 면담대상자 모두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신고 당시 대상자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의 소극적 제공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공조의지에 의구심을 느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제는 법무부에서도 해소를 위해 관련 공조체계를 확립할 것을 발표하기도 하는 등[77]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저희한테 신고 떴을 때는 그 사람 이름이랑 남자. 딱 그거까지만 정보가 왔었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신고 내용에는 자세한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그냥 이름이랑 그 밑에 보호관찰소에서 일하시는 직원분 연락처랑 그분이 신고하게 된 경위. 이런 것만 적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바로 출동하면서 그분(보호관찰관)이랑 이제 전화로,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가고 있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갔던 거 같아요.(경찰2)

> 저희가 신고 받고 출발했을 때 이름밖에 몰랐어요. 저희가. 인상착의나 그 교도소 나올 때 뭐 그런 사진이나 그날 입고 나온 사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더 빨리 찾았을 텐데. 이게 이름밖에 몰라서, 생년월일, 이름 밖에 몰랐거든요. 최초 신고할 때는 이름밖에 몰라가지고. 추후에 정보가 하나씩 들어오면서. 초기 출동할 때 정보가 좀 있으면...(경찰1)

> 신고만 했지. 이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심지어 어떤 문제로 전자발찌가 되어있고 그 전에 전력이 어떤 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대요. 개인 정보라고. 그냥 없다고만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경찰은 송파면 송파, 남대문. 계속 공조를 해야 하는데 저희 팀마다 어찌보면 계속 정보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아니 뭘 알려줘야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112 시스템에 참고사항에 인적사항이 올라오면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직원들은 조금 불편하고. 신고를 했다 뿐이지 공조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경찰3)

추가적으로 전자감독 의무 위반 대상자를 경찰이 체포했을 때 인계나 수사 이관 관련한 절차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활한 공조의 기반마련을 위해 각 기관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람 현행범 체포해서 서류를 꾸미는데 그분(보호관찰관분)들

77)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법무부 보도자료, 2021.9.3.

이 서로, 저희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저희도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있어요). 체포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는데 한 30~4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그런 걸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만약에 체포를 먼저 하면은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필수로 있어가지고 그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좋겠어요). 만약에 저희가 같이 하다가 그분들이 먼저 체포했으면 바로 현장공조해도 되는데. 저희가 먼저 체포를 하면 서류작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협의가 되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전자발찌 훼손 될 경우에는 이제 인계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저희가 현행범체포를 한 사안이라, 저희가 그냥 인계를 할 수는 없고. 저희도 112신고도 접수가 되있고(하니까요). (그날도) 그래서 저희가 체포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인계한 다음에 경찰서에서 인수받아가셨어요.(경찰1)

경보발생에 따라서 인지하고 바로 신속수사팀이 갈 거 아니에요. 되게 경로가 단축되어 있잖아요. 경찰은 신고로 인지하기 때문에 지역경찰관의 최초의 현장 도착해서 일단은 현장 안전하게 하고 기본적인 주변수색정도 할거고. 일종의 시간 따지자면 최대 길면은 24시간 동안 작업하는데. 그 다음에 수사단계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달라서 이 등위가 좀 맞춰져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수사팀이 배정되고, 경찰과 수사팀과의 인계? 그런 식의 어떤 게.(경찰3)

전자감독 대상자 대응 현장 업무를 하면서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를 시작하는 보호관찰 직원이 갖추어야 할 우선적인 역량에 대해 경찰은 현장대응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한, 비상 상황 이외 평상시에도 고위험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았다. 더불어 훼손 의심 신고 중 대부분이 전자발찌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많아 기기의 결함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현장에서 대상자를 검거하는 게 제1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후에 서류절차는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아니고), 저희도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때(준수사항 위반 체포)도 저희도 이제 이 법이 뭔지 몰라서 물어서 그분(보호관찰관분)이 말씀해줘 가지고 법률 내용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런 거 확인해보고(체포했어요). 체포 후 처리 시간은 넉넉하게 있으니까 일단은 현장에서 그 사람을 검거하는 거 제1순위고. 만약에 그 사람이 지시에

> 따르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해야 될 것인데. 어차피 현장에 있으면 거의 다 따르지 않고 그럼 그때 그 시간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현행범 체포를 거의 해야 하는 건 같아서, 그 단계에서 체포를 함에 있어서 장구라던가 수갑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절차. 또 절차가.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도 절차를 위반하면, 옳은 일 하고서도 하신 분이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런 현장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가장 먼저 익히시는 게 일단은 1번일 것 같습니다.(경찰1)

> (전자장치 훼손 의심 신고) 30건 중에 2건만 실제 전자발찌 훼손, 그러니까 실제 도주가 없었던 걸 감안하면, 오류나 오작동이 많은 거 같고 그냥 신고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이게 오작동과 오류에 대한 구별이 그 잘 안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계적으로 잘못된 건지. 조작을 잘못됐는지도 사실 중요한 건데 그냥 막연히 그냥 오작동, 오작동, 오작동. 이래버리니까.(경찰3)

전자감독 특사경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감독 특사경이 대응할 수 있는 범죄는 전자장치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제한되어 있어 추가 범죄가 발생했을 시 경찰의 출동과 공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범전국적으로 분포한 경찰 인력의 도움이 있어야 어느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모두 특사경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준의 인력으로 전국 출동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며, 신속수사팀을 57개 보호관찰소로 확대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경찰 수준의 신속 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과의 지속적이고 활발한 업무 협력과 공조의 필요성에 비해 일선 경찰 직원들은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을 담당하고 있고, 전자감독 특사경이 출범하였으니 관련 공조가 이전 수준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이는 경찰과 법무부간 업무 협조의 범위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경찰서와 보호관찰소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소통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공조를 활발히 하는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겠으나, 우선적으로는 변화된 제도에 맞추어 업무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체계나 체포의 주체에 따른 인계 관련 조치 등 현장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경찰 내에 공조와 관련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

로써 인식의 변화를 도모한다면, 향후 경찰과 전자감독 특사경간의 업무 협조에 있어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 검찰 공조

대검찰청의 특사경 전담 검사와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와 관련한 업무의 변화와 현재 공조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향후 전자감독 특사경과 검찰과의 공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검찰청은 형사부 소속 형사 2과에 특별사법경찰 운영팀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팀은 전국에 있는 검사 지정 특사경 관련 업무와 지원업무를 전담한다. 대검찰청에서 특사경을 전담하는 검사의 임기는 인사이동시마다 변경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서이동에 따라 1년 미만의 임기를 가진다. 각 지방청의 경우 지청단위의 소규모 기관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검단위에서는 한 개의 부서에서 모든 특사경 관련 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부서별로 담당하는 특사경이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사 2부에서는 식품관련 식약처 특사경, 고용노동부 특사경은 형사 5, 6부 등으로 나누어 사건을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관계는 현재 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나 특별사법경찰과는 법률상으로 지휘관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전자감독 특사경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대상자 의무 위반 범죄시에 경찰의 협조로 수사를 진행해야 했으므로 보호관찰관이 검찰에 업무 요청을 하거나 검찰이 직접적으로 수사 방향을 지휘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제도 이전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의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입수하기 위해 영장이 필요했지만 직접 신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의뢰를 한 후 경찰에서 이를 수행해 주었을 때 이를 수령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한, 검찰도 보호관찰관과 직접적인 소통이 아닌 경찰과의 협조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속한 수사 진행에 한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담 대상 검사는 제도의 도입으로 이전에는 보호관찰관이 경찰의 의뢰를 통해 수행했던 업무의 비효율을 상당 해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기존 전자감독

전담 직원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대상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등의 행위를 목격하면서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경찰의 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했던 점이 해소되면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도입 의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공무원이 이를 활용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사경 제도 자체가 갖는 의의를 만족시키는 제도로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신속수사팀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전국 지소 단위의 업무 공조보다 본소 수사전담 담당자를 별도로 조직화함으로써 대응 측면에서 검찰과의 공조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강윤성 사건 이후 검찰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과의 적극적인 공조 방안을 제시하였다.[78]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검찰청에 보호관찰소 소속 직원들의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지원'을 하며, '전자발찌 훼손 사범 등에 대해 신속·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적인 지원업무로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 발생 시 대상자 추적 검거를 위한 체포·압수수색검증 영장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신속히 처리', '압수수색 통신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병 확보 및 증거수집이 이루질 수 있도록 수사를 지원'하며,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의 엄정 대처를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전국 검찰청 특사경 전담 검사와 전자감독 특사경간의 1:1 멘토링과 청별 직무교육 실시, 법리검토와 수사기법 지원 등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전자감독 특사경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는 해당 업무를 맡게 된 전자감독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일선 특사경 전담 검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서 영장 신청서 작성기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내 드리거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것들 작성법을 자체교육하고 있고. 영장신청서 양식, 기본 양식도 다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영장을 집행하는 게 저희야 매일 자주 하는 일이라 그렇지만 영장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사실 영장 이렇게 주면서 '집행하세요' 하면 못하거든

78) '강윤성 사건'등 잇따르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검찰, 보호관찰소와 협력 강화, 법률신문, 2021.9.16.

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절차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육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회사에 집행한다거나 그래서 금융자료나 인터넷 로그자료가 왔는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할지(도 알려드리고요). 왜냐하면 당장 하셔야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보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이 자료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장 등의 신속처리를 위한 협조 체계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주간에 신청되어 접수되는 영장의 경우 즉시 처리되지만, 새벽시간과 같은 근무시간 이외의 당직 영장은 다음날 처리되기도 하는 등 지체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면담에 따르면, 전자발찌 훼손사건의 경우에는 도주하여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장 처리 과정을 개선하여 각 지역 특사경 전담 검사와 관할지역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특사경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도록 체계를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각 검찰과 보호관찰소의 담당 직원 간 휴대전화를 통한 연락망을 구축하여 긴급 처리 영장이나 사안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시간의 구애 없이 지체하지 않고 영장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를 통해 1:1 멘토링은 물론, 시시각각 발생할 수 있는 문의사항에 응답하는 등의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입장에서도 훼손 도주자를 추적 검거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에 신속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준수사항 위반과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한 직권수사를 위해 필요한 수사교육도 실시하고 있었다.

전자감독 특사경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발찌 끊고 도망간 대상자를 빨리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상자를 방치했다가는 또 무슨 나쁜 짓을 저지를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끊고 도망간 사람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게 일단 제 1목표입니다. 일단 거기에 우선을 하려면 현재에는 영장을 빨리 신청하고 빨리 발부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빨리 분석해서 추적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구요. 만약 다른 특사경분들은 또 다른, 거기에 맞춰서. 단속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단속을

>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숨겨놓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겠지만 전자감독 특사경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뭐 일반적인 뭐, 형사소송법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자리에서 도움이 되는 일은, 물론 법적인 걸 알아두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치 훼손 후 도주로 관할 지역이 바뀌었을 때는 현장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유기적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을 실시한 시점이 관할 지역을 넘나들며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사건[79]발생 이후시기로, 당시에는 집행을 위해서 경찰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장에서는 이게 좀 협의가 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신속수사팀이 만약에 있다면 뭐 광주에서 일단 처리를 하겠죠. 하더라도 광주에서 광주지검에서 영장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순천 쪽에 있다라고 하면 영장을 순천 쪽으로 보내서 그쪽 직원들이 하실 수도 있고 보통 지금은 경찰이랑 같이합니다.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또 순천에 있다가 버스타고 창원으로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별로 공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조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추진 중인 내용으로는 수사정보 공유시스템 구축과 간담회 및 직무교육이 실시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 자체 수사시스템과 보호관찰소 수사시스템 망의 점차적인 연결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는데 있어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 중이며, 신속수사팀이 배치된 13개 지검에서 간담회 및 직무교육 일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은 아니었으며, 기관의 필요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특사경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전담 검사의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으로는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직의 안정화였다.

---

79) 60대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나..경찰 추적, KBS, 2021.10.26.
https://news.v.daum.net/v/20211026220937473?f=o(검색일자: 2021.12.19.)

> 꼭 전자감독 특사경분들의 문제만은 아닌데요. 이게 특사경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그게 그 전문성이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면 인사이동이 자주 있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이제 뭐 한 업무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셔야 또 수사 노하우도 본인이 체득을 하시고 더 익숙해지시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 공무원 분들이고 이제 공무원 내부 인사시스템에 따라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장기간 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하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 2년 하시다가 다른 분들로 교체되고 또 1, 2년 하다가 다른 분들로 교체가 되고 하면은 또 오시는 분 또 어차피 (새로 교육해야 하니까요). 예전에 하시는 분이 지역만 바꾸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생판 모르는 일을 또 하시게 되면 또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체계적으로 교육기관을 차분하게 두고 교육을 막 열심히 한 다음에 뭐 이제 이 정도 됐어. 라고 하면 현장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에 계신 날로부터 바로 업무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를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전자감독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킬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막 이렇게 강력범죄, 강력범죄 저지른 애들이 이거 차고 있는데 뭐 이거 잡으려고 하면 칼들고 설칠 수도 있고 막 위험한 흉기 들고 설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장에서 그 이런 전문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대응하시다가 혹시 또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에 초래가 수 있기 때문에. 기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왜냐면 다른 업무보다 이런(위험한) 업무를 더 하셔야 하니까. 물론 업무 조정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업무에 대하여 어떤 인센티브라던지, 아니면 인사 상 어떤 이익을 준다던지 해서. 그 현실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셔야 좀 장기간 오래 근속해서 좀 근무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좀 전문성도 쌓으시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이 외에는 검찰과 보호관찰소간의 지속적인 접촉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시작 단계에 있는 만큼 운영 상황을 보면서 공조 방식도 보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검사의 입장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의 대상자가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일반특사경과 특별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기본적으로 업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대상자들이고, 이들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일 수 있으나 특사경 업무에 있어서는 다른 종류의 특사경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의무 위반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서 과거보다 관리감독이 용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 본인이 특수하게 하시는 전문영역에 있어서 영역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법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원래하지 않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관리감독하고 하는 대상자들, 준수사항 위반이나 이런 애들을 계속적으로 뭐 추적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일정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업무 전문성 유지를 위한 조치에 대한 응답에서의 '극단적인 경우'의 설명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매우 소수의 위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특사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성이 낮을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 지휘를 포함하여 법률적인 자문과 수사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써 검찰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해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지역별 검찰청과 보호관찰소의 재량에 따라 지원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보호관찰소가 적극성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다면 필요한 자문이나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적극성을 개별 소단위에서 발휘하기 보다는 본부 수준에서 일정 기준 이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원과 교육 수준을 판단하여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가 지원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및 정책제언

최지선 · 성유리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 시사점 및 제언

본 절에서는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실효성 있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제언을 업무체계, 인력 및 운영, 업무 권한, 업무 역량, 기관 간 공조체계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운영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한 후, 향후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업무 체계: 업무의 범위 및 역할 재고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지침 2차 전부 개정 이전과 이후의 운영체계에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하게는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와 '신속수사팀'의 운영체계를 비교할 수 있겠는데, 광역특별사법경찰관서가 전국 6개 본소에 각 1명씩 수사요원을 배치한 반면 신속수사팀은 전국 13개 본소에 8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수사전담 인력을 구성하였다. 이전까지 수사의뢰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던 제도 운영 방식이 '강윤성 사건'과 같은 전자발찌 훼손과 관련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도입과 전부 개정 등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신속수사팀원은 새롭게 배치된 업무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전자감독 전담 직원과 신속수사팀간의 명확한 역할 정립이나 업무 분담에 관련한 체계적인 정비,

업무량 등의 산정 없이 제도가 수행되고 있어, 현장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감독 특사경으로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체가 지정되어 있으나, 제재 업무를 전담하는 신속수사팀의 발족으로 관리감독과 제재가 분리된 형태로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대상자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형성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서도 관리감독과 제재업무의 분리로 더욱 엄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용이해졌음이 나타났다. 관리감독 전담직원은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면서 의무 위반 범죄가 발생하면 제재 전담직원인 신속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할 것임을 알리는 등 제도의 변화를 우회적인 행동 교정 기제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감독 전담 업무의 특성상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전자감독 전담 직원들도 준수사항 위반 적시조치와 같은 업무를 일정 수준의 재량으로 수행해 오면서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도 했으나, 신속수사팀 발족 이후부터 고위험군의 경보에는 1회 경보라 할지라도 무관용 수준으로 출동, 처리하고 있어 전담직원의 재량권한이 축소되면서 장기적으로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신속수사팀이 발족되었지만, 전국 13개 본소에서 전 관할 지역에의 신속 출동이 어려워 범죄예방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범죄예방팀은 시기에 따라서 비상시 특사경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일상 시에는 전자감독 전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업무가 분리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전자감독 제도 도입 이후 전담직원을 지정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만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외 업무와 병행하고 있는 직원이 다수 발생한 것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보호관찰 내부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 변화한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신속수사팀이 개별적으로 관할 범죄예방팀간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공조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업무 체계와 분장에 대한 직원들 간의 공공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기관별 재량에 의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운영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에 있어 관리감독과 제재 전담으로 분리하는 업무체계는 소년보호기관의 교육·수용 전담제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소년보호기관의 경우에는 수용되어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일상 시 교육을 하던 관리자가 일과시간 이후 별개의 업무인 수용 관리자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원의 역할갈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자감독 특사경 출범의 본래 목적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반 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전자감독 전담직원이 이전에도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재 조치를 활용하고 있던 점 등 소년보호기관의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업무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인력 및 운영: 체계적인 인력 충원과 전문성 유지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서 추가적인 업무 부담에 대한 예상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초기 단계에서의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6개 거점 특별사법경찰관서의 6명의 수사요원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에도 인력의 증원 없이 기존 전자감독 전담 직원의 직무 재배치를 통해 전국 13개 본소에 신속수사팀을 구성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향후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인력이 증원되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13개 본소에 각 4명에서 9명까지 배치되어 3.5교대에서 4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24시간대기 근무로 상시 1명에서 2명의 팀원이 근무하게 되는데, 긴급 상황 발생 시 여유 인력이 없어 휴무와 관계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속수사팀 출범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미 직원들은 업무로 인해 상당히 소진된 상태로 나타났다. 경찰의 경우 각 교대조가 대기 인력을 포함하여 비교적 충분한 인원으로 교대근무[80]를 하고 있는 반면, 신속수사팀은 1개 조가 1~2명

80) 한국노동연구원(2012), 경찰공무원의 근로시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으로 이루어져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신속수사팀이지만, 동시에 2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혹은 장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전자감독 전담 직원의 업무량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감독 전담직원 중 약 25%인 80여명의 인력이 신속수사팀으로서 제재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면서 남아있는 75%의 전담 직원이 기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기존에도 직원 1인당 대상자의 수가 평균 17명으로 상당한 업무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전담직원의 업무가 더욱 과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업무를 신속수사팀이 전담해서 처리해 줌으로써 일부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겠으나, 엄벌주의 방침으로 준수사항 위반 등에 있어서 전담직원의 경고 조치로 마무리 될 수 없는 상황이 다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적인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겠다.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한 인력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감독 기간 증가, 대상자 범죄와 처분 종류의 확대, 1:1 전자감독 도입 등으로 대상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반면, 이를 감독하는 전담직원의 증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업무가 지속적으로 과중한 상태이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나아가 전자감독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인력증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의 인력 충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전담직원의 업무 과중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13개의 신속수사팀이 여러 조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 신속수사팀과 기존 전담직원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이후에 추가 기관에 신속수사팀 신설을 하는 등 단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 과중으로 인한 직원들의 소진 상황과 별개로 신속수사팀의 확장을 추진한다면 전반적인 전자감독 관리감독 업무의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국 57개 모든 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은 대응의 신속성 면에 있어서 보완이 될 수 있겠으나, 사건 발생 건수 등과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범죄예방팀과 경찰의 협조를 활용하는 방면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렇게 충원되는 인력은 신속수사팀이 처리하는 수사의 양이 감소되어도 유지되어야 한다.

24시간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대기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보완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분리해서 수행하는 만큼, 제재 및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추적 등의 수사 업무가 위주인 타 특사경(환경, 교통 등)에 비해 전자감독 특사경의 경우 현장 대응이 주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가 고위험군인 만큼, 현장에서 제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고려될 수 있겠다. 현재 범죄예방팀의 무도실무관이 대상자 관리 시 위험상황에서의 대응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향후 전자감독 특사경 권한을 가진 제재 및 수사전담 요원도 충원되어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인력의 증원 및 보완과 더불어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의 직무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직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전자감독 특사경 또한 법무부 내 보호관찰직 공무원으로 지속적으로 순환보직을 맡게 되는데, 수사와 제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신속수사팀이 전혀 다른 업무로의 보직에 배치되게 된다면 신속수사팀의 전문성이 상당부분 약화되고, 새로 신속수사팀으로 배치된 직원에게 수사교육 등 관련 교육을 처음부터 실시해야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매우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속수사팀 업무를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면서 위험수당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통해 신속수사팀 근속을 장려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인력의 충원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효율성이다. 신속수사팀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경우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의 상당 부분이 제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체로 신속한 출동이 필요한 전자장치 훼손 사건은 연간 20건 내외로 일어나고 있으며, 제도 이전 수사 의뢰 건수가 월간 약 10건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재 전담 인력이 범죄예방팀과 더불어 전국 지소에 24시간 대기조로 배치되는 것이 비용효율적일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신속수사팀이 발족한 이래 수사 건수가 확연히 증가하였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일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업무 권한: 원활한 실무를 위한 재량권 확대

직권수사, 압수수색 등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특사경이 행사할 수 있는 업무 권한은 대체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에서도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특사경에 주어진 권한이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통신수사 등 일부 권한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업무 체계가 모두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통신수사와 관련한 업무체계가 정비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근시일내로 해당 권한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장치 훼손 사건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로 법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실무적인 수준에서의 업무 권한의 정비가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자감독 특사경이 대상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점진적 제재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고위험자의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1회 위반이라도 엄정대응을 방침으로 수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무 위반 사건이 형사처벌로 종결될 경우 벌금이나 단기간의 징역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지속적인 관리감독 과정에 있는 상태로, 이러한 과정 중에 있는 대상자에게 형사처벌은 종국적인 형태의 제재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처벌 이전에, 점진적인 제재인 훈방, 준수사항 추가·변경, 정신과적 등 치료 조치, 전자감독 기간 연장 등의 활용을 통한 행동교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사우스다코다 주와 같이 점진적 제재를 '비공식적 처리 - 낮은 수준(low) - 중간 수준(medium) - 높은 수준(high) - 강한 수준(Intensive) - 대책위원소집 수준(violation staffing) - 위반 수준(violation)'으로 대응 수준을 구분하고 단계별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듯이, 이를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점진적 제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담직원의 재량수준이 명확하지 않고, 위원회의 결정 등 의사결정 단계가 복잡하여 결과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나, 전자감독 특사경에게 점진적 제재에 대한 권한을 일부

부여해 운영한다면 점진적인 제재를 체계적으로 대상자에게 부과하게 됨으로써 대상자 관리감독, 궁극적으로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4. 업무 역량: 물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 및 전문 훈련 지원

전자감독 특사경, 특히 신속수사팀의 업무 역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업무관련 인프라 및 물질적 자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신속수사팀의 업무 역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신속수사팀이 제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만큼 분리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며, 상시 출동을 위한 신속수사팀 전용 관용차량과, 체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신속수사팀이 배치된 13개의 본소 중에서도 일부 물적 자원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보호관찰소의 제한된 공간에서 추가적인 팀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기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필요 물적 자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신속수사팀이 최소 기준에 충족하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무 역량을 발휘함에 있어 신속수사팀 직원들은 현장 대응이나 수사 시에 의도치 않게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체포나 수사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더불어 대상자가 불법체포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직원들에게 소송을 걸어 법적 분쟁에 이르는 것에 대한 걱정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은 직원들로 하여금 적절한 수준의 업무 역량 발휘를 위축시키는 업무 조건으로, 대비하여 관련 교육을 철저히 하고 법적 분쟁 발생 시 전문 법률대리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업무 역량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대응에 대한 장비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험성의 정도에 대한 의견은 다소 분분하지만 전자감독 특사경 업무 중 현장에서 대상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속수사팀 출범 이후 출동 상황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대상자를 제압

하고 대응해야 하는 사건[81]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관련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대응을 위한 물리적 조건에는 도구적 조건과 신체적 조건의 두 영역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도구적 조건으로 기본 보호장구 이 외에 위협 시 대처할 수 있는 삼단봉이나 테이저건과 같이 유사시에 대상자를 제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신체적 조건으로는 체포술과 같은 수사 관련 실무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실무 대면 교육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실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으나, 소규모 단위로 장기적인 교육 기회를 마련해 직원들이 특사경 업무 수행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내용을 즉각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5. 기관 간 공조 체계: 부처 단위 지속적 공조 협의

전자감독 특사경의 주요 공조 기관인 경찰 및 검찰과의 향후 공조를 위해서는 개별 보호관찰소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부처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경찰과의 공조에서는 훼손사건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협조 요청 시 정보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며, 경찰 체포 시 체포자 인계 과정, 유치장 활용 조건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협의도 필요하다. 제도의 시행에 대한 홍보 등으로 일선 경찰의 전자감독 특사경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신속수사팀 또한 경찰 업무 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등, 양 기관 내 직원들이 서로의 업무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겠다. 최근 실시된 경찰서와 보호관찰소간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모의훈련(F.T.X.) 등의 추가적인 기회를 통해 일상적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이 향후 기관 간 공조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회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과의 공조에 있어서는 현재 개별 신속수사팀의 적극성이 관할 검찰청의 지원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속수사팀이 시행 초기의 조직인 만큼,

81) 신속수사팀 수범사례, 법무부 내부자료

전체 13곳의 신속수사팀 모두 기본적인 수준의 검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보호관찰소에 관련 재량을 맡기는 것이 현 단계에서 효율적일 수 있겠으나, 각 신속수사팀마다 환경이나 상황, 인력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 지원에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신속수사팀은 적극적인 요청으로 교육과 법률자문 등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반면 일부 신속수사팀에서는 적극성의 한계로 다소 미진한 수준의 지원에 그칠 수 있다. 검찰 측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부처 차원에서 개별 신속수사팀이 모두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나 지원 요청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6. 제도 평가 도구: 다각적 제도 평가 도구 개발

현재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는 시행된 지 6개월가량 경과하여 올해는 제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제도 운영이 지속되면서 실적 등 평가를 실시할 것을 대비한 제도 평가 도구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출동건수, 수사건수, 구속건수 등 사건 발생과 대응 건수 등의 정량평가와 내부평가 등 정성평가를 취합한 실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도 대응건수가 주요한 요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발생과 대응 건수 위주의 평가는 신속수사팀간의 과도한 수사 건수 늘리기 경쟁이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신속수사팀의 체포와 구속 등 사건 건수가 이전 보다 증가한 것은 제도 이전까지 누적된 의무 위반 등이 있으나 수사가 지연된 사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제도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현재를 기준으로 향후 수사나 대응 건수의 증가로 제도를 평가한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고위험군의 재범 관리에서 벗어난 평가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신속수사팀의 신속·엄정대응을 피하기 위해 의무 위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다면, 이러한 결과 또한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로 인한 제재효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사 의뢰나 대응 건수만이 아닌 제도 시행 이후 대상자의 의도적인 의무 위반 건수와 재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제도 초기 효과를 기점으로

대상자의 의도적인 의무 위반과 훼손 건수가 줄어든다면 제도가 효과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도의 과학적 검증을 위해서는 자료의 축적이 중요한 만큼,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제도 검증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전담직원의 제재 업무의 부담이 감소하고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부 직원상호간의 평가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신속수사팀 자체 팀원의 업무 만족도와 타당성 평가 등 직무와 관련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주지할 점은 고위험군 재범관리를 위해서는 신속수사팀과 지도감독 전담 직원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평가지표에도 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7.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방향성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13개 본소에서 운영 중인 신속수사팀 중 2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향후 신속수사팀 운영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우수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두 기관은 모두 광역시 소재로 각 기관별 8명~9명의 직원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팀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고 원활한 소통을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기관A의 경우 수사 효율성이, 기관B의 경우 구속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

기관A는 광역수사요원을 경험한 팀장이 보유한 제도 시행부터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까지의 수사경험과 교육 및 지원 내용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 수사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범죄예방팀과 공조 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등 수사에 대한 적극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관B는 구속 등 법적 증거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자체 수집 증거자료 기록제출 방법' 등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었으며, 관할 지역 특사경 전담 검사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요청 등을 통해 검찰청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현재 각 신속수사팀은 소재 보호관찰소 및 팀장의 기조와 역량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처에서는 이러한 운영 사례를 취합 및 공유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효용성 있는 지침을 마련해 전체 신속수사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가 시행되고 신속수사팀이 출범하면서 전자감독 제도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제도가 시행 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행되고 있는 본 연구에서 제도의 실효성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현 상황을 진단해 보았을 때, 제도의 도입으로 추가되는 업무량에 대한 예측이나 산정에 따른 인력 충원 없이 인력 재배치만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향후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전자감독 전담직원과 신속수사팀 모두의 업무적인 소진으로 인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현 상황에서 예상되는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분리하기 어려운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분리하기보다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 활동 범위를 기준으로 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

미국에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가석방 전담 보호관찰관(parole officer)은 모든 직원이 경찰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강력하고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가 형기종료 후 전자감독 처분을 받는 대상자로, 가석방 대상자와는 법적 성격이 상이할 수 있으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제재조치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한된 인력으로 대상자 제재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고자하는 목적이라면, 전자감독 전담 직원 전체가 특사경으로 지정된 점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다. 전담 직원이 가진 특사경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건 발생 시 범죄예방팀이 관할 지역에 신속히 출동하여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설된 신속수사팀을 수사 전담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일부 주와 같이 2차 범죄를 대비하여 훼손이나 준수사항 위반 발생 시 모든 출동 사건에서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겠다. 이는 신속수사팀 이전 광역특별사법경찰서 모델과 유사하나,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재 신속수사팀의 구조보다 신속하게 출동해 대응할 수 있으며, 신속수

사팀도 수사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면 출동으로 인한 업무 과중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감독과 제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담직원의 역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나, 미국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과 제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관리감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직원을 위한 제도적인 보호 장치(예: 일정 수준의 면책권 등)와 동기부여 기제(예: 위험수당 지급 등)를 마련한다면 긍정적인 운영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느 방향으로라도 인력의 충원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2절 | 연구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현황 진단을 통한 운영 전략의 도출로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 시행 일정 기간 후 평가연구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의성 있는 연구수행을 통해 향후 제도의 방향성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행 초기에 수행된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한 변화가 급격한 시기에 수행됨으로써 객관적인 수치 자료를 통한 제도의 운영 진단에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단기연구과제의 특성상 전자감독 전담직원 중 일부의 의견만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더불어 해외 문헌자료의 한계로 전자감독 대상자 제재에 대한 현장 실무의 구체적인 사례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운영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의무 위반 범죄와 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그 수준을 살피기 위한 추가적인 종단 연구가 필요하며, 신속수사팀 뿐만 아니라 전자감독 전담직원 및 대상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국회사무처, 2020,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4차, 2020. 11. 17.

김지선 · 장다혜 · 김정명 · 김성언 · 한영수 · 강호성 · 박상옥, 2013,「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II):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문희갑, 2020, “전자감독제도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보호관찰」20(1): 83-113.

박장호, 200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법무부, 2021,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으로 집중관리감독 강화, 보도자료, 2021.10.18.

법무부, 2021, 전자감독 대상자 훼손 및 재범사건 관련 대책, 보도자료, 2021.9.3.

법무부, 202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침, 제1차 일부개정, 2021.8.10.

법무부, 2021,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침, 제2차 전부개정, 2021.10.12.

법무부, 2021, 전자감독, 활용영역 확대를 통한 강력범죄 대응력 높여, 보도자료, 2021.5.3.

연성진 · 유진, 2015,「전자감독제도 운영성과 분석 및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정우식 · 정소은 · 김희자, 2000,「선진각국의 보호관찰제도 운영현황 연구」, 법무부 정책용역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경찰공무원의 근로시간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한민경, 2019, “전자감독 담당직원의 업무부담 특정에 관한 연구: 사건수를 기준으로”,「교정담론」13(2): 57-83.

2. 국외문헌

Adult Parole Board of Victoria. (2016). *Annual Report 2015-16*. Melbourne.

Armstrong, G. S., & Freeman, B. C. (2011). Examining GPS monitoring alerts triggered by sex offenders: The divergence of legislative goals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community correc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9*(2), 175-182.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a). *Corrective Services,* Australia, September Quarter 2016. Cat No 4512.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b). *Criminal Courts, Australia,* 2014-15. Cat No 4513.0.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c). *Federal Defendants, Australia,* 2014-15. Cat No 4515.0.

Bales, W., Mann, K., Blomberg, T., Gaes, G., Barrick, K., Dhungana, K., & McManus, B. (2012).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BiblioGov.

Barnes, P. J. (2007). *Report on New Jersey's GPS monitoring of sex offenders.* New Jersey State Parole Board.

Bartels, L., & Martinovic, M. (2017). Electronic monitoring: The experience in Australia. *European Journal of Probation, 9*(1), 80-102.

Beccaria, C. (1986 [1764]). *An essay on crimes and punishments. Indianapolis*, IN: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Belur, J., Thornton, A., Tompson, L., Manning, M., Sidebottom, A., & Bowers, K. (2020).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8,* 101686.

Bentham, J. (1988 [1789]).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Prometheus Books.

Bishop, L. (2010). The challenges of GPS and sex offender management. *Fed. Probation, 74*, 33.

Bligh, A., & Roberts, N. (2011). *GPS technology to be used in monitoring of sex offenders. Corrections NEWS Statement.* Brisbane, Australia: Queensland Corrective Services.

Brown, T. M., McCabe, S. A., & Wellford, C. F. (2007).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echnology for community supervision: Lessons learned* (No. 219376). Noblis.

Cheng, C. C., Chen, C. T., Hsu, F. S., & Hu, H. Y. (2012). Enhancing service quality improvement strategies of fine-dining restaurants: New insights from integrating a two-phase decision-making model of IPGA and DEMAT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31*(4), 1155-1166.

Council, T. C. J. P. (1986).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Court Services and Offender Supervision Agency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2009).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racking of offenders.* (Policy Statement No. 4008). Available at: https://www.csosa.gov/wp-content/uploads/bsk-pdfmanager/2018/03/4008_gps_tracking_050709.pdf

Cowan, P. (2016). NSW to electronically track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T News. Available at: https://www.itnews.com.au/news/nsw-to-electronically-track-domestic-violence-offenders-421062

Davis, R. C., Smith, B. E., & Nickles, L. B. (1998). The deterrent effect of prosecuting domestic violence misdemeanors. *Crime & Delinquency, 44*(3), 434-442.

Decker, S., Wright, R., & Logie, R. (1993). Perceptual deterrence among active residential burglars: A research note. *Criminology, 31*(1), 135-147.

DeMichele, M., & Payne, B. (2009). Offender supervision with electronic technology: Community corrections resource. Available at: https://www.appa-net.org/eweb/docs/appa/pubs/OSET_2.pdf

Drake, G. B. (2009, May). Offender tracking in the United States. In CEP conference on Electronic *Monitoring held from the 7th to the 9th of*

May (pp. 1-11).

Dünkel, F., Thiele, C., & Treig, J. (2016). Electronic Monitoring in Germany. *EMEU Project Report, Greifswald: University of Greifswald.*

Edgely, M (2007). Preventing crime or punishing propensities? A purposive examination of the preventative detention of sex offenders in Queensland and Western Australi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Law Review 33*, 321-386.

Ehrlich, I. (1973). *The deterrent effect of capital punishment: A question of life and death* (No. w0018).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Feng, M., Mangan, J., Wong, C., Xu, M., & Lalwani, C. (2014). Investigating the different approaches to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34*(12), 1021-1041.

Florida Senate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2004.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Technology Use in Monitoring the Activities of Probationers." In The Florida Senate Interim Project Report 2005-126. Tallahassee, Fla. Available at: http://www.leg.state.fl.us/data/Publications/2005/Senate/reports/interim_reports/pdf/2005-126cj.pdf

Gainey, R. R., Payne, B. K., & O'Toole, M.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time in jail, time on electronic monitoring, and recidivism: An event history analysis of a jail-based program. *Justice Quarterly, 17*(4), 733-752.

Geerken, M., & Gove, W. R. (1977). Deterrence, overload and incapacitation: An empirical evaluation. *Social Forces, 56*(2), 424-447.

Gendreau, P., Goggin, C., Cullen, F. T., & Andrews, D. A. (2000, May). The effects of community sanctions and incarceration on recidivism. In *Forum on corrections research, 12*(2), 1.

Gibbs, J. P. (1968).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Southwestern Social Science Quarterly, 48,* 515-530.

Harris, A. J., & Lurigio, A. J. (2010). Introduction to special issue on sex offenses and offenders: Toward evidence-based public poli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7(5), 477-481.

Hucklesby, A., & Holdsworth, E. (2016). Electronic monitoring in England and Wales. *EMEU Project Report, Leeds: University of Leeds.*

Idaho Terms and Conditions—Parole and Probation. Available at: https://www.idoc.idaho.gov/content/probation_and_parole/probation_and_parole_services

Illinois Sentencing Policy Advisory Council. (2019). Research briefing: Stat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1-9.

Indiana Department of Correction. (2017). *Manual of policies and procedures: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No. 03-03-101). Available at: https://www.in.gov/idoc/files/03-03-103-Electronic-Monitoring-Program-9-1-2017.pdf

Jacobs, D., & Carmichael, J. T. (2002).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death penalty: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09-131.

James, N. (2019). The FIRST STEP act of 2018: An overvie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vailable at: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90304_R45558_cd2f78a8051281a0b15f7a318513e65675860c25.pdf

Jannetta, J. (2006). GPS monitoring of high-risk sex offenders: Description of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s San Diego County pilot program.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S.*

Jenkins, S., & Owens, R. (2011). [Laws and policies for Texas parole division and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Available at: https://www.dfwparole.com/wpcontent/uploads/2015/10/PIT_English.pdf

Karsten, J., & West, D. M. (2017). Decades later,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is still prone to failure. Available at: www.brookings.edu/blog/techtank/2017/09/21/decades-later-electronic-monitoring-of offenders-is-still-prone-to-failure/

Kleck, G., Sever, B., Li, S., & Gertz, M. (2005). The missing link in general deterrence research. *Criminology, 43*(3), 623-660.

Lin, S. P., Chan, Y. H., & Tsai, M. C. (2009). A transformation function corresponding to IPA and gap analysis. *Total Quality Management, 20*(8), 829-846.

MacKenzie, D. L. (1997). Chapter 9: Criminal justice and crime prevention. In L. W. Sherman, D. Gottfredson, D. MacKenzie, J. Eck, P. Reuter & S. Busway (Eds.), *Preventing crime: What works, what doesn't, what's promising: A report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pp. 9-1Y9-83).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77-79.

Matthews, S. K., & Agnew, R. (2008). Extending deterrence theory: Do delinquent peers con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of getting caught and offending? *Journal on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5*(2), 91-118.

Maxwell, S. R., & Gray, M. K. (2000). Deterrence: Testing the effects of perceived sanction certainty on probation violations.

Maxwell, C. D., Garner, J. H., & Fagan, J. A. (2002). The preventive effects of arres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Research, policy and theory. *Criminology & Public Policy, 2*(1), 51-80.

Mears, D. P., Cochran, J. C., & Cullen, F. T. (2015). Incarceration heterogeneity and its implications for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imprisonment on recidivism.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6*(7), 691-712.

Melbourne Centre for Criminological Research and Evaluation for Corrections Victoria. (2006). *Home Detention in Victoria: Final Evaluation Report.* Melbourne: Department of Justice Victoria.

Milovanovic, S. (2005, July 13). Notorious 'Mr. Baldy' released from jail. *The Age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www.theage.com.au/news/national/notorious-mr-baldy-released-from-jail/2005/07/13/1120934289411.html

Myers, R. (2011). Monitoring sex offenders by GPS: When technology outruns

the law. *Journal of Offender Monitoring, 23*(2), 23-6.

Nellis, M. (2013). Electronic monitoring, satellite tracking, and the new punitiveness in England and Wales. In *The new punitiveness* (pp. 193-212). Willan.

Nellis M, Beyens K and Kaminski D (2013) Introduction: Making sens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Nellis, M., Beyens, K., & Kaminski, D. (eds).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United Kingdom: Routledge, 1-18.

NSW Standing Committee on Law and Justice (2006). *Community Based Sentencing Options for Rural and Remote Areas and Disadvantaged Populations.* Sydney: NSW Legislative Council.

O'Donohue. (2013). Coalition government introduces GPS monitoring of offenders (Media release). Victoria. Australia. Available at: http://edwardo-donohue.com.au/coalition-government-introduces-gps-monitoring-of-offenders/#.VrGdJICSxfA

O'Loan, J. (2011, June 3). Switch to GPS tracking of sex offenders would cost less than $250,000. *The Courier Mail Newspaper.*

Ohio Rehabilitation & Department of Corrections. (2017). Electronic monitoring and GPS monitoring systems (No.108-ABC-04). Available at: https://www.drc.ohio.gov/Portals/0/Policies/DRC%20Policies/108-ABC-04%20(Nov%202020).pdf?ver=WX32FqcfaAeYG8hqGNQNQg%3D%3D

Oudekerk, B. & Kaeble, D. (2021). Probation and Parole in the United States, 2019.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Padgett, K. G., Bales, W. D., & Blomberg, T. G. (2006).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Criminology & Public Policy, 5*(1), 61-91.

Paternoster, R. (1987).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erceived certainty and severity of punishment: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issues. J*ustice Quarterly, 4*(2), 173-217.

Paternoster, R. (2010). How much do we really know about criminal deterrenc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100*(3), 765-823.

Peckenpaugh, J., & Petersilia, J. (2006). Controlling sex offender reentry: Jessica's law measures in California. *Available at SSRN 977263.*

Pinto, S., & Nellis, M. (2011, May). 7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Survey of Electronic Monitoring Analysis of Questionnaires. In *7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5-7.

Provan, D. (2007). *50 years of the adult parole system in Victoria.* Melbourne, Australia: Adult Parole Board of Victoria.

Radelet, M. L., & Lacock, T. L. (2008). Do Executions Lower Homicide Rates: The Views of Leading Criminologists'. *J. Crim. L. & Criminology, 99*, 489.

Renzema, M., & Mayo-Wilson, E. (2005).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high-risk offenders? *Journal of Experimental Criminology, 1*, 215-237.

Rial, A., Rial, J., Varela, J., & Real, E. (2008). An application of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to the management of sport centres. *Managing Leisure, 13*(3-4), 179-188.

Robertson, J. (2009). *Sex offender monitoring program doubled.* Minister for Corrective Services Media Release. Sydney, Australia: NSW Government.

Sachwald, J. (2007). Electronic monitoring of sex offenders. Presentation for the National Legislative Briefing on Sex Offender Management Policy. Available at: http://www.csg.org/knowledgecenter/docs/pubsafety/Sachwald.pdf

Sandy, A. (2011). People power leads to GPS tracking devices for sex offenders. *Courier Mail.* Available at: http://www.couriermail.com.au/news/queensland/people-power-leads-to-safercommunity/story-e6freoof-1226070519272?nk=def1c8668969130807d4087d08725240

Schmidt, A. K. (1998). Electronic monitoring-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Federal Probation, 62*, 10.

Schneider, A. L., & Ervin, L. (1990). Specific deterrence, rational choice, and decision heuristics: Applications in juvenile justice. *Social Science Quarterly, 71*(3), 585-601.

Sentencing Council. (2008). An Intensive Corrections Order for NSW: Legislative and Operational Model. Available at: https://www.justice.nsw.gov.au/justicepolicy/Documents/intensivecorrectionsordermodel.pdf

Sherman, W., & Berk, R. A. (1984). The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Skinner, B. F. (1938). *The behavior of organisms: An experimental analysis*. BF Skinner Foundation.

Skinner, B. F. (1948). 'Superstition'in the pige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38*(2), 168.

Smith, R., & Gibbs, A. (2013). Extending the electronic net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 Developments in electronic monitoring down under. In: Nellis, M., Beyens, K., & Kaminski, D. (eds).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Abingdon: Routledge, pp. 82-101.

South Australian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2014). *Annual Review 2013-14.* Adelaide: South Australian Department for Correctional Services.

South Dakota Department of Corrections. (2019). *Parole services: Response to violations* (Policy 1.5.G.6). Available at: https://doc.sd.gov/documents/Parole%20Services-Response%20to%20Violations10112019.pdf

Stafford, M. C., & Warr, M. (1993). A reconceptualiz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Journal on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2), 123-135.

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2008). *Monitoring Tennessee's Sex Offenders Using Global Positioning Systems: A Follow-up Evaluation*, State of Tennessee Board of Probation and Parole, US.

Terry, K. J. (2011). What is smart sex offender policy. *Criminology & Pub. Pol'y, 10,* 275.

Texa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Parole Division. (2021). Policy and operating procedure: Super-intensive supervision program. (No. PD/POP-3.15.1). Available at: https://www.tdcj.texas.gov/documents/pd/03.15.01_parole_policy.pdf

Tittle, C. R. (1969). Crime rates and legal sanctions. *Social Problems*, 16, 409-423.

Tomlinson, K. D. (2016). An examination of deterrence theory: Where do we stand. *Fed. Probation, 80*, 33.

Tsai, M. C., Lin, S. P., & Chan, Y. H. (2011). Service failures identification: The involvement of the interrelation effect in service practice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6), 2301-2311.

Van Ginneken, E. F., & Hayes, D. (2017). 'Just'punishment? Offenders' views on the meaning and severity of punishment.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17*(1), 62-78.

Vanovac, N. (2016). NT to roll out criminals, alcohol monitoring bracelets. NT News. Available at: http://www.ntnews.com.au/news/northern-territory/nt-to-roll-out-criminals-alcohol-monitoring-bracelets/news-story/32cac1886672d82e937c4cceab68b29d

Victorian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2011). Research Brief - Sentencing Legislation Amendment (Abolition of Home Detention) Bill 2011. No 8. Melbourne: Victorian Parliamentary Library Research Service.

Victorian Sentencing Advisory Council. (2008). *Suspended Sentences and Intermediate Sentencing Orders: Suspended Sentences Final Report Part 2*. Melbourne: Victorian Sentencing Advisory Council.

Warrantless searches regarding persons on parole, Utah Code Ann. § 77-23-301 (2008)

Weisburd, K. (2019). *Sentenced to Surveillance: Fourth Amendment Limits on Electronic Monitoring*. NCL Rev., 98, 717.

Weisburd, K., Bhadha, V., Clauson, M., Elican, J., Kahn, F., Lawrenz, K., & Wohlsdorf, S. (2021). ELECTRONIC PRISONS: The Operation of Ankle

Monitoring in the Criminal Legal System. *GWU Legal Studies Research Paper*, 2021-41.

Whitfield, D. (2001). *The magic bracelet: Technology and offender supervision.* Waterside Press.

Wright, B. R. E., Caspi, A., Moffitt, T. E., & Paternoster, R. (2004). Does the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deter criminally prone individuals? Rational choice, self-control and crime. *Journal on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2), 180-213.

3. 기타 자료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s://www.gg.go.kr/gg_special_cop/gg_special_cop-history(검색일자 2021.12.14.)

청와대 청원게시판. “전자감독(전자발찌) 업무는 경찰이 담당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753(검색일자: 2021.12.19.)

파이낸셜 뉴스. 2021. “‘24시간 100% 현장출동’ 신속수사팀, 실효성 있을까”, https://www.fnnews.com/news/202110151817047950 (검색일자 2021. 12. 19.)

파이낸셜 뉴스. 2021.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또 있다.. 공개수배에도 12일째 잠적”, https://www.fnnews.com/news/202109011024482973 (검색일자 2021. 12. 18.)

파이낸셜 뉴스. 2021. “전자발찌 범죄 대응 ‘신속수사팀’… 인력 돌려막기 논란”, https://www.fnnews.com/news/202110171827105217(검색일자 2021. 12. 19.)

한겨레. 2021. “주거지 5번이나 가고도 살인 혐의 포착 못한 ‘전자발찌 수사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9965.html(검색일자 2021. 12. 14.)

한국경제, 2021. “檢·警보다 무서운 특사경 2만명 시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052969951(검색일자 2021.12.14.)

환경부 환경감시팀. 2021. 환경사범 수사 매뉴얼(2014-2015). http://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60&seq=6801(검색일자 2021.

12.13.)

KBS. 2021. “60대 전자발찌 훼손하고 달아나..경찰 추적”. https://news.v.daum.net/v/20211026220937473?f=o(검색일자 2021.12.19.)

KBS. 2021. “‘명령 어기고 음주’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전과자 재구속”,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15093(검색일자 2021.12.28.)

Safe today. 2021. “‘그놈 전자발찌’ 훼손 예측은 가능했다?”, http://safe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61103 기사첨부 자료: 전자발찌 훼손자 준수사항 기위반 현황_김영배위원실 요구자료. http://www.safetoday.kr/news/download.php?subUploadDir=202110/&savefilename=61103_6582.hwp&filename=%C0%FC%C0%DA%B9%DF%C2%EE%20%C8%D1%BC%D5%C0%DA%20%C1%D8%BC%F6%BB%E7%C7%D7%20%B1%E2%C0%A7%B9%DD%20% C7%F6%C8%B2.hwp(검색일자 2021.12.13.)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2006. American Probation and Parole Association Adult and Juvenile Probation and Parole National Firearm Survey. https://www.appa-net.org/eweb/Resources/Surveys/National_Firearms/docs/NFS_2006.pdf(검색일자 2021.12.17.)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Annual Probation Survey and Annnual Parole Survey, 2020, https://bjs.ojp.gov/library/publications/list?series_filter=Probation%20and%20Parole%20Populations(최종검색일: 2021.12.26.)

California Courts. 2021. https://www.courts.ca.gov/20142.htm(검색일자 2021.12.17.)

EASTERN DISTRICT OF OKLAHOMA. 2021. Location monitoring: probation and supervised release conditions.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location-monitoring-probation-supervised-release-conditions(검색일자 2021.11.19.)

Find Law. 2021. https://www.findlaw.com/criminal/criminal-procedure/probation-faq.html (검색일자 2021.12.13.)

Florida Law. 2021. https://www.floridabackgroundchecks.com/jessicas-law-the-

jessica-lunsford-act/(검색일자 2021.12.13.)

Official Internet Site of the Florida Legislature. 2021.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Search_String=&URL=0800-0899/0843/Sections/0843.23.html(검색일자 2021.11.20.)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 2017. https://www.tdcj.texas.gov/bpp/revocation/revocation.html(검색일자 2021.11.16.)

The PEW Charitable Trusts. 2021.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6/09/use-of-electronic-offender-tracking-devices-expands-sharply(검색일자 2021.12.13.)

The PEW Charitable Trusts. 2021. https://www.pewtrusts.org/en/research-and-analysis/issue-briefs/2018/09/probation-and-parole-systems-marked-by-high-stakes-missed-opportunities(검색일자 2021.12.9.)

United States Courts. 2021.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probation-and-pretrial-officers-and-officer(검색일자 2021.12.10.)

United States Courts. 2021.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probation-and-pretrial-services/supervision/use-location-monitoring-field(검색일자 2021.12.10)

United States Courts. 2021. https://www.uscourts.gov/services-forms/overview-probation-supervised-release-conditions(검색일자 2021.12.10.)

ZIPPA. 2021. https://www.zippia.com/probation-officer-jobs/demographics/(검색일자 2021.12.2021.12.13.

Abstract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Improvement of the Electronic Supervisio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Jisun Choi, Yoori Seong, Mijin Kim, Myeonki Kim

Since its implementation in 2008,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expanded to target a broader range of suspected, convicted, and released offenders. As it is a well-established argument that the behavior of tampering with electronic monitoring devices predicts recidivism,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 2021 for a more efficient and immediate response to those violators. Due to an increase in the prevalence of damaging electronic monitoring devices among high-risk parole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further launched an Electronic Supervision Investigation (ESI) Unit dedicated to preventing recidivism through deterrence principles of swiftness, certainty, and severity. The current study is a multifaceted study to evaluate this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better stabilization.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ffenders released on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the number of investigation requests is not proportionate to the number of caseloads. Every year since 2013, the caseload size used to be somewhere between 100 and 200 until the emergence of the Judicial Police System. According to a press release issu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conditional violations and damaging the monitoring equipment increased by

89.4%, from 996 cases in 2016 to 1,886 cases in 2018.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142 and 129 investigation requests for violations of the regulations in 2016 and 2020, respectively. It can be inferred that the number of cases requested for investigation was significantly lower relative to the number of actual violations, which implies that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were not swift enough and that the sanction was rather lenient.

Initially, the Electronic Supervision Special Police system was operated by designating six regional special judicial police stations to dispatch six investigative officers to handle investigation requests. However, ESI units were soon established to begin operations in 13 headquarters across the country to respond to electronic violations of high-risk offenders more efficiently. Yet, no changes in staff size along this process resulted in relocating existing monitoring supervision officers to handle those Special Judicial Police work. Since the implementation of its system, the number of investigations carried out increased from an average caseload of 10 to 40 cases per month, while the number of violation-related arrests increased from 0 to 14 cases within two months of the ESI unit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electronic supervision is applied to those who have been released on probation, conditional release, or early release. Due to heightened emphasis placed on effectively managing convicted high-risk offenders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electronic monitoring has encompassed a wide range of systems and components in the means of enhancing public safety. Typical community supervision conditions coupled with electronic monitoring (both EM and GPS) include: finding and maintaining full-time employment or education; submitting to drug and alcohol tests, not changing employment or residence without permission; attending specific programs; not leaving a designated area without permission; allowing supervisors to visit their home at any time, and limiting social gatherings. Compliance, no tampering with

electronic devices, no removal of tags, and no entry into restricted areas are the typical conditions for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Any violations can send the parolee back into jail or prison to serve all or the remainder of the sentence.

In general, policies and guidelines in responding to parolees' technical violations vary, as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s are given the authority to determine adequate violation sanctions. In general, many agencies and supervisors use graduated sanctions to determine the sanction severity by considering the offender's risk level, the seriousness of violation, the level of treatment need, and the level of non-compliance.

When electronically supervising high-risk offenders,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Korea and the US is supervision officers' rights. Since all parol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are sworn officers, they can exercise their law enforcement rights to deal with and manage violent parolees more effectively. Because all parol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are similar to thos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they may conduct warrantless searches in most states, even if there is no reasonable suspicion. In addition, parol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can also issue an arrest warrant to put a parolee directly to jail when necessary. Those parole officers can also possess firearms, batons, handcuffs, and pepper spray as their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The parole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thus have sufficient qualifications and rights, which explains their lower level of reliance on the local police compared to the level of reliance shown in South Korea. If a parolee has damaged the electronic anklet and absconded, the fugitive's personal information (e.g., photo, demographic information, sentence length, conviction history) is immediately released to the public media, and a fugitive warrant gets issued. From that point, the sex offenders management team (if the absconder is a sex offender), electronic monitoring team, fugitive apprehension team,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even citizens will work together to expedite the process of locating and arresting those wanted fugitives. It appears that there is a very systematic and efficient cooperative system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enhance public safety.

On the other hand, the authority of thos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s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onditions of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For instance, when the conditions of electronic monitoring supervision are diverse and detailed, it will allow those monitoring officers to supervise the subject more effectively. However, if the conditions of probation or parole requirements are somewhat limited and abstract, the authority of supervision officers will be reduced when managing offenders in the field. Therefore, as shown in the United States,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s to boldly and actively enforce the law by imposing specific compliance requirements.

To comprehensively diagnose the current use of the Judicial Police System, the current study administered in-person interviews and surveys to the ESI units and electronic monitoring staff who partook responsibilities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Before establishing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electronic monitoring staff had to request their investigations to police for imposing sanctions officially. Factors that previously hindered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s by dedicated staff included efforts to maintain a favorable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s on electronic monitoring, lack of police officers' understanding/familiarity with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nd the police's lukewarm attitude toward violations of the rules.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by having ESI units in place because ESI personnel has the authority to promptly investigate violations without going through those original prolonged process.

However, since the ESI units can locate and investigate violations that were not requested by the monitoring staff, a frictional relationship may occur between staff. In addition,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lack of investigative techniques or lack of expertise among staff in the ESI units as they have no previous

investigation experience. Sinc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ovided only three job training thus far due to COVID-19 public-gathering restrictions, it is critical to resolve the current situation of delayed training sessions.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e supervision officers expected that those problems that arose along with the newly established system would disappear as the ESI units become more knowledgeable and skilled. Because they gained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violations of subjects on electronic supervision and are responsible for handling sanction-related tasks, the supervisory capacity of the existing monitoring staff is further strengthened due to a separation in their work assignments. Because the ESI units were launch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lack of resources has been a significant barrier to responding to violations Thus,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m with sufficient resources to perform their duties more effectively. The members of the ESI unit considered that current authority given to the ESI unit includes direct investigation (e.g., confiscation and search, emergency arrest, arrest of the current offender, arrest warrant, communication investigation), voluntary investigation, and initiation of an investigation, are appropriate.

The primary circumstance that is expected to impair the effectiveness of the ESI unit operation or cause other problems was 'increasing investigation cases that are unreasonable to maintain and expand the team,' and half of the survey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is problem should be addressed first. Among the problems expected to occur when responding to the field situation, the ‘exposure to risk if the subject physically protests at the scene’ was ranked first by the ESI unit, followed by the problem of ‘exposure to the risk of night shift workers.’

There was also an area where the roles of the ESI unit and the electronic monitoring staff were inconsistent. In the case of regular management tasks such as collecting high-risk subjects' information and fact-checking, the electronic monitoring staff perceived that they were having both the role of the monitoring

staff and the role of the ESI unit, whereas the ESI team recognized the judicial police role is for their own.

This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their roles can be explained by the ambiguous job assignments given to the ESI unit and monitoring staff. As both the electronic monitoring staff and the ESI unit became special judicial police, it is unclear what role the special police plays and who should become special judicial police under what circum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role of the special police to reduce potential relational conflict between the ESI unit and the monitoring staff.

According to the Importance-Performance Gap Analysis (IPGA), the first remedial measure needed to improve an individual's competency was 'investigation-related education such as locating technique, effective compulsory investigation, etc.', followed by 'the work skill of the ESI unit'. The most important remedial measure to improve the system was a 'stable work environment'. In the support system and facility sub-factors, the item that the ESI team wanted to secure first was 'KICS(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system support', which appeared in the order of cooperation system, specific work guidelines, and independent office space. To improve awareness, the 'awareness of police, prosecutors, and judges' found to be most important.

While the existing electronic supervision system relied on the cooperation of the police for on-site response and investigation in case of violations of the subject on electronic supervision,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Judicial Police system gave electronic supervision staff the authority to respond and investigate on-site themselves. Because the police are distributed nationwide and have the authority to respond to all criminal acts, they will be actively needed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damaging monitoring devices by subjects, the police are also actively responding, so it is expected to be positive in securing promptness. Still, when requesting cooperation, the problem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the

target and cooperation in detailed work related to the handover of the arrested seem to be problems that need to be resolved.

Also, it was found that the prosecutors' office is making efforts to cooperate in various ways, such as providing education for business support, meetings, and provision of legal advi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otline. However, such support seems to differ depending on the ESI unit's request for support and the degree of activeness. It is also necessary to make an effort at the ministry level to ensure that all branch prosecutors' offices can provide a certain level of support to the competent ESI unit.

The electronic supervisory special police system was divided into four dimensions: work system, staffing and operation, work authority and capability, and cooperation system with other institutions. Then, policy recommendations were discussed for each dimension based on the study finding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urrent work system that separates monitoring supervision and sanctions-related tasks. Relocating and using the same manpower without a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increase in workload needs to be solved in the long term. In general, it seems that adequate supplementation has been achieved in term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erms of authority, but additional discussion on the authority of progressive sanctions is necessary. In addition, material infrastructure should be equipped before discussing work competency,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It is also essential to have an institutional and physical system that can guarantee the safety of employees. In cooperation with the police and prosecutors,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efforts for continuous and active cooperation at the ministry level. As a future system evaluation tool, the necessity of using various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simple incident responses, whether it reduces actual violations or recidivism, and the need for systematic data accumulation was discussed. Lastly,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using the United States case

as an example, the direction of the system should utilize the fact that all electronic supervisory staff is designated as special police.

부 록

1. 신속수사팀용 설문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 및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신속수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된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된 후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위해 귀하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연구자에게 비공개 처리되므로,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감독 특사경 설문조사 개요

ㅇ 설문조사 기간: '21. 11. 22 (월) ~ '21. 11. 28 (일)
ㅇ 설문 대상: 본 연락을 받으신 신속수사팀장 및 신속수사팀원
ㅇ 설문 항목: 10여개 항목
ㅇ 설문 방식: 다음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첨부한 한글파일에 응답한 뒤 완료한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
② 첨부한 한글파일을 인쇄하여 응답한 뒤 스캔하여 이메일로 회신
③ 첨부한 한글파일을 인쇄하여 응답한 뒤 우편으로 회신
※ 설문을 완료하신 분께는 사례비 2만원을 계좌 이체합니다.
ㅇ 사례금 지급 예정일: 11월 말

2021년 11월 22일

한 국 형 사 · 법 무 정 책 연 구 원

1. 귀하의 신속수사팀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한 인식과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나는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인한 현재의 문제는 신속수사팀 업무가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 신설로도 즉각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사(엄벌)영역이 분리되어 대상자 지도감독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반에 대한 즉각 대응은 강력범죄 재범 및 훼손사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의 엄정 대응은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이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원활한 수사를 위해 마련되고 확충되어야하는 물적 자원을 1~3순위까지 골라 숫자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사무공간	⑦	관용차량-승합차	⑪	개인사물함
②	샤워공간	⑧	관용차량-승용차	⑫	CCTV등 위치정보
③	숙식공간	⑨	보호장구	⑬	호신술 등을 위한 자기개발비
④	조사실	⑩	업무용 핸드폰	⑭	기타( )
⑤	체포자 보호공간				
⑥	유치공간				

3. 현재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에게 주어진 권한의 적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부족하다	←		적정하다		→	매우 과도하다
압수수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긴급체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현행범체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체포영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통신수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공개수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임의수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권수사 개시 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현재 특사경과 신속수사팀에게 주어진 권한이 자체 수사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면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나 필요하거나 과도한 권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4. 아래의 보기에서 원활한 자체 수사를 위해 신속수사팀에게 필요한 권한을 1~3순위까지 골라 숫자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준수사항위반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
② 대상자의 인권보호 등 관련 절차 완화
③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의 업무 분리
④ 현장출동 및 대상자 면담 등 수사과정에 전담직원의 협조체계 정비
⑤ 6급체제에서 5급이상 상향
⑥ 준수사항 추가, 변경 요청
⑦ 잘못된 지도감독 적의조치
⑧ 지도감독 불응자 경고조치

4-1. 준수사항위반과 함께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신 분은 어떤 범죄(ex. 이종범죄 전반, 폭행/폭력 등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5. 신속수사팀-협조중심경찰서 협업체계에서 다음 항목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필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훼손 사건시 경찰수사 협조(소재추적 기법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직원 간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정기적 회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 목	매우 필요 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필요하다
상급기관의 적극적인 지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보호관찰관 자료를 경찰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상시 합동수사본부 설치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비상시 경찰에서 수사인력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상시 경찰에서 수사인력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관제센터에 경찰 파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다음은 신속수사팀 출범 이후, 운영의 효과성을 저해하거나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혹은 상황)입니다. 이 중 반드시 해결해야해야 하는 사항을 1~3순위까지 골라 숫자를 적어주세요.

〈신속수사팀 내 문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신속수사팀 유지/확대를 위한 무리한 수사 증가
② 수사 노하우 부족
③ 개인의 역량/관점 차이로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조치 가능성
④ 무리한 교대근무 시스템
⑤ 불필요한 결재라인(과장, 기관장 보고 등으로 인한 업무 지연
⑥ 낮은 인사가점으로 인한 사기저하

〈대상자 대응시 문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잦은 출동과 야간 운전 등 야간 근무직원의 위험 노출
② 현장서 대상 물리적으로 항거할 경우의 위험 노출
③ 유치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취 후 난동자 제어의 위험
④ 추후 대상자의 보복가능성
⑤ 엄정 대응으로 인한 대상자의 반항행동 증가
⑥ 엄정 대응으로 인한 대상자의 위반율/재범율 증가

〈팀 외 문제/전담직원과의 문제〉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간의 업무 지휘권/협조 문제
② 대상자 지도감독에 대한 신속수사팀의 개입으로 인한 전담직원과의 갈등
③ 전담직원이 불편한 업무를 신속수사팀에게 전가
④ 전담직원과의 갈등기피를 위해 소극적 입건판단 가능성
⑤ 경찰의 미온적 협조
⑥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가능성

6-1. 위 문항에 응답한 문제 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다음 중 ①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 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역할, ③ 신속수사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 ○표 해주세요.
※ 중복 응답 가능합니다.

항 목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신속수사팀
피부착자 사회복귀 : 원호(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지원, 멘토/조력자 역할			
피부착자 재범 예방 : 생활 사실확인, 성행 교정 조력 (행동교정)			
전자장치 관리			
지도 · 감독: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준수사항 위반, 장치 훼손시 즉각대응/신속수사			
고위험자 정보 수집, 사실 유무 확인 등 상시관리			
전담직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적 개입: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통제를 벗어난 일탈 · 위험행위에 대한 대응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 공조 업무			
체포/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			

8. 전자감독 신속수사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각 사항들이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도와 중요한 정도를 모두 응답해주세요.

중요도 (신속수사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도)							문항	현재 실무 평가 (현재 실무에서 실행된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낮음	←		보통		→	높음
〈개인의 역량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신속수사팀의 업무 숙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수사교육(수사, 소재추적기법, 효과적 강제수사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호신술 등 신체적 훈련 및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형사법 등 법제도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근무평가나 성과금 포상 등 객관적 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적정한 권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보직 및 경력관리를 통한 안정적 업무환경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보호직렬(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조사)과 별개의 전자감독 직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팀장에게 복무권한을 부여하여 독립된 팀으로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지원자 위주의 팀원 선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⑪ 명확한 업무 범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원체계 및 시설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⑫ 독립적 사무공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⑬ 구체적인 업무 지침(매뉴얼)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요도 (신속수사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도)							문항	현재 실무 평가 (현재 실무에서 실행된 정도)						
낮음	←		보통		→	높음		낮음	←		보통		→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⑭ 킥스 시스템의 수사 절차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⑮ 전담직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⑯ 협조중심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⑰ 경찰이 수사를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제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⑱ 신속수사팀에 대한 보호관찰관 직원 전체의 긍정적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⑲ 대상자의 위반행동의 심각성에 대한 경찰 · 검찰 · 법관의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⑳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인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신속수사팀과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10. 귀하가 보호관찰업무(사회봉사, 수강, 조사 등 포함)에 종사하신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0-1. 전자감독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10-1-1. 전자감독업무(위치추적 관제센터 근무 포함)를 담당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10-2. 귀하는 범죄예방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A.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1) 남자 ____2) 여자

B. 귀하의 만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세

C.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____1) 팀장 ____2) 팀원

D.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____1) 5급 ____2) 6급 ____3) 7급 ____4) 8급 ____5) 9급

E. 귀하의 소속기관명을 작성해 주세요.
_____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 전자감독 전담직원용 설문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시행 및 인식에 관한 조사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신속수사팀 신설과 관련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거나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맞고 틀린 것이 없고, 응답된 내용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된 후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철저한 비밀 보장을 위해 귀하의 이름이나 연락처는 연구자에게 비공개 처리되므로, 각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전자감독 특사경 설문조사 개요

ㅇ 설문조사 기간: '21. 11. 22 (월) ~ '21. 11. 28 (일)
ㅇ 설문 대상: 본 연락을 받으신 신속수사팀장 및 신속수사팀원
ㅇ 설문 항목: 10여개 항목
ㅇ 설문 방식: 다음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여 설문조사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① 첨부한 한글파일에 응답한 뒤 완료한 파일을 이메일로 회신
② 첨부한 한글파일을 인쇄하여 응답한 뒤 스캔하여 이메일로 회신
③ 첨부한 한글파일을 인쇄하여 응답한 뒤 우편으로 회신
※ 설문을 완료하신 분께는 사례비 1만원을 계좌 이체합니다.
ㅇ 사례금 지급 예정일: 11월 말

2021년 11월 22일

한 국 형 사 · 법 무 정 책 연 구 원

1. 귀하의 신속수사팀 전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항목에 대한 인식과 가까운 곳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아니다	←		보통 이다	→		매우 그렇다
나는 신속수사팀 업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특사경과 신속수사팀 신설로 인한 현재의 문제는 신속수사팀 업무가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 신설로도 즉각적인 현장 중심의 대응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사(엄벌)영역이 분리되어 대상자 지도감독 역량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위반에 대한 즉각 대응은 강력범죄 재범 및 훼손사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의 엄정 대응은 장기적으로 대상자의 문제행동이나 위반율이 증가시킬 것이라 예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 신설로 업무 등에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신속수사팀 신설 이전에 수사의뢰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__1) 있다 _____2) 없다

2-1. 귀하는 신속수사팀 신설 이후 수사의뢰 경험이 있으십니까?

_____1) 있다 _____2) 없다

3. 신속수사팀의 신설로 인해 나타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과 가까운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수사의뢰 서류가 간소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사의뢰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사의뢰부터 종료까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제재와 관련한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대상자를 지도 · 감독한 내용을 신속수사팀과 공유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우수인력의 배치가 불균형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항 목	전혀 동의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동의함		
범죄예방팀과 신속수사팀 간의 마찰(갈등)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의 업무로 전반적인 전자감독 관련 업무가 수월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신속수사팀과 업무 경험여부와 각 경험의 만족도를 응답해주세요.

항 목	경험 여부	전혀 만족하지 않음	←	보통	→			매우 만족
수사의뢰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속수사팀 직권수사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준수사항 위반 경보 대응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자발찌 훼손 경보 대응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신속수사팀과의 업무에서 만족하지 못한 경우,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5. 다음 중 ① 전자감독 전담직원의 역할, 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역할, ③ 신속수사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보기에서 모두 골라 ○표 해주세요.
※ 중복 응답 가능합니다.

항 목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신속수사팀
피부착자 사회복귀 : 원호(주거지원, 취업알선 등), 지원, 멘토/조력자 역할			
피부착자 재범 예방 : 생활 사실확인, 성행 교정 조력 (행동교정)			
전자장치 관리			

항 목	전자감독 전담직원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신속수사팀
지도 · 감독: 피부착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준수사항 위반, 장치 훼손시 즉각대응/신속수사			
고위험자 정보 수집, 사실 유무 확인 등 상시관리			
전담직원 지도감독에 대한 보충적 개입: 전담직원의 지도감독 통제를 벗어난 일탈 · 위험행위에 대한 대응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			
사건발생시 경찰 및 검찰 공조 업무			
체포/구속 등 직권 및 임의 수사 실시			

6. 신속수사팀과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불만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7. 귀하가 보호관찰업무(사회봉사, 수강, 조사 등 포함)에 종사하신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7-1. 전자감독업무(위치추적 관제센터 근무 포함)를 담당한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7-2. 귀하는 범죄예방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

8. 귀하는 신속수사팀에 지원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_____1) 있다 _____2) 없다

A.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1) 남자 ____2) 여자

B. 귀하의 만 나이는 몇 세입니까? ( )세

C. 귀하의 계급은 무엇입니까?

____1) 5급 ____2) 6급 ____3) 7급 ____4) 8급 ____5) 9급

D. 귀하의 소속기관명을 작성해 주세요.

_____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총서 21-AB-02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 2021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5283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2279-6760

I S B N | 979-11-91565-40-9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제 및 복제를 금함.